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2016.5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2016. 12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2016. 12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기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조명환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6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박형수

요 약

1. 제도 운용 현황

- 본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제1항에 의해 외국인투자(동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제도임
-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외국인들의 투자유치가 국내 경기 활성화, 외국의 선진기술 유입, 그리고 고용창출 유도임

가. 도입목적

- 외국인투자 유치는 국내경기 활성화 및 선진기술 유입, 양질의 고용창출의 순기능이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는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촉진제로서의 역할
- 투자유치국에서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첨단기술이나 지식의 이전효과를 볼 수 있음
- 기술이 현지의 다른 국내 법인들에 직접적으로 이전될 수 있으며, 인적자본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기술이전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나. 정책대상자 및 대상 자본재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외국인투자지역 등 국민경제 기여도를 고려한 일정수준 이상의 요건을 만족한 외국인 투자기업
- 외국인 투자기업은 투자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본재를 도입하여야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국내 기존주식 취득이나 합병 등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 면제 해당 자본재는 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에 해당함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본재
 - 자본재의 범위는 산업시설, 또는 당해 시설의 최초 시운전(시험사업을 포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 또는 기술

다. 수혜내용

-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 및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 면제
 - 고도기술수반사업 투자기업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만을 면제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시행자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 사업시행자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

라. 조세지출규모

- 조세지출규모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조세지출규모는 2010년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약 1,010억원이었지만, 최근에는 약 170억~180여 억원 정도로 추정됨

<표 1> 2010~2016년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액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추정)	2016년 (추정)
관세	118	202	441	255	258	94	97
부가가치세	142	327	569	242	195	77	81
합계	260	529	1,010	497	453	171	178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마. 제도 연혁

- 본 제도는 1984년 신설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율이 70%이었지만, 감면 대상을 정비 및 축소하면서 관세 등의 감면율은 100%로 상향 조정됨
- 대상 사업 종류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함께 100% 감면되거나 또는 관세만 100% 감면

<표 2>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연혁

연도	주요 변경사항
1984. 7. 1	○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감면율을 70%로 설정
1991. 1. 14	○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감면율을 50%로 개정
1995. 4. 1	○ 대상 사업 종류에 따라 감면 세율 차등 - 고도기술수반사업의 경우 100% 감면 -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의 경우 50% 감면
1998. 11. 16	○ 감면 대상 축소 -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 ○ 감면율 100%로 상향
2003. 12. 30	○ 대상 사업 종류에 따라 감면 세율 차등 -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모두 100% 감면

연도	주요 변경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관세만 100% 감면 · 나머지 사업
2009.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사업 종류에 따라 감면 세제 차등 -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모두 100% 감면 ·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 · 외국인투자지역 (개별) 입주기업 및 경제자유지역·제주첨단기술과학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 등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업 - 관세만 100% 감면 · 나머지 사업

출처: 한국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접속일: 2016.10.28.)

바.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현황

- (관세 감면 규모)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자본재 도입으로 인해 관세가 면제된 자료를 살펴보면, 연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약 270억원 정도의 관세가 감면되고 있음
- (자본재 국가별 관세 감면) 지난 10년 동안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46개국으로부터 자본재를 수입하여 관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그 중 일본이 57.7% 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미국(19.1%)과 독일(11.3%)로부터의 자본재 수입을 통한 관세 감면이 많았음
- (감면 관세 종류) 지난 10년간 관세 감면을 받은 자본재들은 대부분 기본관세율로 수입되고 있음
 - 일부 WTO 협정세율 또는 할당관세로 수입되었음
 - 2011년 이후 한·EU FTA와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FTA 세율로 자본재가 수입되어 감면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관세 감면 자본재 품목) 지난 10년간 관세 감면을 받은 품목은 84류 중 HS 8486(반도체 제조용 기계)임

- HS 8486은 반도체 제조용 기계로 전체 관세 감면액 중에서 16.3% 차지

사. 해외 조세지원제도 비교

- (특정 업종 조세지원) 특정 업종에 대한 조세지원은 대부분 일정기간 동안 낮은 세율을 부과하거나 투자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로, 내·외국인 투자에 대해 차별적인 조세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는 없었음
 - 중국은 고도신기술기업, 첨단기술서비스기업, 소프트웨어와 전자회로산업 등에 대해 조세지원을 하고 있음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인접국로서 유사한 업종에 대해 조세지원을 하고 있었음
 - 다만, 대만은 기존의 특정 업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촉진산업승급조례)를 2009년에 폐지함
- (특정 지역 조세지원) 특정 지역의 입주업체에 대한 조세지원은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이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도 내외국인을 차별하여 내국인에게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음
 - 특정 지역의 입주업체에 대한 조세지원은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 몇몇 국가들만이 보유하고 있음

2. 효과성 평가

- 이론적 분석과 그에 따른 모의실험 결과 및 실증분석과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동 제도가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이론적 분석 및 모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동 제도의 혜택을 함께 받은 수혜기업의 평균유효세율이 혜택을 전혀 받지 않은 일반기업과 비교하여 10년 동안 연평균 22.5%p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10년 동안 연평균 28.3%의 자본재 투자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음

- (실증 분석 결과) 관세청과 기업정보를 병합한 데이터를 실증 분석한 결과, 투자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 됨
 - 관세 감면을 받은 기업의 평균 유형자산은 2,230억원으로 추정결과(36.14%의 유형자산 증가율)를 적용하면 평균적으로 약 806억원 정도의 자본재투자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관세 감면을 받은 기업의 평균 상시고용인원 수는 542명으로 추정결과(9.07%의 종업원수 증가율)를 적용하면 평균적으로 49명 정도의 고용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설문조사 분석 결과) 외국인 투자기업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관세 감면의 효과를 설문 분석한 결과,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조세요인은 직접투자에 1차적인 요인은 아니었음
 - 그러나 조세감면의 중요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조세감면이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됨

- (효율성 분석 결과) 동 제도가 외국인 기업의 고용에 미친 추정결과를 이용하면 정규직 일자리 하나를 만들기 위해 조세지출이 약 2,922만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추산할 수 있음
 - 다만 이 정도 규모의 일자리 창출비용이 어느 정도 효율적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제도의 효과와의 비교분석 과정이 필요함

3. 타당성 평가

- (제도의 목적 달성 여부) 이론적 분석과 그에 따른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동 제도의 운영으로 인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은 수혜기업의 투자를 크게 증진시킨 것으로 나타났음
 - 이론적 분석과 그에 따른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동 제도의 운영으로 인해 10년 동안 연평균 28.3%의 자본재 투자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실증분석 결과,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을 면제받은 외국인 기업의 투자가 그렇지 않은 기업 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제도 유지 타당성 평가) 연구의 효과성 분석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제도 유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 수혜대상과 수혜내용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 운용의 적절성도 담보될 수 있으므로 제도 운용 측면의 타당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 (한계점) 본 연구에서 수행한 정량적 분석만으로는 동 제도의 실행으로 국제적인 다국적기업의 첨단기술이나 지식의 이전효과가 있었는지, 기술이 현지와 다른 국내 법인들에 직접적으로 이전되었는지, 인적자본의 질이 향상되었는지 등의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외부효과 있었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투자와 고용을 확대시킨 현상은 경쟁기업의 행태를 변화시켜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는 있음
- 그러나 효과의 크기가 실질적으로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나타났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임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제도가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였음
-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많은 국가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지원제도와 일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할 수는 없었음

- 이는 동 지원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정책이 아닌 매우 파격적인 혜택이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음
 - 이는 또한 동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정책 목표의 달성 가능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임
- 본 연구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제도를 이론 및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동 제도가 수혜기업의 투자증진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음
- 제도 도입의 취지와 목적 달성여부에 대한 검증결과에 따라 동 제도 유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 관세를 감면받은 기업의 세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동 제도의 외국인직접투자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해 주었음
- 다만 설문에 응답한 세무담당자들은 외국인기업 유치에 있어 관세 감면을 비롯한 조세지원 요인이 다른 비조세요인에 비하여 상대적 중요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세무행정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효과성 평가 결과, 외국인투자 유치와 국내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현 시점에서 동 제도의 폐지보다는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국가와 FTA를 확대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면제의 중요성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현재 이와 동일한 제도를 시행중인 해외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내국인 기업에 대한 차별,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제도의 중장기적인 방향 등을 감안할 때, 동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가 주로 미국, 유럽국가, 그리고 일본 등에서 수입되고 있고, 이미 미국, EU와는 FTA가 체결되었고 일본과는 협상 중에 있음

- 특히, 동 제도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 면제 제도와 같은 방향으로 정책이 운영될 필요가 있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 면제 제도는 내국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OECD 유해조세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폐지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제도임
 - 내국기업의 자본재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음
 - 한편, 관세 감면을 측면에서도 기존 관세 감면제도 중에서 동 제도처럼 100% 관세 감면을 해주는 제도는 없고 최대 50%의 관세만을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내국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 동 제도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 면제 제도와 같은 방향으로 정책이 운영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동 제도의 일몰조항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 면제 제도와 동일한 정책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 설계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동일한 제도를 시행중인 해외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동 제도는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평가결과는 기업이 이와 같은 파격적인 혜택에 반응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음
 - 기업이 어느 정도 혜택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사전적 예측을 하는 데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 및 실증분석 결과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는 외국인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관세 감면과 같은 조세지원제도와 더불어 세무행정이나 세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 향상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하고 있음
- 이는 외국인기업의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사항임
 - 보다 기업친화적인 세무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임

목 차

I. 서론	19
II.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현황	23
1.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세감면제도 현황	25
가. 세목별 조세감면제도	25
나. 지역별 조세감면제도	28
다. 외국인 투자기업 특징별 감면기준	37
2.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한 조세지원	38
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38
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에 대한 조세감면현황	39
3. 외국인투자 동향	51
가. 투자규모의 변화	51
나. 국가별 투자동향	56
다. 업종별 투자동향	58
4.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특징 요약	62
III. 주요 외국의 조세지원제도	65
1.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비교	67
가. 호주	67
나. 영국	68
다. EU	69
2. 특정 업종에 대한 조세지원	70
가. 중국	70
나. 대만	73
다. 싱가포르	74
라. 말레이시아	78

마. 미국	83
바. 캐나다	84
3. 특정 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조세지원	85
가. 중국	85
나. 대만	87
다. 유럽의 기업유치지구(Enterprise Zone)	88
라. 말레이시아	90
4. 기타 조세지원제도	94
가. 미국	94
나. 캐나다	96
다. 일본	98
라. 중국	99
마. 유럽지역	100
5. 주요 외국의 조세지원제도 요약	102
IV. 외국인 투자기업 자본재 도입에 대한 조세감면효과 분석	105
1. 이론적 효과 분석	107
가. 기본모형	108
나. 모수 설정	112
다. 조세감면제도의 효과	115
라. 소결	122
2. 실증적 효과 분석	123
가. 자료 현황	123
나. 기초통계 분석	126
다. 분석 방법	127
라. 패널분석 추정결과	132
마. 소결	136
3. 타당성 평가	137
가. 제도의 목적 달성 여부 평가	137
나. 분석결과에 따른 제도유지의 타당성 평가	139

V. 설문조사결과 분석	141
1. 설문조사개요	143
가. 설문조사의 동기	143
나. 관련된 선행연구	144
다. 본 설문조사의 의미	145
2. 설문 응답자와 응답기업의 특성	149
가. 설문응답자의 특성	149
나. 설문응답 기업의 투자모국 현황	150
다. 설문응답 외국인투자 기업의 특성	151
라. 설문응답 외국인투자 기업의 조세감면 현황	151
3.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중요성	156
가. 설문의 구성	156
나. 5점 척도로 측정한 중요성	158
다. 상대적 순위로 측정한 중요성	160
라. 요인들에 대한 종합평가	162
마. 시사점	162
4.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국의 조세환경 중요도	167
가. 설문의 구성	167
나. 5점 척도로 측정한 중요도	167
다. 상대적 순위로 측정한 중요성	168
라. 요인들에 대한 종합평가	169
마. 시사점	169
5.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우리나라 조세환경 만족도	173
가. 설문의 구성	173
나. 5점 척도로 측정한 만족도	173
다. 상대적 순위로 측정한 만족도	174
라. 요인들에 대한 종합평가	175
마. 시사점	175
6.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환경에 대한 평가	178
가. 설문의 구성	178

나. 만족도 크기	178
다. 만족도 순위	179
라. 시사점	180
7.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관세 감면 환경에 대한 평가	182
가. 설문 구성	182
나. 만족도 크기	182
다. 만족도 순위	183
라. 시사점	184
8.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제도와 외국인직접투자와의 관련성 평가	186
가. 설문 구성	186
나. 설문결과	187
다. 시사점	188
9.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제도에 대한 선호도	191
가. 설문 구성	191
나. 설문결과	191
다. 시사점	192
10.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효과에 대한 평가	194
가. 설문 구성	194
나. 설문결과	195
다. 시사점	196
11. 요약 및 시사점	196
가. 설문조사 결과 요약	196
나.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	198
VI. 결론 및 정책 제언	201
1. 결론	203
2. 정책 제언	204
참고문헌	206
<부록>	209

표 목 차

<표 II-1> 외국인투자 관계 법률	28
<표 II-2>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 연혁	39
<표 II-3> 2006~2015년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액 규모	40
<표 II-4> 2006~2015년 관세 감면을 받은 자본재 수입국	41
<표 II-5> 2006~2015년 자본재 주요 수입국의 관세 감면 규모	42
<표 II-6> 연도별 주요 자본재 수입국 관세 감면액 추이	43
<표 II-7> 연도별 관세 감면 대상 자본재의 신고 관세율	44
<표 II-8> 2006~2015년 관세 감면 대상 주요 자본재 품목군(HS 2단위 기준)	45
<표 II-9> 2006~2015년 관세 감면 대상 주요 자본재 품목군(HS 4단위 기준)	46
<표 II-10> 투자자 거주지국별 외국인투자 유입액 비중(신고 기준)	57
<표 II-11> 외국인투자 유입액의 업종별 구성 변화(신고 기준)	59
<표 II-12> 제조업 분야 외국인투자 유입액의 업종별 구성 변화(신고 기준)	61
<표 II-13>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63
<표 III-1> 중국의 특정 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新 기업소득세법)	71
<표 III-2> 중국의 특정 업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72
<표 III-3> 대만의 촉진산업승급조례와 산업창신조례의 비교	74
<표 III-4> 싱가포르의 금융업 인센티브제도와 역외소득	75
<표 III-5> 싱가포르의 특정 업종에 대한 조세지원	77
<표 III-6> 투자촉진법에서 지정한 산업	78
<표 III-7> 개척자 지위에 해당하는 활동유형별 감면혜택 요약	79
<표 III-8> 활동유형별 투자소득공제 혜택 요약	80
<표 III-9> 말레이시아 승인받은 서비스 프로젝트를 위한 세제감면 혜택 요약	81
<표 III-10> 말레이시아의 특정 업종에 대한 조세지원	82
<표 III-11> 5년간 세수우대 과도기간의 적용례	86
<표 III-12> MSC Malaysia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91

<표 III-13> 라부안의 조세체계 요약	92
<표 III-14> 특정 업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103
<표 III-15> 특정 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조세지원	104
<표 IV-1> 모수 설정	115
<표 IV-2>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제도와 한계유효세율	116
<표 IV-3>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제도와 평균유효세율	118
<표 IV-4>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제도와 자본량	119
<표 IV-5>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제도와 조세수입	121
<표 IV-6> 기업의 1년당 관세혜택 수(2005~2015년)	124
<표 IV-7> 자료의 관측치 및 기업 수 현황(2005~2015년)	125
<표 IV-8> 관세 면제 여부에 따른 상장·비상장 기업현황	125
<표 IV-9> 관세 면제 여부에 따른 기업규모 현황	126
<표 IV-10> KISVALUE에 공시된 모든 기업의 기초통계량	126
<표 IV-11> 관세 감면기업의 기초통계량	127
<표 IV-12> 전체 기업의 기초통계량	127
<표 IV-13>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 추정	133
<표 IV-14>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추정	135
<표 IV-15>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가 기부에 미치는 영향 추정	136
<표 V-1> 응답기업 특성(패널A: 응답자의 직위 및 투자모국)	147
<표 V-2> 응답기업 특성(패널B: 응답기업의 투자기간 및 재무적 특성)	147
<표 V-3> 응답기업 특성(패널C: 응답기업의 투자규모 및 투자상태)	148
<표 V-4> 응답기업 특성(패널D: 응답기업의 조세감면 현황 및 세무업무 특성)	148
<표 V-5> 외국인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중요성(패널A: 중요성 크기)	153
<표 V-6> 외국인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중요성(패널B: 중요성 순위)	154
<표 V-7> 외국인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중요성(패널C: 요인별 중요성 순위 요약)	155
<표 V-8> 투자국의 조세환경 중요도(패널A: 중요도 크기)	164
<표 V-9> 투자국의 조세환경 중요도(패널B: 중요도 순위)	165

<표 V-10> 투자국의 조세환경 중요도(패널C: 요인별 중요도 순위 요약)	166
<표 V-11> 우리나라의 조세환경 만족도(패널A: 만족도 크기)	170
<표 V-12> 우리나라의 조세환경 만족도(패널B: 만족도 순위)	171
<표 V-13> 우리나라의 조세환경 만족도(패널C: 요인별 만족도 순위 요약)	172
<표 V-14>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환경 만족도	177
<표 V-15>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관세 감면 환경 만족도	181
<표 V-16> 외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 지원세제 관련성에 대한 평가	185
<표 V-17>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제도에 대한 선호평가	190
<표 V-18>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의 효과에 대한 평가	193
<부표 1> 2005~2015년 국세청 법인세 수입금액 및 당기순손익, 과세표준 자료 현황	209
<부표 2> 2005~2015년 국세청 자료의 법인세 총부담세액 등의 기업별 분포	210
<부표 3> 국세청 자료에 대한 기초통계량	211
<부표 4> 2005~2015년 국세청 법인세수입금액 및 당기순손익 규모	211
<부표 5> 2005~2015년 국세청 자료 중 제조업, 비제조업 비중	212
<부표 6> 매출액증가율에 대한 관세 면제의 효과 고정효과 모형 추정	212

그림 목 차

[그림 II-1] 2006~2015년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액 규모	40
[그림 II-2] 연도별 주요 자본재 수입국 관세 감면액 추이	43
[그림 II-3] 2015년 관세율 단순평균 (HS 84)-EU	47
[그림 II-4] 2015년 관세율 단순평균 (HS 84)-미국	48
[그림 II-5] 2016년 관세율 단순평균 (HS 84)-중국	49
[그림 II-6] 2015년 관세율 (HS 84)-일본	50
[그림 II-7] 1962~1983년 외국인투자 유입액(도착 기준)	52
[그림 II-8] 1984~1997년 외국인투자 유입액(도착 기준)	53
[그림 II-9] 1998~2015년 외국인투자 유입액(도착 기준)	54
[그림 II-10] 1998~2015년 외국인투자 총유입액과 그린필드형 유입액(도착 기준)	55

I. 서 론



I. 서론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을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비판이 제기됨
 - 이 면제제도는 고도기술사업분야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투자, 대규모 외국인투자, 특정 지역에서의 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의문임
 - 내·외국인을 구분하여 외국인의 투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서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효과가 있음
 - 투자에 있어 국경의 의미가 크게 퇴색된 세계화 사회에서 내국인을 배제하고 외국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임
 -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내국기업에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다른 국가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여 외국인에게만 제공하는 투자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를 찾을 수 없음
 - 투자규모에 초점을 맞춘 지원으로서 고용 등 사회적으로 보다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요소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음
 - 외국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입지여건, 노사관계 등이 중요하며 조세감면제도 운영 여부는 부수적인 요인으로 작용

-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제도가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외 유사 제도들을 검토하여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함

- 첫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현황 및 외국인투자의 동향과 특징을 분석함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세감면제도 현황을 세목별, 지역별, 외국인 투자기업 특징별로 나누어 살펴봄
 -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와 감면 현황을 살펴봄
 - 외국인투자의 동향을 규모의 변화와 업종별 동향을 위주로 살펴봄
- 둘째, 주요 외국의 조세지원제도를 조사함
-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외국의 투자지원제도를 조사, 정리함
 -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지원
 -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한 지원
 - 특정 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 등
- 셋째, 외국인 투자기업 자본재 도입에 대한 조세감면효과를 분석함
- 모형을 통해 조세감면정책의 효과를 분석함
 - 실증적 분석결과를 통해 조세감면정책의 효과를 분석함
 - 이론 및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타당성 평가 수행
- 넷째, 설문조사를 통해 조세감면정책의 효과를 분석함
- 마지막으로 결론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Ⅱ.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현황



II.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현황

1.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세감면제도 현황

가. 세목별 조세감면제도

- 현재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크게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과 자본재에 대한 관세 등에 제공되고 있음
 - 이 가운데 법인세, 소득세, 자본재에 대한 관세 등의 경우 국세로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로 세목별 조세감면이 되고 있음
- 국세감면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100% 면제하고 그 후 2년간은 50% 감면하는 조세지원을 적용하고 있음
 - 산업지원서비스업, 국내에서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되지 않은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외국인투자지역 중 개별형 투자지역에 입주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및 경제자유구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새만금사업지역,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입주기업으로서 각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사업이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이 됨
 - 이들 외국인투자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100% 면제하고 그 후 2년간은 50% 감면하는 조세지원을 적용하고 있음
 -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의 자본재로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 조세지원을 적용

-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에 대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에 대해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함
 - 산업지원서비스업, 국내에서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되지 않은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다만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름
 -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사업지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입주하여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으로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관련 법률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가운데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위에 열거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감면신청 또는 사업내용에 변화가 있을 경우 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해야 함
 -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소재한 지자체의 장과 협의해야 함(「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8항)

- 관세 등의 면제가 적용되는 외국인투자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의 자본재로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함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 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 관세 등 면제는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자본재에 한해 적용되며, 다만 공장설립승인의 지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이때,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모두를 면제함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외투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특정 기업,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투기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해당 외국인투자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 등 해당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함

〈표 II -1〉 외국인투자 관계 법률

법명	주요내용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지역 제도의 근거법률 -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명시 - 외국인투자 요건 및 절차 - 투자지원제도 (조세감면, 입지지원, 현금지원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 제도의 근거법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개발 - 외국인투자기업의·경영활동 지원 (조세감면, 토지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지원 등) -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외국인카지노업 허가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근거법률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관리, 입주 -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으로 간주)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에 대한 일반 법률로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명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6)

나. 지역별 조세감면제도

(1)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가) 개별형 투자지역

□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업체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음¹⁾

- ① 외국인투자금액이 3천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② 외국인투자금액이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 전통호텔업, 종합휴양업 및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 휴양콘도미니엄,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③ 외국인투자금액이 1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항만시설운영사업 및 항만배후단지 물류산업, 공항시설운영사업 및 공항구역 물류산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 ④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2백만달러 이상이고,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인 경우
 - ⑤ 동일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2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달러 이상이고, 위의 ①~④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또한 경제자유구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의 입주기업으로서 각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이 됨

□ 이들 외국인투자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100% 면제하고 그 후 2년간은 50% 감면하는 조세지원을 적용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에 외국인투자비용을 곱한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 만약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개시일로 함
-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

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적용함

-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해 취득·보유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도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함
 - 다만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름

(나) 단지형 투자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專用)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① 외국인투자금액이 1천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제조업 :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달러 이상
 - ② 외국인투자금액 5백만달러 이상으로서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 조

성 사업, 항만시설운영사업 및 항만배후단지 물류산업, 공항시설운영사업 및 공항구역 물류산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 물류업(물품의 하역, 운송, 보관, 전시 등): 외국인투자금액 5백만달러 이상

□ 이들 외국인투자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하고 그 후 2년간은 50% 감면하는 조세지원을 적용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 만약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개시일로 함

-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함

(2)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음²⁾

- ① 외국인투자금액이 1천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② 외국인투자금액이 1천만달러 이상으로서 호텔업 및 휴양업 등을 영위하기 위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5항

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③ 외국인투자금액이 5백만달러 이상으로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 물류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④ 외국인투자금액이 5백만달러 이상으로서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 ⑤ 산업지원서비스업과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1백만달러 이상이고,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상시 10인 이상 고용한 경우
- ⑥ 외국인투자금액이 1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014년 현재 8개 경제자유구역을 운영 중에 있음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충북,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금액이 3천만달러 이상이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 당해 경제자유구역의 총개발사업비가 5억달러 이상인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도 조세지원이 제공됨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거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3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2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함(「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다음 2

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해 취득·보유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도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 단,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 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르고 있음

(3)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의해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조세지원을 실시하고 있음³⁾
 -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
 -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해당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총개발사업비가 1억달러 이상인 경우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3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2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함(「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7항

-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해 취득·보유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도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함
 - 다만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르고 있음

(4) 기업도시에 대한 지원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업체 중에서 조세지원을 받을 있는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음⁴⁾
 - ① 투자금액이 1천만달러 이상인 제조업,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휴양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7항

업,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관광식당업,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청소년수련시설, 궤도사업,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사업

- ② 투자금액이 5백만달러 이상인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 조성 사업, 항만시설운영사업 및 항만배후단지 물류산업
- ③ 외국인투자금액이 2백만달러 이상인 연구·개발업

□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3천만달러 이상인 경우와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해당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총개발사업비가 5억달러 이상인 경우에 조세지원에 해당됨

□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입주하는 기업체와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및 소득세를 3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2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함(「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해 취득·보유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도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함

- 단,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 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르고 있음

(5)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지원

□ 그 밖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자유무역지역에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조세지원을 제공⁵⁾

①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달러 이상인 제조업

② 외국인투자금액 5백만달러 이상인 물류업

- 물품의 하역, 운송, 보관, 전시 등의 사업

○ 자유무역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는 산업단지형과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물류형으로 구분

- 산업단지형: 마산, 동해, 군산, 대불, 김제, 울촌, 울산

- 물류형: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포항항 및 인천국제공항

□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3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2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

○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해 취득·보유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도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0항

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함
- 다만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르고 있음

다. 외국인 투자기업 특징별 감면기준

-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대상 세목이 동일하더라도 업종별로 감면요건은 상이함
- 다만 업종별로 조세감면 요건에는 조세감면 대상별로 특징을 감안하여 차이가 있음
 - 예를 들어, 개별형 투자지역의 경우에는 제조업은 3천만달러 이상, 관광업은 2천만달러 이상이지만 R&D는 2백만달러 이상임
 - 또한 제조업의 경우에도 개별형 투자지역의 경우에는 3천만달러 이상이지만, 단지형 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또는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의 감면요건 투자규모는 1천만달러 이상임
 - 개발형 투자지역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단지형 투자지역은 중소기업 투자기업 대상이기에 차이가 있음

2.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한 조세지원

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인투자(동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면제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본재는 다음과 같음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⁶⁾하는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자본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⁷⁾

- 산업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 포함)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도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종자·수목·어패류
- 기타 주무부장관이 당해 시설의 최초 시운전(시험사업을 포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연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

□ 동 제도는 1984년에 신설되어 감면율과 감면내용이 지속적으로 변화하였음

- 1984년 신설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율이 70%이었지만, 감면 대상을 정비 및 축소하면서 관세 등의 감면율은 100%로 상향 조정됨
- 대상 사업 종류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함께 100% 감면되거나 또는 관세만 100% 감면

6)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7)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 제9호

<표 II -2>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연혁

연도	주요 변경사항
1984. 7. 1	○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감면율을 70%로 설정
1991. 1. 14	○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감면율을 50%로 개정
1995. 4. 1	○ 대상 사업 종류에 따라 감면 세율 차등 - 고도기술수반사업의 경우 100% 감면 -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의 경우 50% 감면
1998. 11. 16	○ 감면 대상 축소 -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 ○ 감면율 100%로 상향
2003. 12. 30	○ 대상 사업 종류에 따라 감면 세율 차등 -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모두 100% 감면 ·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관세만 100% 감면 · 나머지 사업
2009. 1. 1	○ 대상 사업 종류에 따라 감면 세율 차등 -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모두 100% 감면 ·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 · 외국인투자지역(개별) 입주기업 및 경제자유지역·제주첨단기술과학 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 등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업 - 관세만 100% 감면 · 나머지 사업

출처: 한국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접속일: 2016.11.10.)

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에 대한 조세감면 현황

(1) 관세 감면 규모

(가) 연도별 관세 감면 규모

□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자본재 도입으로 인해 관세가 면제된 자료를 살펴보면, 연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약 270억원 정도의 관세가 감면되고 있음

○ 관세 감면과 함께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평균 약 339억원 정도임

- 부가가치세율은 10%이기 때문에 자본재와 관련된 대부분 품목들의 관세율은 이보다 낮으므로 부가가치세 감면액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

<표 II -3> 2006~2015년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액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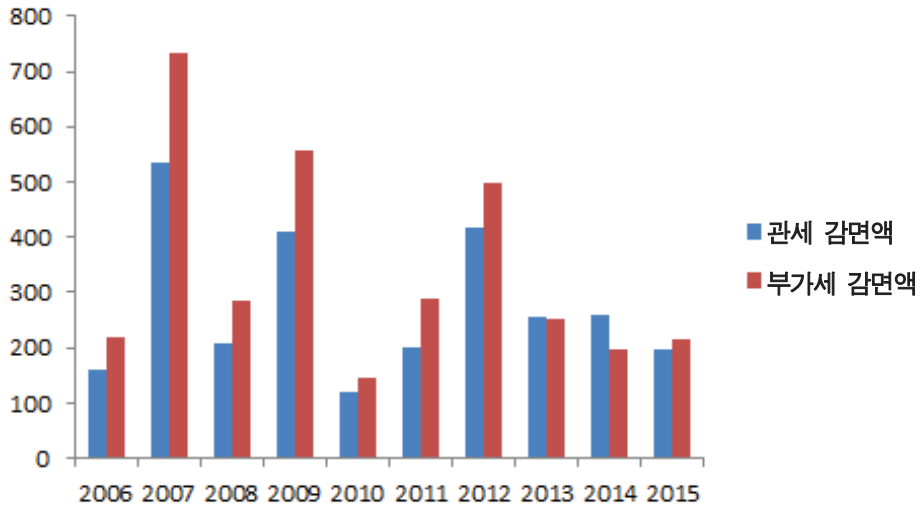
(단위: 억원)

	관세 감면액	부가세 감면액
2006	159.4	220.6
2007	533.3	732.1
2008	207.1	284.3
2009	409.0	557.5
2010	118.4	144.0
2011	201.9	290.3
2012	418.3	498.0
2013	255.7	251.1
2014	258.0	196.1
2015	196.4	215.9
합계	2,757.3	3,390.3

자료: 국세청

[그림 II -1] 2006~2015년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액 규모

(단위: 억원)



자료: 국세청

(나) 자본재 수입국가별 관세 감면 규모

-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46개국으로부터 자본재를 수입하여 관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일본, 미국, 중국, 독일 등 46개국⁸⁾

<표 II -4> 2006~2015년 관세 감면을 받은 자본재 수입국

일본	중국	이란	홍콩	라트비아
미국	벨기에	핀란드	덴마크	슬로바키아
독일	캐나다	호주	태국	헝가리
중국	스웨덴	폴란드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이탈리아	영국	그루지야	루마니아	콩고민주공화국
스위스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스와질란드	필리핀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프랑스	터키	오스트리아	멕시코	브라질
인도	싱가포르	스페인	체코	리히텐슈타인
아랍에미리트				

자료: 국세청

-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에서 수입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액이 가장 많았음
 - 외국인 투자기업이 일본으로부터 자본재를 수입하여 관세가 감면된 금액은 약 1,592억원
 - 지난 10여 년 동안의 총 관세 감면액 2,757억원의 57.7%를 차지
 - 그다음으로 미국과 독일로부터의 자본재 수입을 통한 관세 감면이 많았음
 - 지난 10여 년 동안의 미국 자본재 수입으로 527억원의 관세가 감면되어 전체 관세 감면액의 19.1%를 차지
 - 지난 10여 년 동안의 독일 자본재 수입으로 312억원의 관세가 감면되어 전체 관세 감면액의 11.3%를 차지

8)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국가는 수입국으로 수입 자료에 명시된 국가로 수입국이라고 해서 해당 자본재의 원산지가 그 수입국임을 의미하지 않음. 다만, 해당 자본재의 원산지가 수입국과 일치할 가능성은 높은 편임. 현재 해당 수입 자본재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입국을 기준으로 분석함

- 결과적으로 일본, 미국, 독일 이들 3개국으로부터의 자본재 수입을 통한 관세 감면액이 전체에서 약 88.2%를 차지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임을 알 수 있음
 - 그리고 프랑스를 포함한 8개국 이외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액 비중은 1% 미만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II -5> 2006~2015년 자본재 주요 수입국의 관세 감면 규모

(단위: 억원, %)

	관세 감면액	비중	누적비중
일본	1,592	57.7	57.7
미국	527	19.1	76.9
독일	312	11.3	88.2
중국	83	3.0	91.2
이탈리아	33	1.2	92.4
스위스	32	1.1	93.5
이스라엘	30	1.1	93.5
프랑스	27	1.0	94.6
	:	:	:
전체 총액	2,757		100.0

자료: 국세청

-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자본재를 수입국가별 연도별로 구분해 보면, 연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연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자본에 대해 관세 감면이 많이 됨을 알 수 있음

<표 II -6> 연도별 주요 자본재 수입국 관세 감면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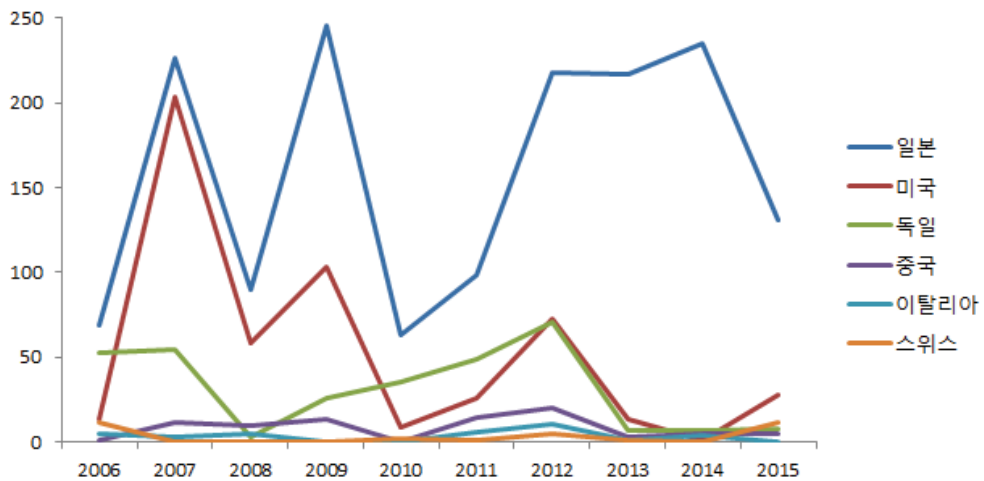
(단위: 억원)

	일본	미국	독일	중국	이탈리아	스위스
2006	69.1	13.7	52.3	1.3	4.9	11.7
2007	226.1	203.2	54.4	11.7	2.7	0.1
2008	89.7	58.2	2.7	9.5	5.1	0.1
2009	245.2	103.3	25.9	13.4	0.2	0.2
2010	63.2	8.7	35.6	0.3	0.1	1.8
2011	98.3	26	49	14.5	5.6	1.4
2012	217.9	72.6	71	19.8	10.3	4.5
2013	217.1	13.1	6.4	2.7	0.7	0.6
2014	234.8	0.7	6.8	4.6	3.8	0.1
2015	130.7	27.8	7.7	4.9	0.1	11.1
합계	1,592.1	527.4	311.9	82.8	33.4	31.5

자료: 국세청

[그림 II -2] 연도별 주요 자본재 수입국 관세 감면액 추이

(단위: 억원)



자료: 국세청

□ 지난 10년간 관세 감면을 받은 자본재들은 대부분 기본관세율로 수입되고 있음

○ 일부 WTO 협정세율 또는 할당관세로 수입되었음

- 최근 들어 할당관세로 수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이후 한·EU FTA와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FTA 세율로 자본재가 수입되어 감면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지난 10년 간 관세 감면을 받은 자본재들의 주요 수입국들을 살펴보면, 일본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국가들과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상황
 - 한·이스라엘 FTA는 협상 중

<표 II -7> 연도별 관세 감면 대상 자본재의 신고 관세율

(단위: 억원)

	A	C	FAS	FEF	FEU	FUS	P3
2006	156.1	0.3					6.9
2007	516.2	2.3					30.6
2008	202.3	1.0					8.1
2009	400.8	2.9		0.1			5.2
2010	117.9	0.3		0.2			-
2011	168.3	1.0	0.0	0.1	0.4		32.1
2012	378.3	45.5		0.0	1.3	0.1	
2013	240.6	8.7			3.8	2.6	0.1
2014	251.8	1.2	0.0		4.9	0.0	
2015	174.0	22.3			0.0	0.0	
합계	2,606.6	85.7		0.4	10.5	2.6	83.0

자료: 국세청

(다) 관세 감면 대상 자본재 품목

- 지난 10년간 외국인 투자기업들로부터 수입되어 관세 감면을 받은 품목들은 대부분 HS 제84류 기계류였음
 - 지난 10년간 외국인 투자기업들로부터 수입되어 관세 감면을 받은 품목들을 HS 2단위로 구분하여 분석
 - 관세 감면을 받은 품목들을 HS 2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제84류가 전체 관세 감면액 중 73%를 차지
 - 그다음으로 제90류가 12.1%를, 그리고 제85류가 8.2%를 차지
 - HS 제84류, 제90류, 그리고 제85류 이들 3개의 품목군이 전체 관세 감면액의 93.3%를 차지하고 있었음

<표 II -8> 2006~2015년 관세 감면 대상 주요 자본재 품목군(HS 2단위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관세 감면액	비중	누적비중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2,035	73.0	73.0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338	12.1	85.1
제85류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228	8.2	93.3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79	2.8	96.1
제69류 도자제품	48	1.7	97.8
제73류 철강의 제품	30	1.1	98.9
제28류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 금속· 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6	0.2	99.1
	:	:	:
전체 총액	2,788		100.0

자료: 국세청

□ 좀 더 자세하게 품목을 구분하여 HS 4단위로 분류해서 분석한 결과, HS 8486 이 전체 관세 감면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 HS 8486은 반도체 제조용 기계로 전체 관세 감면액 중에서 16.3% 차지

<표 II -9> 2006~2015년 관세 감면 대상 주요 자본재 품목군(HS 4단위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관세 감면액	비중	누적 비중
8486 (반도체 제조용 기계)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반도체다이아이스·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454	16.3	16.3
8479 기타 84류 기계	410	14.7	31.0
9031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계와 운곽 투영기(+)	232	8.3	39.3
8475 전기 또는 전자램프·튜브·밸브 또는 플래시벌브 (외피가 유리제인 것에 한한다)의 조립기계 및 유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또는 열간가공용의 기계	216	7.7	47.1
8419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 ·건조·증발·응축·냉각 기타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	160	5.7	52.8
8414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	123	4.4	57.2
8514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식 노와 오븐 및 기타 공업용이나 이화학용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 가열기	120	4.3	61.5
8477 고무나 플라스틱의 가공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	102	3.6	65.1
8417 비전기식의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 노와 오븐 (소각로를 포함한다)	7.5	2.7	67.8
3815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 및 촉매조제품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7.0	2.5	70.4
	:	:	:
전체 총액	2,788		100.0

자료: 국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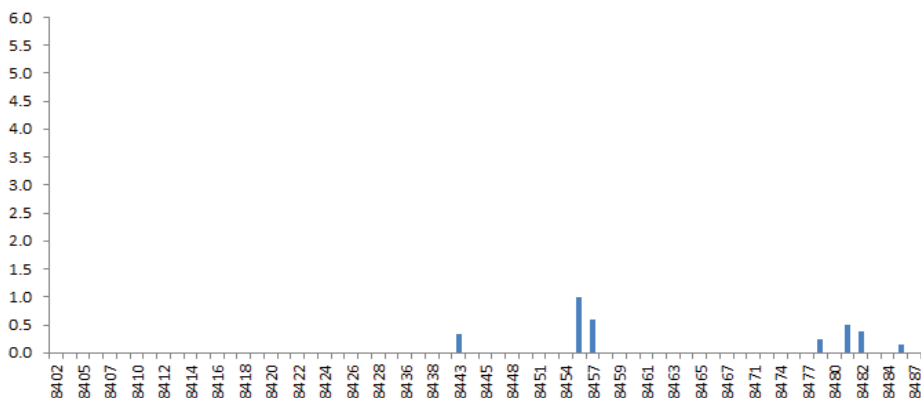
(라) 기계류(제84류)의 주요 FTA 협정세율

-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는 HS 제84류 기계류의 주요 FTA 체결국가들과의 협정세율을 살펴보고자 함
 -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지난 10년간 외국인 투자기업들로부터 수입되어 관세 감면을 받은 품목들은 대부분 HS 제84류 기계류이고, 또한 일본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상황임

- 먼저 한·EU FTA에 따른 HS 제84류 기계류의 협정세율 분포를 보면,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됨을 알 수 있음
 - 단순평균 세율이 0으로 나타난 품목은 총 58개, 세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HS 코드의 수는 7개로 나타났음
 - 총품목 중 약 89.2%가 세율이 0이며 11.8%가 세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0~1% 미만의 세율을 가진 품목이 6개임
 - 가장 높은 세율은 1.0%로 레이저가공 공작기계(8456)이며, 그다음으로는 머시닝센터(8457)로 0.6%의 세율을 보임

[그림 II -3] 2015년 관세율 단순평균 (HS 84)-EU

(단위: %)



출처: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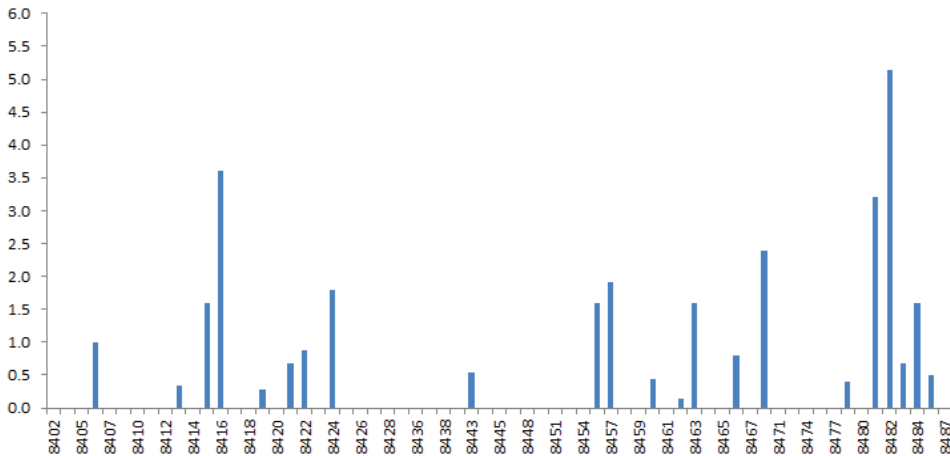
- 다음으로 한·미 FTA의 협정세율을 보면, 한·EU FTA 협정세율보다는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들이 있어 대부분 0~5%대의 세율분포를 보이고 있음

- 제84번 기계류에 해당하는 총 65개 HS 코드 중 단순평균 세율이 0으로 나타난 품목은 총 45개, 세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HS 코드의 수는 20개임
 - 총 65개의 품목 중 약 70%는 세율이 0이며, 세율이 존재하는 품목은 약 30%임
- 0~1%의 세율을 가진 품목이 12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미 FTA의 협정세율 중 가장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품목은 베어링(8482) 품목으로 5.2%임
- 그다음으로 노용버너(8416)로 3.6%의 세율을 나타냈으며, 파이프, 보일러 등에 사용하는 탭, 코크, 밸브(8481)가 3.2%로 그 뒤를 이음

[그림 II -4] 2015년 관세율 단순평균 (HS 84)-미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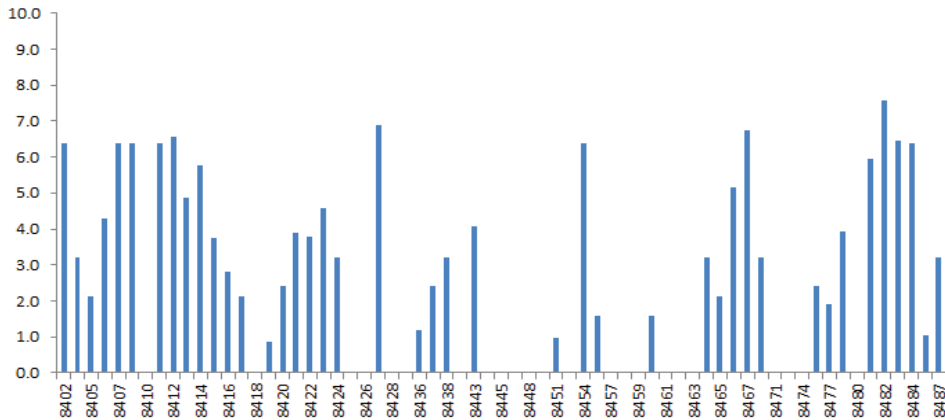
출처: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EU와 미국과의 FTA 협정세율 분포를 감안할 때, 유럽국가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본재들에 대해서는 FTA가 적용되면, 관세 감면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짐
- 일본, 중국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관세 감면을 받는 자본재는 유럽국가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음

- 유럽과 미국 다음으로 자본재 관세 감면이 많은 중국의 경우에도 한중 FTA가 체결되어 있음
- 한중 FTA 협정세율은 한·EU와 한·미 FTA보다 더 높은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중 FTA 협정세율은 0~7%대까지 다양한 세율이 존재하며 아직은 세율이 존재하는 품목이 세율이 0인 품목보다 많음
 - 단순평균 세율이 0으로 나타난 품목은 총 23개며 나머지 42개는 세율이 존재함
 - 세율이 0인 품목이 35.4%이며, 세율이 있는 품목은 65.6%로 나타남
 - 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베어링(8482)으로 7.6%이며, 그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보이는 품목은 지게차(8427)로 6.9%, 수지식공구(8467)가 6.8%임
 -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세율은 6~7% 사이로 총 12개의 품목임

[그림 II -5] 2016년 관세율 단순평균 (HS 84)-중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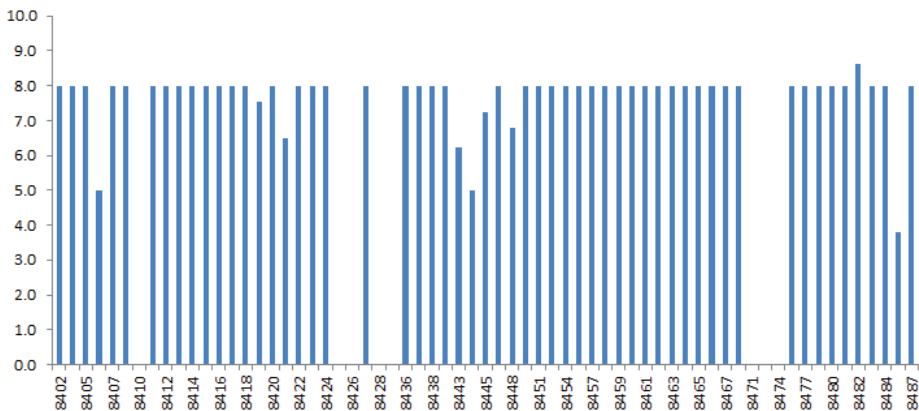
출처: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작성

-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기업들로부터 수입되어 관세 감면을 받은 자본재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일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아직까지 FTA협상이 진행 중으로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상황임

- 따라서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MFN 실행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일부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 관세율 8%가 적용되고 있음
 - 단순평균 세율이 0으로 나타난 품목은 총 8개며 나머지 57개는 세율이 존재함
 - 세율이 0인 품목이 12.3%이며, 세율이 있는 품목은 87.7%로 나타남
 - 가장 높은 세율은 8.6%로 베어링 (8482)임
 - 총 48개의 품목이 8.0%의 세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가열, 살균 건조기기(8419)가 7.5%의 세율을 보임

[그림 II -6] 2015년 관세율 (HS 84) -일본

(단위: %)



출처: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향후 EU와 미국과의 FTA 협정세율 분포를 감안할 때, 유럽국가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본재들에 대해서는 FTA가 적용되면, 관세 감면이 필요하지 않게 되어 관세 감면액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으로 여겨짐
 - 한중 FTA 협정세율을 감안하면 일정 부분 관세 감면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우리나라가 일본과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고,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본재가 가장 많은 상황에서 향후에도 일정 규모의 관세 감면액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외국인투자 동향⁹⁾

가. 투자규모의 변화

□ [그림 II-7]~[그림 II-9]는 1962년 이후 2013년까지 매년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투자액을 세 개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임

- 외국인 직접투자는 정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액 중에서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실제 유입액을 정리하였음

□ 세 개의 기간 구분은 외국인투자 정책 변화를 기준으로 한 것임

- 1962~1983년: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통계는 196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83년까지는 외국인투자를 철저히 통제하여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유입이 승인되었음

- 승인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함

- 1984~1997년: 외국인투자 허용업종을 열거하던 방식에서 금지업종을 열거하는 negative list system으로 변경하고 외국인투자 허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

-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제한된 범위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만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함

- 도소매·금융부문 등 일부 업종과 M&A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장이 개방됨

- 1996년의 OECD 가입을 전후로 국제조세 등 각종 투자 관련 규정을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함

- 1998~2015년: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도소매·금융, M&A 등 미개방 분야를 대폭 개방함

- 또한 1984년 외국인투자 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해오던 조세감면을 대폭 확대함

□ 외국인투자 유입이 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통제되던 1962~1983년의 기간을 보면 1970년대 중반까지는 몇 개의 예외적인 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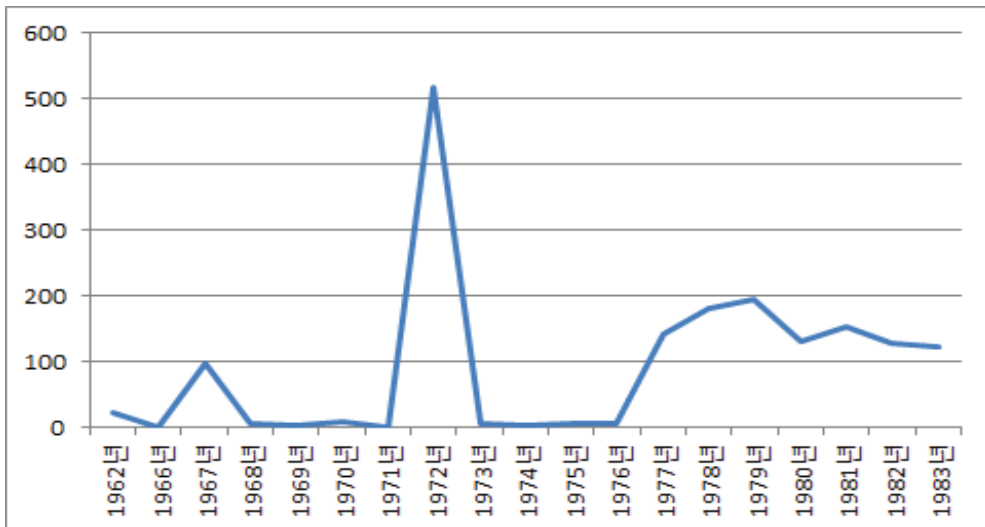
9)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6)의 pp.3~14를 참고하여 작성

유입액이 500만달러 또는 그 이하의 수준이었음

- 1977년에 처음으로 연간 유입액이 1억달러를 넘었으며, 이후 매년 1~2억달러의 자금이 유입됨
- 1979년에는 거의 2억달러에 가까운 수준의 외국인투자가 유입되었으나 1983~1984년에는 1억 2천만달러 수준으로 유입액이 축소됨
 - 1983~1984년의 외국인투자 유입액 감소는 국내 경기 침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실질 GDP 증가율 1983년 0.3%, 1984년 -0.4%

[그림 II -7] 1962~1983년 외국인투자 유입액(도착 기준)

(단위: 백만달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외국인투자정보,

<http://www.motie.go.kr/motie/in/it/investstats/investstats.jsp> (접속일: 2016.1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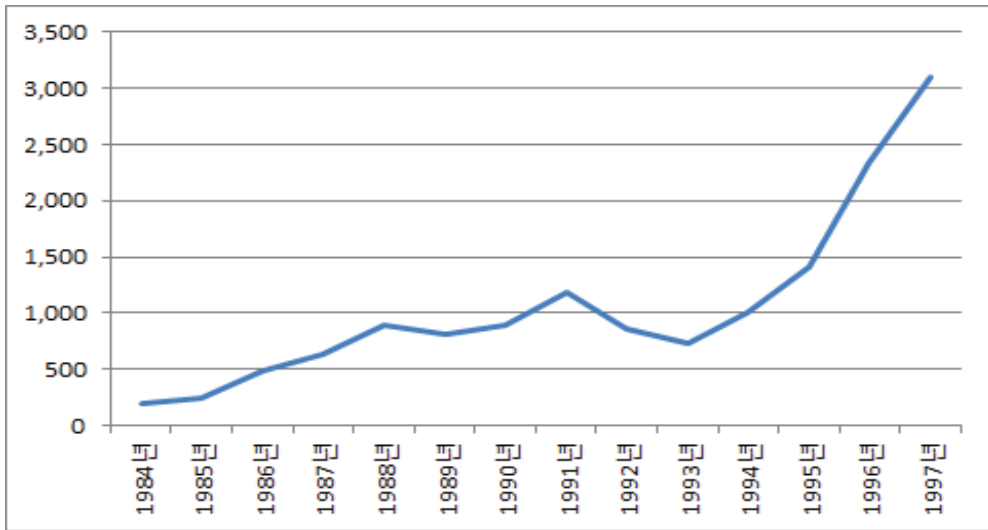
- 1984~1997년에는 점진적으로 국내 투자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 특히 1994~1997년에는 OECD 가입을 준비하면서 국내 시장 개방 속도를 가속화하고 국제조세제도 등 각종 국제투자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제도와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함에 따라 외국인투자도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함
 - 1984년에 2억달러 수준이었던 연간 외국인투자 유입액이 1991년에 10억

달러를 넘어서고 1997년에는 31억달러에 도달함

- 1989~1990년, 1993~1994년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입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는데, 이 시기는 우리나라의 실질 GDP 증가율이 -0.4~0%로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였음

[그림 II -8] 1984~1997년 외국인투자 유입액(도착 기준)

(단위: 백만달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외국인투자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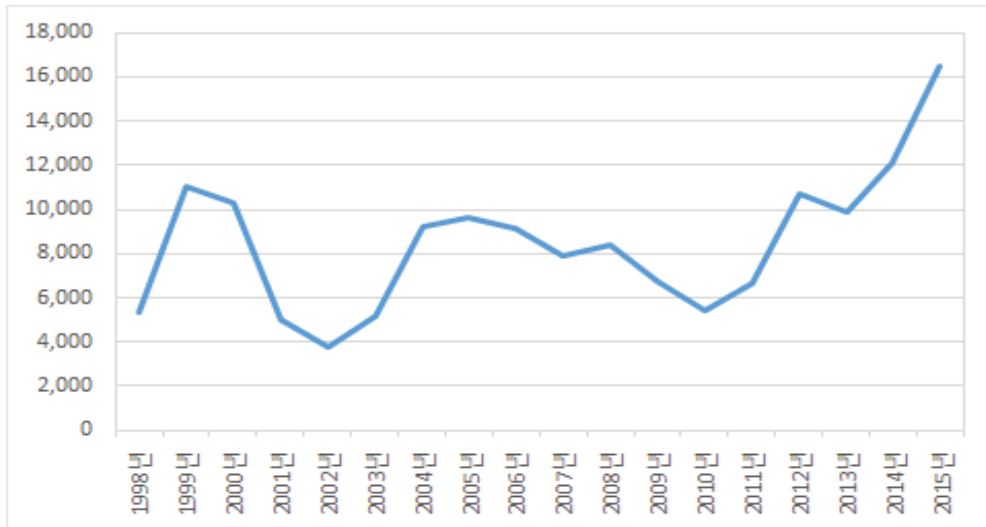
<http://www.motie.go.kr/motie/fin/it/investstats/investstats.jsp> (접속일: 2016.11.14.)

- 1998년 이후 그동안 억제되었던 도소매, 금융 등 서비스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증대와 M&A 형태의 투자증대에 힘입어 연간 유입액이 최대 100억달러를 넘는 수준까지 크게 확대됨
 - 특히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110억달러의 외국인투자가 유입되어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01~2003년에는 40~50억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가 2004~2008년에는 80~100억달러로 다시 증가함
 - 2001~2003년은 실질 GDP 증가율이 -0.1~0.1%
 - 2009~2010년에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국내 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외국인투자 유입액이 다시 감소하였으며, 이후 2011년에 100억달러 수준으로 회복됨

- 2013~2015년에는 연간 유입액이 최대 160억달러 수준으로 급격한 증가를 이루며 크게 확대됨,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 구간 전체로 볼 때 1998~2013년 구간은 이전의 두 개 구간에 비해 외국인투자 규모가 획기적으로 증가한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구간과는 달리 이 구간 내의 연도별 변화만 보면 해당되는 15년의 기간 동안 외국인투자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음

[그림 II -9] 1998~2015년 외국인투자 유입액(도착 기준)

(단위: 백만달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외국인투자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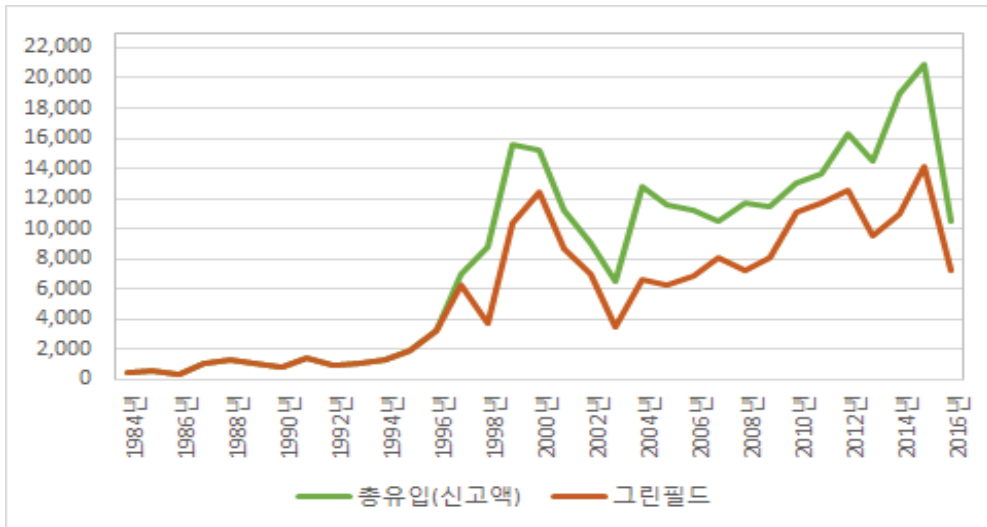
<http://www.motie.go.kr/motie/in/it/investstats/investstats.jsp> (접속일: 2016.11.14.)

- 2013년 이후 구간은 1998년 이후 그동안 억제되었던 도소매, 금융 등 서비스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증대와 M&A 형태의 투자증대에 힘입어 크게 확대된 이후로 규모 면에 있어서는 600만달러 이상의 큰 증가가 이루어짐
- 1998년 이후에는 그 이전에 비해 외국인투자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되었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M&A형 투자의 허용을 들 수 있음
 - 1998년부터 M&A형 외국인 투자가 본격적으로 허용되어 이듬해인 1999년에는

총외국인투자 신고액의 67%를 M&A형 외국인투자가 차지하였으며, 1998~2015년 전체 유입액(신고 기준)의 30.7%를 M&A형이 차지하였음

- [그림 II-10]에서는 신고액 기준으로 총유입액과 그린필드형 외국인투자의 연도별 유입 추이를 정리하였는데, 총유입액과 그린필드형의 차이가 M&A형 투자임
 - 그린필드형 투자는 외국자본이 국내에 들어와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국자본의 유입이 국내 투자 및 고용의 증대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음
 - 한편, M&A형 투자는 외국자본으로 기존의 국내 기업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내 투자·고용 증대와 직접 연계되지 않음
- 조세지원은 국내에서 투자와 고용을 증대시키는 그린필드형 투자를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분석하는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도 그린필드형 투자에 있음

[그림 II -10] 1998~2015년 외국인투자 총유입액과 그린필드형 유입액(도착 기준)
(단위: 백만달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외국인투자정보,
<http://www.motie.go.kr/motie/in/it/investstats/investstats.jsp> (접속일: 2016.11.14.)

나. 국가별 투자동향

- 외국인투자 유입액의 투자자 거주지별 구성을 보면 <표 II-9>과 같음
 - 1962~2013년 유입액 총액을 기준으로 상위 21개 국가의 시기별 비중 변화를 검토하였는데, 이들 21개 국가로부터의 유입액이 총유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2.4%임
 - 21개 국가 중 흔히 조세회피에 많이 활용되는 저세율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이 11개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국가로부터의 유입이 총외국인투자 유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7%임
 -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홍콩, 케이만 군도, 벨기에, 아일랜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사모아,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 19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유입이 총유입액의 80%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이후 외국인투자 유입이 자유화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국별 구성이 다양하게 변화됨

- 제조업 부문의 시장 개방이 시작되면서 1984~1992년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서유럽 선진국의 비중이 증대되었으며, 이와 함께 네덜란드와 스위스로부터의 유입도 크게 증가함
 - 한편 일본의 비중이 크게 하락함

- 1993~1997년에는 시장의 개방이 확대되면서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동남아 국가의 비중이 증대되었으며, 유럽 국가 중에서는 아일랜드와 프랑스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
 - 일본의 비중은 더욱 하락하여 1980년대 초까지는 50%를 넘었던 것이 1993~1997년에는 11.45%가 됨
 - 한편 미국의 비중은 10% 정도 상승함

<표 II -10> 투자자 거주지국별 외국인투자 유입액 비중(신고 기준)

(단위: %)

	국가	1962~ 1983	1984~ 1992	1993~ 1997	1998~ 2015	전체
	총유입액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	미국	27.79	28.99	37.09	23.20	24.90
2	일본	53.10	37.56	11.45	14.49	15.64
3	네덜란드	2.08	10.18	9.68	9.81	9.92
4	영국	1.44	3.00	3.59	5.15	5.01
5	독일	1.85	5.64	4.37	4.77	4.78
6	싱가포르	0.02	0.89	1.29	5.60	5.50
7	말레이시아	0.00	0.00	11.15	2.56	2.97
8	홍콩	4.32	1.85	3.37	3.93	4.27
9	프랑스	0.71	2.67	4.36	2.75	2.87
10	캐나다	0.06	0.35	1.31	3.24	3.11
11	중국	0.00	0.06	0.25	3.46	3.42
12	케이만군도	0.50	0.44	0.05	2.18	2.09
13	벨기에	0.27	0.23	0.19	1.50	1.39
14	아일랜드	0.00	0.00	6.93	1.05	1.36
15	호주	0.12	0.08	0.18	1.03	0.96
16	스위스	1.73	4.00	2.02	0.80	0.98
17	룩셈부르크	0.02	0.02	0.03	1.81	1.66
18	사모아	0.00	0.00	0.00	0.90	0.82
19	버진아일랜드	0.00	0.14	0.36	1.41	1.33
20	버뮤다	0.79	0.56	0.16	0.94	0.93
21	스웨덴	0.11	0.47	0.28	0.86	0.8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외국인투자정보,

<http://www.motie.go.kr/motie/in/it/investstats/investstats.jsp> (접속일: 2016.11.14.)

□ 1998~2015년에는 미국의 비중이 23.20%로 하락하고 일본의 비중은 14.49%로 상승하였음

- 그 외에 중국의 비중이 1993~1997년의 0.25%에서 3.46%로 증가하였고, 영국과 독일의 비중도 상승함
- 또한 싱가포르, 벨기에, 룩셈부르크, 사모아,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등 작은 국가들의 비중이 증대되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변화임
- 한편 말레이시아, 스위스, 아일랜드와 같이 이전에 투자 비중이 컸던 소규모 국가들의 비중은 오히려 크게 하락하였음

다. 업종별 투자동향

(1) 업종별 구성

- <표 II-10>에서는 앞서 검토한 구간별로 신고된 유입액에서 각 업종별 유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리하였음
 - 앞에서는 1984~1997년을 하나의 구간으로 보았는데, 아래 표에서는 1984~1992년과 1993~1997년의 두 개 구간으로 구분하였음
 - 앞의 [그림 II-8]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3년 이후에는 이전에 비해 외국인투자 유입액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
 - 이는 1993~1997년의 외국인투자 개방 예고제를 포함하여 OECD 가입과정에서 시장개방의 속도를 가속시키고, 그 외에 외국인투자를 저해하는 제도적 장애요인들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정비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 대분류로 보면 1962~1983년에는 제조업이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그 비중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였음
 - 반면에 서비스업의 비중은 1962~1983년 27.94%에서 1984~1992년 40.17%, 1993~1997년 53.94%, 1998~2015년 57.74%로 계속 증가함

- 자세히 보면, 제조업의 경우 1980년대까지는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였던 중화학공업에 포함하는 화공업과 수출용 가전제품이 주류를 이룬 전기·전자공업이 각각 14~22%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 전기·전자공업은 그 비중이 줄긴 하였지만 1998~2013년에도 13%로 제조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 1998~2013년에 제조업 부문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 부문은 화공업으로 6.67%임
 - 운송용 기계는 1984~1992년에 8%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비중이 하락하여 1998~2013년에는 5.89%를 차지함

<표 II -11> 외국인투자 유입액의 업종별 구성 변화(신고 기준)

(단위: %)

	1962~ 1983	1984~ 1992	1993~ 1997	1998~ 2015	전체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농·축·수산·광업	0.65	0.19	1.84	0.46	0.59
제조업	65.29	58.51	42.09	21.74	28.37
식품	2.68	4.05	9.65	1.02	1.46
섬유·직물·의류	8.35	1.31	0.55	0.86	1.34
제지·목재	0.66	1.87	3.26	0.33	0.47
화학	21.16	17.89	8.64	2.86	4.12
의약	1.70	3.02	1.45	0.47	0.64
비금속광물	2.85	2.32	0.92	0.65	1.02
금속	3.52	1.48	1.43	1.56	1.95
기계·장비	2.88	3.08	2.95	3.22	4.07
전기·전자	16.12	13.73	7.25	6.86	8.38
운송용기계	3.33	8.03	5.05	2.49	2.80
기타제조	2.04	1.74	0.95	1.42	2.11
서비스업	27.94	40.17	53.94	76.34	69.54
도·소매(유통)	3.26	12.70	31.28	45.59	41.54
음식·숙박	14.29	13.86	8.65	4.71	4.31
운수·창고(물류)	2.62	0.38	0.87	3.08	2.92
통신	0.00	0.00	1.22	0.51	0.48
금융·보험	5.78	8.94	7.45	4.58	4.33
부동산·임대	0.08	1.84	0.20	3.59	3.04
비즈니스서비스업	1.42	1.83	3.32	11.17	10.15
문화·오락	0.05	0.26	0.33	1.48	1.30
공공·기타서비스	0.44	0.36	0.62	1.62	1.47
전기·가스·수도·건설	6.12	1.13	2.13	1.47	1.5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외국인투자정보,

<http://www.motie.go.kr/motie/in/it/investstats/investstats.jsp> (접속일: 2016.11.14.)

- 서비스업의 경우 1962~1983년과 1984~1992년에는 음식숙박업이 각각 1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993~1997년에는 도소매(유통)업이 31.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도소매(유통)업은 1984~1992년에는 12%를 차지하였으며, 1998~2015년에는 45%를 차지하여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며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투자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임

- 1998~2015년에는 도·소매(유통)부동산·임대업, 비즈니스서비스업, 문화·오락업의 비중 증대가 눈에 띈
 - 이들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5.6%, 3.6%, 11%, 1.5%로 이들 4개 업종이 1998~2015년의 외국인투자 유입액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1.7% 수준임
 - 도·소매(유통)을 제외한 이들 업종은 그 이전에는 거의 유입이 허용되지 않던 업종들임

- 본 연구에서 업종별 구성에 대해 검토하면서 특별히 주목하는 부분은 조세감면 대상인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외국인투자 동향임
 - 뒤에서 자세하게 검토하겠지만 2005~2015년에 조세감면 승인을 받은 외국인투자 기업 중에서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서비스업 운영을 이유로 감면 승인을 받은 기업이 61%를 차지함
 - 개별형 외국인투자기업이 21%, 단지형 외국인투자기업이 9%로 둘을 합해서 30%를 차지하였고,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감면 승인을 받은 기업이 8%를 차지하였음
 - 고도기술수반사업·산업서비스업 246건 중 중 제조업 분야의 고도기술수반사업이 214건으로 87%를 차지하고 산업지원서비스업이 32건으로 13%를 차지함
 - 제조업 분야의 고도기술수반사업 중에서는 전자·정보 및 전기분야가 85개로 총 246건 중 34.6%를 차지하였고, 그다음이 재료·소재, 항공·수송분야로 각각 34건과 33건의 감면 승인을 받았음

- 위 <표 II-10>에서는 제조업 분야가 업종을 불문하고 비중이 상당히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그동안 유입이 금지되어 있던 서비스업의 유입이 급격하게 증가한 데 따른 결과일 수 있음

- 다음 <표 II-11>에서는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제조업 분야의 업종별 구성 변화를 검토하였음

〈표 II -12〉 제조업 분야 외국인투자 유입액의 업종별 구성 변화(신고 기준)

(단위: %)

	1962~ 1983	1984~ 1992	1993~ 1997	1998~ 2015	전체
제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식품	4.1	6.9	22.9	4.7	5.1
섬유·직물·의류	12.8	2.2	1.3	3.9	4.7
제지·목재	1.0	3.2	7.7	1.5	1.7
화학	32.4	30.6	20.5	13.2	14.5
의약	2.6	5.2	3.4	2.2	2.2
비금속광물	4.4	4.0	2.2	3.0	3.6
금속	5.4	2.5	3.4	7.2	6.9
기계·장비	4.4	5.3	7.0	14.8	14.3
전기·전자	24.7	23.5	17.2	31.6	29.5
운송용기계	5.1	13.7	12.0	11.5	9.9
기타제조	3.1	3.0	2.2	6.5	7.4

자료: 〈표 II-10〉의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

출처: 저자 작성

□ 제조업 분야의 업종별 구성 변화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중화학공업 발전 전략에 따라 1980년대까지 많이 유입되었던 화학업 분야의 외국인투자 비중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많이 하락하였음
- 전기·전자공업은 지속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1990년대 후반 이후 그 비중이 더욱 증대되어 1998~2015년 외국인투자 유입액의 31.6%를 차지하였음
 - 이는 이 부문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입은 것으로 보이며,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업종임
- 운송용 기계의 비중도 크게 증가하여 1998~2013년에는 제조업 부문 외국인투자 유입액의 15.4%를 차지했으나 2013년 이후로 다시 큰 폭으로 감소되어 11.5%를 차지함
 - 운송용 기계 부문은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조세감면 승인 건수의 13.4%를 차지하여 조세감면에서 중요한 업종임
- 재료·소재공업도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서비스업에 대한 조세감면 승인 건

수의 13.8%를 차지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비금속광물과 금속 부문의 외국인투자 변화를 보면 1990년대 중반까지는 그 비중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1998년 이후에는 증가함

- 각각 1998~2015년의 제조업분야 유입액에서 6.5%를 차지함

4.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특징 요약

-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감면기간을 기준으로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상 세목은 동일하지만 업종별 감면요건은 상이함
 - 조세감면 기간이 7년인 경우와 5년인 경우
 - 조세감면 기간이 7년인 경우에는 5+2(5년 100% 감면, 2년 50% 감면), 감면한도는 외국인투자 누계액의 70%까지
 - 조세감면 기간이 5년인 경우에는 3+2(3년 100% 감면, 2년 50% 감면), 감면한도는 외국인투자 누계액의 50%까지
 - 조세감면 기간이 7년과 5년으로 상이하지만, 대상 세목은 국세인 경우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그리고 지방세인 경우에는 취득세, 재산세로 동일함
 - 다만 업종별로 조세감면 요건에는 조세감면 대상별로 특징을 감안하여 차이가 있음
 - 개별형 투자지역의 경우 제조업은 3천만달러 이상, 관광업은 2천만달러 이상이지만 R&D는 2백만달러 이상임
 - 제조업의 경우에도 개별형 투자지역은 3천만달러 이상, 단지형 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또는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의 감면요건 투자규모는 1천만달러 이상임
 - 개별형 투자지역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단지형 투자지역은 중소기업 투자기업 대상이기에 차이가 있음

<표 II -13>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조세감면 대상	감면요건	조세감면 방법	
		대상세목	감면기간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년간 감면 (외투비율 만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100%, 2년 50% ○ 감면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투누계액의 100분의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형 투자지역 기업 ○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사업지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시스템 통합·관리, 자료처리 등 : 3천만달러 ○ 관광·휴양업, 국제회의·청소년수련시설 등 : 2천만달러 ○ 물류업, SOC : 1천만달러 ○ R&D : 2백만달러 ○ 공동사업 : 3천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 1천만달러 ○ 물류업 : 5백만달러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 1천만달러 ○ 물류업 : 5백만달러 ○ R&D : 2백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엔지니어링, 시스템 통합·관리, 등 : 1천만달러 ○ 관광·휴양업, 국제회의·청소년수련시설 등 : 1천만달러 ○ 물류업, 의료기관 : 5백만달러 ○ R&D : 1백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사업 ○ 기업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액 3천만달러 이상 ○ 외투 50% 이상 ○ 총사업비 5억달러 이상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액 1천만달러 이상 ○ 외투 50%이상 ○ 총사업비 1억달러 이상 		

자료: KOTRA(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Ⅲ. 주요 외국의 조세지원제도



Ⅲ. 주요 외국의 조세지원제도

1.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비교

가. 호주

(1) 호주의 자본재 수입 관세 면제제도

- 해외, 국내기업에 상관없이 호주 정부가 주도하는 특정 산업(광산업, 천연자원 가공, 농업, 식품 가공, 식품 포장, 제조, 가스 공급, 수자원 공급, 전원 공급) 관련 자본재 도입의 경우, 관세를 면제함

(2) 호주의 자본재 수입 관세 면제제도 세부내용

- 호주 정부는 정부가 주도하는 주요 공공 및 정부주도 개발 프로젝트에 해외 및 국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을 운영 중이며 이에 대한 혜택으로 특정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자본재를 수입할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있음
- 호주 정부는 정부가 주도하는 주요 개발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01년 4월부터 AIP(Australian Industry Participation)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 Australian Industry Participation 정책: 2001년 4월 Commonwealth, State and Territory Industry에 의해 시행된 정책으로 500만호주달러 이상의 주요 대규모 개발산업에 대한 해외 및 호주기업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세부정책은 각 호주의 주정부가 독립적으로 수행함.¹¹⁾
- 이 중 Enhanced Project By-law Scheme에 따라 특정 산업(광산업, 천연자원

10) Gov.au, <http://www.industry.gov.au/industry/IndustryInitiatives/AustralianIndustryParticipation/Pages/default.aspx> (접속일: 2016.11.08.)

11) Gov.au, <http://www.industry.gov.au/industry/IndustryInitiatives/AustralianIndustryParticipation/Pages/default.aspx> (접속일: 2016.11.08.)

가공, 농업, 식품 가공, 식품 포장, 제조, 가스 공급, 수자원 공급, 전원 공급) 자본재 수입의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있음¹²⁾

- 정부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의 기업에 모두 적용함
- 호주에 진출한 우리나라 KEPCO(한국전력공사)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에 위치한 Bylong 석탄 광산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진출한 분야가 광산 업으로 Enhanced Project By-law Scheme에 따라 호주기업과 동일하게 자본재 수입 시에 관세가 면제됨¹³⁾.

나. 영국

(1) 영국의 자본재 수입 관세 면제제도 개관

- 영국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해외, 국내 기업에 상관없이 영국 정부에서 산업 진흥 차원에서 특정 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음

(2) 영국의 자본재 수입 관세 면제제도 세부내용

- 영국 정부에서 특정 산업의 특정목적으로 사용할 자본재 도입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음
 - HMRC에서는 UK Trade Tariff: relief from customs and excise duties and VAT를 통해 크게 1) 재수입 자본재 2) 법률에 의한 단기 면세 3) 특정 산업 및 요건에 쓰이는 자본재 및 산업재에 대해서 과세를 면제하고 있음¹⁴⁾
- 이 중에서 법률에 의해 기간에 따라 면세되는 자본재 중에서 최종용도 사용 방식에 따른 물품의 면세제도(End-Use Relief)가 있음
 - End User Relief는 EU의 관세정책으로 EU 회원국이 적용하고 있으며, EU의

12) Gov.au, <http://www.industry.gov.au/industry/IndustryInitiatives/AustralianIndustryParticipation/Pages/EnhancedProjectBy-lawScheme.aspx>(접속일: 2016.11.08.)

13) Gov.au, <http://www.industry.gov.au/industry/IndustryInitiatives/AustralianIndustryParticipation/Documents/AIP%20Authority%20AIP%20plan%20Summaries/KEPCOBylongCoalProject-AIPPlanSummaryOperation.pdf> (접속일: 2016.11.08.)

14)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trade-tariff-relief-from-customs-and-excise-duties-and-vat/uk-trade-tariff-relief-from-customs-and-excise-duties-and-vat> (접속일: 2016.11.17.)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자본재의 관세를 면제 또는 할인해 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¹⁵⁾

- 이 정책은 수입자가 법률에서 정의한 목적에 의해 사용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단발 또는 3년에 걸쳐 수입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자본재의 금액은 50만파운드를 넘지 않아야 함¹⁶⁾
- 해당 자본재 목록¹⁷⁾:
 - 선박건조관련 자재
 - 항공기 및 부품(민간용 및 군수용)
 - 유류계 탄화수소 (hydrocarbon oil)
 - 해상 추진 엔진
 - 군수 장비
 - 어업
 - 치즈
 - 카세인(Casein) (치즈용)

다. EU

- EU는 End-Use Relief를 통해 특정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EU가 아닌 제3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의 면제 또는 할인을 법률적 근거로 명시하고 있음
- the Implementing Provisions to the Community Customs Code의 제2장의 291~292항에서 end-use 목적에 따라 관세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¹⁸⁾
- 부속서(Annex 40)에서 end-use relief의 목록을 명시하고 있는데, 주로 항공기, 선박 등과 관련 있는 자본재(HS 코드 4자리 8407, 8409, 8411, 8412, 8803의 일부)에 대해 관세를 할인 또는 면제하고 있음¹⁹⁾

15)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trade-tariff-end-use-relief-on-goods-used-for-a-prescribed-use/uk-trade-tariff-end-use-relief-on-goods-used-for-a-prescribed-use>(접속일: 2016.11.17.)

16) Gov.uk, <https://www.gov.uk/guidance/end-use-relief> (접속일: 2016.11.17.)

17) Gov.uk, <https://www.gov.uk/guidance/end-use-relief> (접속일: 2016.11.17.)

18) EChapter 2, Article 292-296,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993R2454:en:HTML>(접속일: 2016.11.17.)

19) EU Commission, Annex 40,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993R2454:en:HTML>(접속일: 2016.11.17.)

- 수입자가 해외 또는 국내 사업자에 대한 구분은 없음
- 뿐만 아니라 EU 위원회에서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EC) No 1186/2009를 통해 수출과 수입 시에 특정 물품을 정의하고 면세를 허가하고 있으며, 이 중 수출입 물품의 이동활동에 필요한 자본재의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있음²⁰⁾
 - 2009년에 시행된 Council Regulation에 따르면 수출 및 수입 물품의 목록을 규정으로 언급함²¹⁾
 - 주로 개인소유의 물품, 농수산물, 공익 및 교육 목적의 물품이 포함되어 있으나 제7장에 제3국에서 EU 국가로의 이동활동을 위한 자본재와 그와 동등한 장비의 수입에는 관세를 과세하지 않음²²⁾
 - 그러나 모든 이동활동에 필요한 자본재를 수입할 경우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성 자본재,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 해당하지 않음²³⁾

2. 특정 업종에 대한 조세지원²⁴⁾

가. 중국

- 중국은 다음과 같은 산업군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며 이들에 대해 「기업소득세법」에 대한 우대적 조세혜택을 제공²⁵⁾
 - ① 고도신기술기업(high and new technology enterprises)
 - ② 소프트웨어와 전기회로 산업(software and integrated circuit industry)
 - ③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agriculture, forestry, animal husbandry and fishery)
 - ④ 사회기반시설 개발(infrastructure developments)
 - ⑤ 환경보호, 물 또는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environmental protection, water or energy saving projects)

20)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9:324:0023:0057:EN:PDF>(접속일: 2016.11.17.)

21)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9:324:0023:0057:EN:PDF>(접속일: 2016.11.17.)

22)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9:324:0023:0057:EN:PDF>(접속일: 2016.11.17.)

23)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9:324:0023:0057:EN:PDF>(접속일: 2016.11.17.)

24) CCH(2012), CCH(Taiwan, 2013), CCH(Singapore, 2013), CCH(2013)을 참조한 기획재정부(2014)의 pp.32~63를 재인용하여 작성함

25) 제시하는 사업군은 중국의 기업소득세법(EITL) 제25조 이하에 제시되어 있음

- ⑥ 기술혁신과 증진(technology innovation and improvements)
- ⑦ 증권투자펀드(security investment funds)
- ⑧ 소형기업(small scale enterprises)
- ⑨ 첨단기술서비스기업(Advanced Technology Service Enterprises)

<표 III-1> 중국의 특정 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新 기업소득세법)

항목	해당업종
소득세 면제 및 감면 (新 기업소득세법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농업·임업·축산업·어업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 기업소득세의 100% 또는 50% 감면 - 정부에서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회기반시설(항만, 부두, 공항, 철도, 도로, 전력 및 수리 등)에 투자, 경영하여 취득한 소득; 처음으로 생산경영수입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 기업소득세 100% 면제, 그 후 3년간 50% 감면¹⁾ - 요건을 충족하는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절수사업에 종사하고 취득한 소득, 처음으로 생산경영소득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 기업소득세 100% 면제, 그 후 3년간 50% 감면 - 거주자기업이 기술소유권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50% 감면
15% 세율적용 (新 기업소득세법 29)	- 첨단기술기업 ²⁾
수입금액 공제 (新 기업소득세법 33)	- 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국가산업정책규정에 부합되는 제품을 생산하고 취득한 수입금액 ³⁾ 의 90% 공제

주: 1) ① 기업소득세 100% 면제: 야채, 곡물, 서류, 유과, 두류, 면화, 마류, 당과, 과일, 견과류 재배, 농작물의 신품종 재배, 중약재의 재배, 임목의 재배, 목축과 가금류의 사육, 임산품의 채집, 관개 및 농산품의 초기 가공, 수의 등 농림목어업 관련 서비스업, 원양어업
 ② 기업소득세의 50% 감면: 화분, 차 및 기타 음료 작물과 향료 작물의 재배, 해수양식 및 내륙양식
 2) 첨단기술기업의 요건은 ①핵심적이고 자주적인 지적재산권을 보유해야 함 ②상품 또는 서비스가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첨단기술 영역”에 해당되어야 함. ③연구·개발비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규정 비율 이상 되어야 함 ④기업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첨단기술상품 또는 서비스 수입 비율이 규정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함 ⑤과학기술인력이 기업의 직원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규정 비율 이상 되어야 함. ⑥‘첨단기술기업 인정관리방법’에서 정한 기타 조건
 3) 기업이 자원종합이용 기업소득세 우대목록에서 정한 자원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국가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으며, 국가와 업계의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을 생산하고 얻은 수입을 말할. 전항에서 규정한 원재료가 생산하는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자원종합이용 기업소득세 우대목록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됨

자료: 홍범교·기은선(2007),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중국에서는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위의 산업에 대해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조세우대혜택을 동등하게 적용함
- 이전의 지역 위주의 우대정책에서 산업별 우대정책으로 변화되었으며 첨단기술기업, 사회기반시설 및 주요 산업에 대해서 혜택이 주어짐

- 추가적으로 자본세와 관련된 혜택의 경우 우대적 조세혜택을 제공받는 산업 중 소프트웨어와 전기회로 산업에 대하여 3% 초과 부가가치세의 환급 혜택²⁶⁾이 있음

<표 III-2> 중국의 특정 업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조세지원제도	혜택 요약	혜택 내용		
		대상	기간	혜택률(%)
① 도신기술기업 (HNTE)에 대한 지원	소득세 감면	고도신기술기업		기업소득세율 15%
② 첨단기술서비스기업에 대한 지원	소득세 감면	21개 도시에 위치한 첨단기술서비스기업		기업소득세율 15%
	직원교육비공제			총직원 월급의 8%
③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또는 전자회로 디자인기업	기간감면 (2+2)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또는 전자회로 디자인기업	이익발생 후 2년	소득세 면제
			이후 3년간	소득세 50% 감면 ¹⁾
	부가가치세 환급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3%를 초과하는 부가가치세 환급
			직원교육비공제	
고정자산 가속상각 (2+3)	소프트웨어 또는 전자회로 제품 생산 기계	소프트웨어: 2년 전자회로 제품 생산 기계: 3년	가속상각	
④ 전자회로 제조기업	기간감면 (2+3)	전자회로의 폭이 0.8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제품	이익발생 후 2년	소득세 면제
			이후 3년 간	소득세 50% 감면
	소득세 감면	전자회로의 폭이 0.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제품		기업소득세율 15%
	소득세 감면	총 투자액이 CNY 80억인 전자회로 제조기업		기업소득세율 15%
소득세 감면	운영기간이 15년 이상인 전자회로 제조기업	이익발생 후 5년간	소득세 면제	
		이후 5년 간	소득세 50% 감면	

주: 1) 소득세 50% 감면은 결국 일반적인 기업소득세율 25%의 절반인 12.5%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결과임

자료: 기획재정부(2014)

26) 세법연구센터(2012년 제1호), pp.97~99

나. 대만

(1) 산업창신조례(産業創新條例)²⁷⁾

- 대만은 19년간 적용했던 「촉진산업승급조례」(促進産業昇級條例)를 2009년 말부로 일몰시킨 후, 이를 대체할 「산업창신조례」(産業創新條例)를 제정함
 -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대만의 모든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는 법률임
 - 「산업창신조례」의 도입과 동시에 대만 정부는 법인세율을 25%에서 17%로 인하함
 - 이는 대기업, 외국인투자자, 첨단기술 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던 기존의 제도를 탈피하고, 주변국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통해 대만으로의 외국인 투자를 더 유치하기 위한 의도로 여겨짐
 - 「산업창신조례」에 의해 대만에 위치한 기업은 지출한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15%까지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²⁸⁾
 - 201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0년 동안 혜택이 제공됨
 - 다만 총공제액은 당해 기업이 그 해 납부해야 할 법인세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27) Library of Congress(2010).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1939_text. (접속일:2016. 8. 18.)

28) 산업창신조례(Statute for Industrial Innovation) 제10조

<표 III-3> 대만의 촉진산업승급조례와 산업창신조례의 비교

	구(舊)촉진산업승급조례	신(新)산업창신조례
시행시기	1991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19년)	2010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10년)
대상	· 첨단기술기업(high-tech company) · 대기업(large corporation)	·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통적 산업 군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산업군 · 기업의 크기에 상관없음 (중소기업 포함)
조세 지원 제도	R&D에 대한 인센티브(투자액 공제)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R&D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인건비 공제)	
	신기술 및 신장비에 대한 인센티브 (투자액 공제)	
	특정 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주주들에 대한 투자세금 공제)	
	특정 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투자회사에 대한 5년간 세금 면제)	
	로열티 지불에 대한 세금 면제	
기술이전의 대가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소득세의 5년간 유예 등		

자료: 기획재정부(2014)

다. 싱가포르

(1) 금융허브

- 싱가포르는 금융허브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얻은 일정한 역외 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또는 세율감면 혜택을 제공함
 - 소득세법에 규정된 금융업 인센티브(Financial Sector Incentive, 이하 FSI)제도에 따라 역외소득에 대해 조세혜택을 제공함²⁹⁾
 - FSI에는 Standard-tier(ST)와 Enhanced-tier(ET)의 두 종류가 있음
 - Standard-tier에 속하는 활동에 대한 소득의 경우에는 12%의 감면된 세율이 적용³⁰⁾

29) FSI제도는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MAS))에 의해 규제·운영되는 제도로서, 2004년에 시행되어 2013년 12월 말에 1차적으로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5년이 연장되어 2018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싱가포르 2013년 예산안)

- Enhanced-tier에 속하는 활동에 대한 소득의 경우에는 5%의 감면된 세율이 적용

<표 III-4> 싱가포르의 금융업 인센티브제도와 역외소득

항목	조세지원 내용	FSI
아시안달러 거래계정 ¹⁾	아시안달러의 수취 및 대출거래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된 12%의 세율이 적용됨	ST
승인받은 파생상품 거래 ²⁾	승인된 파생상품거래 기업은 상품거래 또는 상품거래의 중개인서비스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감면된 5%의 세율이 적용됨	ET
승인받은 채권중개 ³⁾	승인된 채권의 인수 및 분배행위를 하는 중개기업은 그 중개서비스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감면된 5%의 세율이 적용됨	ET
승인받은 펀드매니저 ⁴⁾	- 승인받은 펀드매니저가 외국인투자자에게 역외펀드 및 비싱가포르 자산펀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는 감면된 12%의 세율이 적용됨	ST
	- 펀드 규모가 최소 SGD 5천만 이상인 펀드의 매니저의 소득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이 적용되고, FSI 통합 이전에 존재하던 펀드관리 인센티브의 혜택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음. 그러나 이 혜택들은 2014년 3월 31일부로 일몰되었음	ET
투입자본 시장중개 ⁵⁾	-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외국회사에 의해 발행된 최초상장 주식, 채권, 증권의 인수와 관리를 하는 기업은 해당 소득에 대해 5%의 세율이 적용됨	ET
	- 이외의 다른 행위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12%의 세율이 적용됨	ST
운영총괄 본부 ⁶⁾	운영총괄본부가 얻은 경영수수료 및 기타 지역본부 관련 소득,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이자 또는 사용료에 대해 12%의 세율이 적용됨	ST

주: 1) Asian Currency Unit(ACU)이란 싱가포르 정부가 자국에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아시안달러의 수취 및 대출거래를 기록하는 계정을 말함. 아시안달러 거래는 싱가포르 소재 은행의 ACU 계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계정을 통한 거래는 정부의 외환규제를 받지 않는 특징이 있음. 이는 국내금융시장과 국제자본시장의 병행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국제금융 시장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2) Approved Derivative Traders(ADT)
- 3) Approved Bond Intermediaries(ABI)
- 4) Approved Fund Managers(AFM)
- 5) Equity Capital Market Intermediaries(ECMI)
- 6) Operational Headquarters(OHQ)

자료: 기획재정부(2014)

30) 싱가포르 2010년 예산안에 의해 2011년 1월 1일부터 Standard-tier의 감면세율은 기존의 10%에서 12%로 인상되었음

(2) 운영총괄본부(Operational Headquarter)³¹⁾

- 요건을 충족하는 FSI-HQ(Financial Sector Incentive- Headquarters) 기업³²⁾에 대해 해외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운영총괄본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해 감면된 10%의 세율이 적용됨
- OHQ는 운영총괄서비스 외에 생산, 조립 또는 기타 서비스 활동을 제공할 수도 있음

(3) 국제법률서비스 허브

- 싱가포르에 법률서비스군으로 등록된 회사 또는 외국회사의 지점에서의 국제 법무서비스의 제공은 개발·확장기업(Development and Expansion Company)의 적격 활동에 해당되어 일정기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승인된 국제법률서비스는 그 법률서비스로부터 얻은 '확장소득'에 대해 5년의 기간 동안 감면된 10%의 세율이 적용됨
 - 싱가포르의 국제법률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연장되었음

(4) 제조업 및 서비스업

- 개척자기업이라고 판단되는 제조업 기업³³⁾에 대해서 해당 개척산업 관련 사업이나 거래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5~15년 동안 소득세가 면제되며,³⁴⁾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개척자기업³⁵⁾이라고 판단되면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같은 혜택을 제공³⁶⁾

31) 운영총괄본부(이하 OHQ)는 다른 국가에 있는 자회사 또는 특수관계 회사에 경영·관리·기술 또는 다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르에 설립 또는 등록된 실체(entity)를 의미

32) FSI-HQ의 요건은 ① 운영총괄본부는 싱가포르 통화청(MAS) 또는 그 거주국의 금융감독기관에 의해 승인되거나 허가를 받은 다른 회사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100% 소유해야 함. ② 자회사, 해외지점, 또는 특수관계 회사를 위해 회계·투자·재무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33) 싱가포르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oard of Singapore)이 정한 개척자기업의 지정 요건은 ① 제품의 유형, 투자금액, 기술수준 등 ② 아직 싱가포르에서 제조되고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한 투자 여부 ③ 전문적인 사업, 신제품·첨단기술제품 제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개척자 지위를 얻을 수 있음 ④ 첨단기술이 아닌 전통적인 산업이라 하더라도 싱가포르에 소개되어 있지 않는 분야라면 개척자 지위를 얻을 수 있음

34) 경제확장인센티브법(Economic Expansion Incentives Act, Cap 86, 2005 Revised Ed) 제5조, 제7조, 제13조에서 규정함

35) ① 엔지니어링과 기술서비스(실험, 컨설팅, 연구·개발 활동을 포함) ② 컴퓨터 기반 정보와 기타 컴퓨터 관련 서비스 ③ 산업디자인의 생산 또는 개발 ④ 기타 싱가포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재정부 장관이 정한 분야에서의 서비스 내지 활동

- 개발·확장인센티브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³⁷⁾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조세지원기간 동안 적격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평균 이상의 소득에 대해 5% 이상의 감면된 법인세율이 적용됨
- 조세지원기간은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함
- 이미 개척자 지위(pioneer status)를 얻은 기업과 개척자 지위를 얻지 못했으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인센티브임
-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감면개시일 직전 3년간의 연평균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임

〈표 III-5〉 싱가포르의 특정 업종에 대한 조세지원

조세지원제도	혜택 요약	혜택 내용		
		대상	기간	혜택률(%)
①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기간감면	개척자 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	생산일로부터 5~15년 동안	소득세 면제
	기간감면	개척자서비스기업으로 승인된 기업	적격활동을 시작한 날로부터 5~15년 동안	소득세 면제
	개발확장인센티브(기간감면)	적격 활동을 영위하는 개발확장기업	5년 또는 10년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	5%이상의 감면된 법인세율이 적용
② 금융허브를 위한 지원	소득세 감면	아시안달러거래계정 소득/승인받은 펀드매니저의 수수료/운영총괄본부 소득		법인세율 12% 적용
		승인받은 파생상품 거래 소득/승인받은 채권중개 소득/투입자본 시장중개 소득		법인세율 5% 적용
③ 운영총괄본부를 위한 지원	소득세 감면			법인세율 10% 적용
④ 국제법률서비스 허브를 위한 지원	기간감면	승인된 국제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5년	법인세율 10%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2014)

36) 경제확장인센티브법 제16조~제18조에서 규정함

37) ① 싱가포르에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는 특정 산업의 제품의 생산 또는 증량생산 ② 엔지니어링과 기술서비스(실험, 컨설팅, 연구·개발 활동을 포함) ③ 컴퓨터 기반 정보와 기타 컴퓨터 관련 서비스 ④ 산업디자인의 생산 또는 개발 ⑤ 기타 싱가포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재정부장관이 정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의 서비스 내지 활동(선적관리, 선적대리, 물류, 화물운송 그리고 국제법률서비스)

라. 말레이시아

(1) 투자촉진법에서 지정한 산업에 대한 지원

- 말레이시아는 「투자촉진법」³⁸⁾과 「투자촉진명령」(Promotion of Investments Order 2008)에 따라 총 5개의 산업분야를 선정하고³⁹⁾ 이러한 활동이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개척자 지위(pioneer status)와 투자소득공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⁴⁰⁾

<표 III-6> 투자촉진법에서 지정한 산업

산업분야	활동/제조품	시행일
기계장비	(1) 기계도구 (2) 플라스틱 주입기계 (3) 재료취급설비 (4) 로봇과 공장자동화설비 (5) 상기 설비를 위한 부품	2001년 10월 20일
특수기계장비	(1) 특수 또는 공정기계류 또는 설비 (2) 포장설비 (3) 플라스틱 추출기계 (4) 상기 설비를 위한 부품	2002년 9월 21일
팜오일 바이오매스	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팜오일 바이오매스의 활용	2003년 9월 13일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의 생산	2005년 10월 1일
에너지보존	에너지의 보존	2007년 9월 8일

자료: 기획재정부(2014)

- 5개의 산업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에 주어지는 개척자 지위의 혜택은 5년간 소득세의 70~100% 면제임
 - 소득세 감면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이며, 원칙적으로 연장이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특별히 지정된 산업군, 국가적이고 전략적인 중요성을 지닌 활동이나

38) Promotion of Investment Act 1986(PIA 1986), Promotion of Investment (Amendment) Act 2007
 39) 해당하는 5개의 산업분야는 국가적이고 전략적인 중요성(national and strategic importance)을 지닌 산업으로, 일반적으로 투자금액이 크고, 회수기간이 길며, 기술수준이 높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을 의미하며, 이 산업은 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에서 결정함
 40) 개척자 지위와 투자소득공제 중 하나의 혜택을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제품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5년 연장이 허용됨

- 감면율은 일반적인 경우 70%이지만, 산업군에 따라 70~100%로 다양하게 나뉘져 있음

<표 III-7> 개척자 지위에 해당하는 활동유형별 감면혜택 요약

(단위: %, 년)

활동유형	각 사업연도에 감면되는 법정소득	감면기간
일반적인 경우	70	5
국가적이며 전략적인 중요성	100	10
권장지역	100	5
소형 제조기업	70	5
증장비의 수리	70	5
산업연계계획	100	5 또는 10
연구·개발	100	5
관광산업	70 또는 100	5 또는 10
제조관련서비스	70 또는 85	5
자동차부품모듈	70 또는 100	5
지식기반경제	100	5
에너지보존과 재생에너지 사용	100	10
팜오일 바이오매스	100	10
의료장비 실험투자	100	5

자료: 기획재정부(2014)

- 5개의 산업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주어지는 투자소득공제혜택은 5~10년간 자본지출 중 50~100%의 공제비율 적용임
 - 공제기간은 대부분 5년이나 계약 연구·개발 기업, 연구·개발 기업, 사내 연구·개발, 기술·직업훈련기업 또는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10년임
 - 공제비율은 활동유형에 따라 50~100%로 다양하게 나뉘져 있음
 - 최대 소득세 감면율은 활동유형에 따라 70~100%임

<표 III-8> 활동유형별 투자소득공제 혜택 요약

(단위: %, 년)

활동유형	각 사업연도의 자본지출 중 공제비율	공제가능 최대법정소득	공제기간
일반적인 경우	60	70	5
국가적이며 전략적인 중요성	100	100	5
권장지역	80	85	5
중장비의 수리	60	70	5
산업연계계획 또는 첨단기술기업	60	100	5
관광산업의 신규투자	100	100	5
자동차부품모듈	60	70 또는 100	5
지식기반경제	60	100	5
에너지보존과 재생에너지 사용	60 또는 100	70 또는 100	5
팜오일 바이오매스	100	100	5
의료장비 실험투자	60	100	5
계약 연구·개발 기업	100	70	10
연구·개발 기업	100	70	10
사내 연구·개발	50	70	10
기술·직업훈련기업 또는 사립 고등교육기관	100	70	10

자료: 기획재정부(2014)

(2) 승인받은 서비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거주자 기업에 대한 지원

□ 승인받은 서비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거주자 기업⁴¹⁾⁴²⁾은 5~10년 동안 법정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소득세 면제의 혜택 또는 5년 동안 자본지출의 60~100%에 대해 법정소득의 70~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선택할 수 있음

- 소득세 면제 혜택과 투자공제 혜택은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야 함
- 이외에도 승인받은 서비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은 수입관세, 판매세, 소비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41) 항공회사·공항·항구 운영, 철도수송,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기술, 위성기반통신사업, 가스 파이프라인, 전기발전설비, 물·하수도·유독성 폐기물 설비와 같은 서비스 프로젝트가 포함됨

42) 재무부(Minister of Finance)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① 대규모 자본투자, 장기간의 자본회수기간 ② 수입대체 가능성, 수출 및 외화획득 가능성 ③ 선진기술의 이용 및 기술이전 ④ 고용기회 창출 및 전문적인 기술의 이용 ⑤ 다른 경제부문의 효율성에 대한 기여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함

<표 III-9> 말레이시아 승인받은 서비스 프로젝트를 위한 세제감면 혜택 요약

(단위: %, 년)

항목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		소득세법 Schedule 7B에 따른 투자소득공제		
	면제기간 (年)	면제되는 법정소득 (%)	공제기간 (年)	자본지출 중 공제비율 (%)	공제가능 법정소득 (%)
일반적인 경우	5	70	5	60	70
권장지역	5	85	5	80	85
국가적·전략적 중요성	10	100	5	100	100
에너지보존서비스	5	70	5	60	70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	5	70	5	60	70

자료: 기획재정부(2014)

(3) 생명공학 산업

BioNexus 지위를 승인받은 기업⁴³⁾과 당해 기업의 투자자는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BioNexus 지위 기업에 의해 수행된 첫 승인사업일 경우, 첫 이익 발생일로부터 10년 동안 소득세가 면제됨
- 기존 사업의 확장 프로젝트의 경우, 기존 승인사업과 확장 프로젝트를 통해 이익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가 면제됨
- BioNexus 지위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됨

(4) 운영총괄본부(Operational Headquarters: OHQs)

말레이시아의 운영총괄본부(이하 OHQs)는 그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받음

- 승인된 운영총괄본부⁴⁴⁾는 법정소득⁴⁵⁾에 대해 10년 동안 소득세가 100% 면제되며, 그 기산점은 MIDA의 승인을 취득한 연도부터 계산됨

43) BioNexus 지위 기업은 말레이시아에 설립되어 생명과학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의미함

44) OHQs로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① 납입자본금 최소 MYR 5십만 이상 ② 매년 사업비 총지출액 MYR 1.5백만 이상 ③ 외국에 있는 3개 이상의 관계회사에 3개 이상의 적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45) 해당하는 법정소득은 ① 국외의 사무소 또는 관계회사에 적격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 ② 국외사무소 또는 관계회사를 위해 말레이시아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얻은 사용료 소득 ③ 국외사무소 또는 관계회사에 외화대출금을 제공하고 얻은 이자소득임

(5) 국제조달센터(International Procurement Center)와 지역물류센터(Regional Distribution Center)

- 일정조건을 갖춘⁴⁶⁾ 말레이시아의 국제조달센터와 지역물류센터는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사업활동을 통해 얻은 법정소득의 100%에 대해 10년 동안 소득세가 면제됨
 -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면제(2-tier exemption): 배당을 받는 주주가 기업일 경우, 1차적으로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되며, 그 주주기업이 소득세를 면제받은 배당을 그 기업의 주주에게 2차적으로 분배하는 경우, 그 주주들의 배당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면제됨

<표 III -10> 말레이시아의 특정 업종에 대한 조세지원

조세지원제도	혜택 요약	혜택 내용		
		대상	기간	혜택률(%)
① 개척자 지위에 해당하는 산업에 대한 지원	기간 감면	① 제조업, 농업, 통합농업, 호텔업, 관광업 또는 기타 산업 및 상업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 ② 국가적이며 전략적인 중요성이 있는 권장활동을 수행하거나 권장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5년 또는 10년	산업군 또는 지역에 따라 소득세가 70~100% 감면
② 권장활동 수행기업 또는 권장제품의 제조기업에 대한 지원	투자 소득 공제	권장활동을 수행하거나 권장제품의 제조기업	5년 또는 10년	관련 자본지출의 60~100%를 당해 사업연도의 법정소득의 70~100%만큼 공제 가능
③ 승인받은 서비스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기간 감면	항공회사·공항·항구 운영, 철도수송,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기술, 위성기반통신사업, 가스 파이프	5년 또는 10년	소득세의 70~100% 감면
	투자 소득		5년	관련 자본지출의 60~100%에 대해

46) 과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① 납입자본금이 최소 MYR 5십만 이상 ② 매년 사업비 총 지출액 MYR 1.5백만 이상 ③ 자유지역(free zones)에 위치해야 하면서 센터의 설립을 통해 말레이시아 항구 및 여객선의 이용이 증가해야 함 ④ 국내시장 매출액(자유지역 매출 포함)이 연간 매출액의 20% 이하이어야 함(단, 국제조달센터의 경우 세 번째 영업연도까지 연간 매출액이 MYR 5천만 이상이 되어야 하며, 지역물류센터는 세 번째 영업연도까지 연간 매출액이 MYR 1억 이상이 되어야 함)

조세지원제도	혜택 요약	혜택 내용		
		대상	기간	혜택률(%)
	공제	라인, 전기발전설비, 물·하수도·유독성 폐기물 설비와 같은 서비스 프로젝트 등		당해 사업연도의 법정소득의 70~100%만큼 공제 가능
④ 생명공학 산업에 대한 지원	기간 감면	BioNexus 지위 기업과 당해 기업의 투자자	① 신사업: 이익 발생 후 10년 ② 기존 사업: 이익 발행 후 5년	소득세 면제
⑤ 운영총괄본부를 위한 지원	기간 감면		MIDA의 승인을 취득한 연도부터 10년 동안	소득세 면제
⑥ 국제조달센터 및 지역물류센터를 위한 지원	기간 감면		10년	소득세 면제
	배당 소득 면제		5년	2-tier exemption

자료: 기획재정부(2014)

마. 미국⁴⁷⁾

- 미국 연방정부의 경우 주로 에너지 효율, 대체 에너지 개발과 같은 녹색 산업 분야와 중소기업 및 재개발 지역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음
 - Tax Incentives in Renewal Communities: 낙후된 재개발 지역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 Commercial Revitalization Dductions을 통해 연간 1만달러에서 1,000만달러까지 지원하는 제도
 - Tax Incentives in Empowerment Zones : Empowerment로 지정된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에서 그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을 상대로 최대 3,000달러(Renewal Communities의 경우 1,500달러)까지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
 - Business Energy Tax Credit: 기존 연료전지에 대한 공제 혜택을 강화하여 풍력에너지, 태양광에너지, 지열, 그리고 열병합발전 사업에 대한 조

47) KOTRA(2014), 「주요국 투자유치 체계 및 인센티브제도 조사」의 국가별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세부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함

세를 환급하여 주는 제도(『2008 에너지 개선 및 확대 법률』에 의해 지원기간이 2016년까지 늘어남)

바. 캐나다⁴⁸⁾

○ 온타리오 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퀘벡 주에서 특정한 산업에 대해 주정부 주도로 지원하는 조세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① 온타리오 주의 경우 영화산업과 뉴미디어산업에 대한 조세혜택을 제공함

- (영화산업) 영화 또는 TV프로그램 제작에 대해 인건비의 20% 세액 공제, 제작에 사용되는 특수효과 관련 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20% 세액 공제 또는 환급
- (뉴미디어) Interactive 디지털 미디어 제품의 개발에 소요된 인건비, 마케팅비 및 유통비 및 음향 녹음작업에 소요되는 제작비 및 마케팅비에 대해 20%의 세액 공제 또는 환급

②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경우 광산업과 국제금융, 영화, 뉴미디어산업에 대한 조세혜택을 제공함

- (광산업) 주 내에서 진행되는 광구 조사에 한하여 20%의 세액 공제
- (국제금융) 국제금융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주정부 법인세 환급, 국제금융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정부 개인소득세를 환급
- (영화산업) 자국 소속 회사의 영상물 제작에 대해 인건비의 25% 세액 공제, 외국 회사의 영상물 제작에 대해 인건비의 11% 세액 공제
- (뉴미디어) 신규 미디어 사업에 투자하는 벤처기업에 대해 30%에 해당하는 주정부 세액 공제

③ 퀘벡 주의 경우 영화산업과 광산업, IT산업에 대한 조세혜택을 제공함

- (영화산업) 영화 또는 TV 프로그램 제작 소요비용의 26.25~37.5%의 세액 공제나 환불 가능(프랑스어 프로그램의 경우 37.5%)
- (광산업) 광물 및 천연가스의 채굴 및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15~45%의 세액 공제나 환불(광물 종류에 따라 세금 감면율이 변동)

48) KOTRA(2014), 『주요국 투자유치 체계 및 인센티브제도 조사』의 국가별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세부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함

- (IT산업) IT인프라 IT컨설팅, e-commerce 솔루션 개발 업체에 한해 소요 인건비가 30%를 세액 공제 또는 환불(직원당 한해에 2만달러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3. 특정 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조세지원⁴⁹⁾

가. 중국

(1) 소수 자치구역⁵⁰⁾

- 민족자치지역의 자치기관은 민족자치지역의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중 자치구에 분리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음⁵¹⁾
- 자치행정구역에 의해 결정된 기업소득세의 감면 또는 면제조치는 성(자치구·직할시) 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5개의 경제특구와 상하이-푸둥 신구

(가) 세수우대 과도기간 규정

- 「대외경제협작과 기술교류 촉진을 위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특구⁵²⁾와 국무원에 의해 운영되는 특구⁵³⁾에 위치한 국가장려신기술기업과 첨단기술기업들은 세율 감면과 관련하여 과도기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음⁵⁴⁾

49) CCH(2012), CCH(Taiwan, 2013), CCH(Singapore, 2013), CCH(2013)을 참조한 기획재정부(2014) pp.64~81를 재인용하여 작성함

50) 중국 소수지역자치법(the Minority Region Autonom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 따라 규율되는 자치 지역 또는 행정구역을 의미함

51) 기업소득세법(EITL) 제29조, 민족자치지역이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에 의해 민족자치를 실시하는 자치구·자치주·자치현을 의미함

52) 심천, 주하이, 산터우, 샤먼, 하이난

53) 상하이-푸둥 신구

54) 기업소득세법(EITL) 제57조: 이 법인 공포되기 전에 인가를 받고 설립된 기업이 당시의 세수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저세율 우대를 받고 있는 경우,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실행 후 5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이 법에서 규정한 세율로 이전할 수 있음. 정기적인 세금감면우대를 누리고 있는 기업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실행 후에도 기간 만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음. 그러나 이익이 없어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경우, 우대기한은 이 법 실행연도부터 계산함. 법률에서 설치한 대외경제협작과 기술교류를 발전시키는 특정지역 그리고 국무원에서 규정한 지역의

- 「기업소득세법」 공포 이전에 이미 설립·인가된 기업이 당시의 세수 법률·행정 법규 규정에 따라 저세율의 우대를 받는 경우,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 후 5년 내에 점진적으로 동법이 규정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기존의 15%와 24%의 세율을 적용받던 기업은 점진적으로 25% 세율을 적용받게 됨

<표 III-11> 5년간 세수우대 과도기간의 적용례

(단위: %)

기존세율	2008	2009	2010	2011	2012
15	18	20	22	24	25
24	25	25	25	25	25

자료: 기획재정부(2014)

(나) 경제특구와 상하이-푸둥 신구에 설립된 고도신기술기업에 대한 세제우대

- 경제특구 및 상하이-푸둥 신구 내에서 국가의 중점지원이 필요한 첨단신기술 기업⁵⁵⁾이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수입이 발생한 이후 2년까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그 이후 3년까지 기업소득세의 50%를 감면함⁵⁶⁾

(3) 서부지구에 대한 세제우대

- 서부지구⁵⁷⁾에 설립된 기업에 대해 2011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5%의 우대적인 기업소득세율의 적용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⁵⁸⁾

특수정책을 집행하는 지역 내에 신설된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첨단기술기업은 과도성 세수우대를 누릴 수 있음.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함

55) 2008년 이후에 설립 등록을 마친 기업에 한하며, 핵심 지적재산의 독립적 소유권을 가진 기업으로 다음의 국가 중점지원 첨단신기술영역에서 규정하는 범위에 속해야 함 ① 연구·개발비용이 판매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규정비율을 초과할 것 ② 고도신기술제품(서비스)의 수입이 해당 기업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규정비율을 초과할 것 ③ 기업의 종업원 총수에서 과학기술관련 종사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규정비율을 초과할 것 ④ 「고도신기술 인정 관리방법」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56) *Guofa* (2007) No. 40

57) 서부지구에는 충칭 시정촌, 쓰촨 성, 구이 저우 성, 윈난성, 티베트 (시짱) 자치구, 산시, 간쑤성, 닝샤 후이족 자치구, 칭하이, 신장 위구르어 자치구, 신장 생산 건설 그룹, 내몽고 자치구, 광시 자치구 등이 있음

58) The Ministry of Finance, the State Administration of Taxation and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jointly issued the Notice Regarding Implementation of Tax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Western Regions (CaiShui (2011) No.58), which extended the valid period for

- 국가가 규정하는 장려산업 업종을 주된 사업⁵⁹⁾으로 하며, 당해 연도 주 사업 수입이 기업 총수입의 7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나. 대만

(1) 자유무역지역 및 수출 가공지역

- 외국의 영리기업 또는 외국기업의 대만지점이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자신 또는 자유무역지역 내의 기업을 통해 저장 또는 단순 가공업무를 한 후, 해당 제품을 대만과 해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됨⁶⁰⁾
- 수출가공지역에 있는 기업은 수입기계류와 설비와 원자재, 연료, 물품, 반가공 제품, 견본품, 실험용 동물과 식물에 대해 수입관세, 물품세, 영업세 면제 다음과 같은 세금 및 부담금의 징수로부터 면제됨⁶¹⁾
 - 수입 기계류와 설비의 경우 수입 후 5년 내에 비보세구역으로 운반될 경우에는 보충적 수입관세, 물품세, 영업세가 부과됨
 - 원자재, 연료, 물품, 반가공 제품, 견본품, 실험용 동물과 식물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제품이 비보세구역으로 운반될 경우에는 보충적 수입관세, 물품세, 영업세가 부과됨

(2) 과학산업단지(Science Parks)

- 과학산업단지 내의 기업은 자체 사용을 위해 해외에서 수입한 장치와 설비와 해외에서 수입한 원자재, 연료, 부품, 가공단계의 상품, 견본품에 대해 수입관세, 물품세, 영업세를 면제함⁶²⁾

the preferential tax rate of 15% to December 31, 2020.

59) 교통, 전기, 수력, 우편사업 및 TV 방송업

60)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설립과 관리에 관한 법(Statute for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Free Trade Zones) 제29조와 국제항공단지개발법(International Airport Park Development Act) 제35조

61) 수출가공지역에서의 설립과 행정에 관한 법(Statute for the 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on of Export Processing Zone) 제13조

- 자체 사용을 위해 해외에서 수입한 장치와 설비의 경우 제품이 수입 후 5년 이내에 과세구역으로 운반될 경우에는 수입관세, 물품세, 영업세가 징수됨
- 해외에서 수입한 원자재, 연료, 부품, 가공단계의 상품, 견본품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물품이 과세지역으로 운반될 경우에는 수입관세, 물품세, 영업세가 부과됨

다. 유럽의 기업유치지구(Enterprise Zone)

- EU 집행부에서는 EU 회원국의 지역별 개혁과 지식(regional innovation & intelligence) 정책을 공유·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지역별 혁신 모니터(the Regional Innovation Monitor) 프로젝트를 시행함
 - 프로젝트의 목적은 지역 혁신사례 공유, 효율적인 지역 개혁정책, 정책학습 등임
- 기업유치지구 운영에 따른 정부지원은 EU 집행위원회의 「The De Minimis Regulation」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해당 규정은 유럽시장에서 왜곡된 경쟁과 EU의 장기적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과도한 공적자금 투입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됨
 - 기업유치지구를 운영하는 개별 정부의 지원은 기업당 3년간 총 20만유로로 제한하고, 도로수송산업의 경우 10만유로로 제한
 - 1차 농수산업과 재정이 악화된 기업의 경우 제외됨

(1) 영국

- 영국에서는 2012년 4월부터 기업유치지구를 도입하여 R&D 산업 향상, 지역 개발, 각 산업 및 기업별 네트워크 및 협업을 독려하기 위해 영국 전역 24개의 유치지구를 운영
 - 각 지역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라 법인세 감면, 기계 및 공장 설립 투자에 대한

62) 과학산업단지에서의 설립과 행정에 관한 법(Statute for the 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on of Science Parks) 제20조

비용 지원 등이 있음

-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해서도 지구별로 상이하게 지원하고 있음

(2) 프랑스

- 프랑스에서는 Zones Franches Urbaines라는 이름으로 교외 지역개발 및 경제 발전, 지방인력 고용을 위해 199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프랑스 전역에 100개의 유치지구가 운영되고 있음
- 지구별로 50명 이상, 연간 1천만유로 이하 매출 사업장 또는 25% 이상 지분을 소유한 2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3년간 20만유로의 범위 내 최초 5년간 법인세, 재산세, 사회보장부담금 등 100% 면제, 이후 9년간 세금 할인, 고용인력 임금 보조 등의 혜택이 제공됨

(3) 독일

- 독일에서는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GRW)라는 이름으로 교외 지역개발 및 경제 발전, 지방인력 고용을 위해 196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약 독일의 반 이상의 지역⁶³⁾이 보조금 지원 지구로 지정됨
- 지구별로 사업규모에 따라 3년간 20만유로 범위 내, 10~40%의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임
- 통일 이후 2011년까지 동유럽 투자 유치를 위해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존재했으나, 현재는 GRW로 통일되어 현재는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없음

(4) 이탈리아

- 이탈리아에서는 Zones Franches Urbaine 이름으로 교외지역 개발 및 경제 발전, 지방인력 고용을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탈리아 전역에 22개의

63) 주로 동유럽과 낙후된 서유럽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유치지구가 운영되고 있음

- 지구별로 3년간 20만유로 범위 내 5년간 소득세, 지방세, 재산세 등을 면제

라. 말레이시아

(1) MSC 말레이시아(Multimedia Super Corridor Malaysia)⁶⁴⁾

- 말레이시아는 첨단 정보통신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다국적기업들에 멀티미디어 슈퍼코리도(Multimedia Super Corridor)라는 제도를 1996년부터 시행하였음
 - MSC Malaysia는 R&D 클러스터, 다용도 카드, 통신요율서비스, 전자정부를 포함한 총 7개의 특별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 MSC에서 정보통신 기술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은 MSC Malaysia 지위를 부여받아 10년간 개척자 지위(pioneer status)와 추가소득에 대한 100% 투자공제 혜택 등을 누릴 수 있음
 - MSC Malaysia 지위를 취득한 기업은 소득세 면제, 투자소득공제,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64) MSC는 구체적으로 쿠알라룸푸르 남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멀티미디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창출·제공하는 특정 기업에 제공되는 지역을 의미하며, 2007년 1월 7일부터 “MSC Malaysia”로 이름이 변경되었음

〈표 III-12〉 MSC Malaysia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인센티브 종류	인센티브의 내용
개척자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MSC Malaysia에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은 개척자 지위(pioneer status)를 획득함으로써, 5년 동안 법정소득의 100%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됨 - 5년의 조세지원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은 그 기업이 수입을 발생시키기 시작하는 때부터임 - 소득세 면제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MDeC는 그 기업의 기술 이전 또는 양도 성과를 고려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함
투자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적이며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고도자본집중사업(예: 사회기반시설 사업 또는 비용중심 멀티미디어 사업활동)에 종사하는 신규기업은 MSC Malaysia에서 소비한 자본지출에 대해 5년 동안 100% 공제받을 수 있음 - 공제대상은 법정소득(statutory income)임 - 5년의 기간계산은 첫 적격 자본지출이 발생한 날을 기점으로 시작됨 - 이러한 투자소득공제와 상기 개척자지위 혜택은 양자택일적 관계임
관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SC Malaysia 지위에 있는 기업은 그 사업활동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정보통신기술 또는 멀티미디어 장비의 수입에 대해 관세가 면제됨 (duty-free) - 다만 수입물품이 직접 판매나 거래 또는 제조품의 부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자료: 기획재정부(2014)

(2) 라부안 국제사업 및 금융센터

(가) 개관

- 말레이시아 정부는 1991년부터 라부안사업활동세법(Labuan Business Activity Tax Act 1990)을 통해 라부안⁶⁵⁾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에 다양한 세 금감면 혜택을 제공하였음
- 라부안 기업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말레이시아 통화로 사업을 하거나 말레이시아 거주자 또는 국내기업과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금지됨⁶⁶⁾

65) 라부안(Labuan)은 말레이시아 동쪽에 위치한 섬

66) 2010년 법 개정을 통해 라부안 역외기업(Labuan offshore companies)에서 라부안 기업(Labuan companies)으로 변경되었음

(나) 라부안의 조세체계

- 역외거래활동을 수행하는 라부안 기업은 과세대상 이익에 대해 3%의 우대세율을 적용하거나 MYR 20,000(6,700달러)의 단일세 납부 중 선택이 가능함⁶⁷⁾
- 선택은 반드시 매 회계연도마다 이루어져야 함

<표 III-13> 라부안의 조세체계 요약

내 용	조세체계
라부안 비거래활동 - 증권, 주식, 대여금, 예금, 부동산 등을 투자 또는 소유하는 활동	비과세
라부안 거래활동 - 은행, 보험, 무역, 경영, 선박, 라이선싱, 라부안 비거래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활동을 포함하되 제조업은 제외	감사받은 순이익의 3% 또는 MYR 20,000을 선택가능
라부안 거래활동과 비거래활동을 모두 하는 경우 - 라부안 거래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됨	감사받은 순이익의 3% 또는 MYR 20,000을 선택가능
非라부안 거래활동	국내의 소득세법에 따라 25%의 세율로 과세됨(YA 2013)

자료: 기획재정부(2014) 재인용
 KPMG Tax Article - Labuan IBFC
http://www.labuanibfc.com/site/attachments/article/113/kpmg_tax_article.pdf에서 발췌

(다) 라부안의 기타 세금감면 혜택

- 라부안의 과세대상 이익에 대한 조세감면 이외의 세금감면 혜택 다음과 같음
 - (전문직서비스 소득의 65% 소득세 면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라부안에서 라부안 기업이나 실체(entity)에 대해 적격 전문직 서비스⁶⁸⁾를 제공하는 자의 법정소득의 65%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 줌
 - (기반시설 사업소득의 50% 소득세 면제)라부안에 있는 적격 자산⁶⁹⁾ 또는 이러

67) 역외거래활동이란 역외기업이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기업과 외국 통화를 이용하여 라부안에서 수행하는 거래 및 비거래활동을 의미함
 68) 전문직서비스에는 신탁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해서, 법률, 회계, 세무, 재무, 비서업무 등이 있음
 69) 적격 자산에는 도로, 하수도, 통신시설, 학교, 병원, 사무소, 항구, 항공시설, 호텔, 공공시설, 오락 시설 등이 있으며 자체건설 또는 건설업자에게 구입한 경우를 포함함

한 자산의 임대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그 자산을 통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를 50% 면제해 줌

- (근로소득의 50% 소득세 면제)2011년부터 2020년까지 라부안의 시민권이 없는 자가 라부안에 있는 라부안 기업의 관리부문에 고용되어 얻은 근로소득의 50%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 줌
- (동산임대소득의 소득세 면제)비거주자가 라부안의 리스회사에 동산을 이용하게 하고 얻은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 줌⁷⁰⁾
- (배당소득의 소득세 면제)라부안 기업이 받은 배당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고, 라부안 기업이 라부안 사업활동이나 면세소득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배당, 라부안 기업이 국내기업에 지급하는 배당, 이러한 배당을 재원으로 국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그 국내 주주의 입장에서 소득세를 면제해 줌
- (이자소득의 소득세 면제)라부안 기업이 거주자, 비거주자, 다른 역외기업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 줌
- (사용료소득의 소득세 면제)라부안 기업이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기업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함
- (인지세 면제)라부안 기업의 라부안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그 기업이 작성하는 문서, 제휴계약, 주식의 양도 문서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해 줌

(3) Iskandar 개발지역(Iskandar Development Region)

Iskandar 개발지역⁷¹⁾에 위치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소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개발자⁷²⁾와 개발매니저⁷³⁾의 법정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승인된 토지에 대한 권리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한 수익(2015년까지) 또는 건물의 임대 또는 처분으로부터 발생한 수익(2020년까지)에 대해 소득세를 면세함

70) 라부안의 리스회사는 라부안에서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LFSA로부터 승인받은 기업을 의미함

71) Iskandar 개발지역은 Johor주의 남쪽에 위치한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임

72) 정부의 승인을 받아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거주자 기업으로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기업

73) 개발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관리, 감독, 또는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개발매니저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관리, 감독, 또는 마케팅 서비스로부터 획득한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면세함
- Iskandar 개발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법정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정부에 의해 승인된 기업활동을 통해 얻어진 소득에 대해 10년 동안 소득세를 면세함
- 이 밖에 수입관세 및 판매세가 면제되고 있음

(4) 권장지역에 대한 개척자 지위(pioneer status)와 투자소득공제 제공

- 말레이시아는 「투자촉진법」과 「투자촉진명령」(Promotion of Investments Order 2008)에 따라 개척자 지위(pioneer status)와 투자소득공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대해서도 이러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음
- 권장지역⁷⁴⁾ 내에 있는 기업은 개척자 지위, 투자소득공제, 채투자공제 등 다양한 세금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음

4. 기타 조세지원제도⁷⁵⁾

가. 미국

- 미국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연방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과 주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음
- 연방정부의 경우 주로 에너지 효율, 대체에너지 개발과 같은 녹색산업 분야와 중소기업 및 재개발지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시행하고 있어 그 내용은 '2. 특정 업종에 대한 조세지원'에서 기술함

74) 정부에서 지정한 권장지역(Promoted Area)에는 Sabah 주와 Sarawak 주, Labuan 연방지역(호텔업, 관광업에 한함), 그리고 말레이시아 반도의 동쪽 코리도지역(Kelantan 주, Terengganu 주, Pahang 주, Johor 주의 Mersing지역이 있음

75) KOTRA(2014), 「주요국 투자유치 체계 및 인센티브제도 조사」의 국가별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세부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함

○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캘리포니아, 오하이오에서는 주정부 주도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① 뉴욕

- Qualified Emerging Technology 기업에 대해 고용 창출로 인한 비용, R&D 투자 및 R&D에 관련한 모든 지출 및 고도 기술 트레이닝 비용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함
- 자격요건을 갖춘 제조업체에 대해 6.5%의 법인세율을 적용함
- R&D 시설에 대한 투자는 9%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⁷⁶⁾, 투자 후 3년 동안은 고용 인원 1명당 1,000달러의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
- 제조와 R&D에 필요한 기계 및 설비 시설 구입에 따른 판매 세금은 100% 감면 혜택 제공

② 뉴저지

- 고용창출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으로 고용자의 소득세를 최고 5만달러,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용자는 고용이 이루어진 첫 해부터 10년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50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자격조건을 갖춘 제조설비를 구매하였을 경우 총투자금액의 2%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며 그 금액은 최고 100만달러까지임

③ 코네티컷

- 일 년 동안 최소 10명 이상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60%의 주 법인세를 면제
- 주 내에 설립된 R&D에 관한 모든 지출의 20%를 세금에서 면제

④ 캘리포니아

- 경제개발지역⁷⁷⁾에 설립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조시설, 재생에너지 생산, 공기 및 수질 공해 통제를 위한 장비와 물자를 구매 또는 임대했을 때 지불한 판매세와 사용세를 공제하며 공제액은 개인소득세 100만 달러, 기업소득세 20만달러까지 적용⁷⁸⁾
- 자체의 R&D를 실시하는 경우 연구·개발비용(인건비, 기계 등)으로 세

76) 고도기술에 따른 고용효과에 따라 추가적인 감면혜택이 주어지기도 함

77) Enterprise Zone, Local Agency Military Base Recovery Area, Manufacturing Enhancement Area, Targeted Tax Area로 지정된 개발지역을 의미함

78) 특정 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조세지원이라 볼 수 있으나 그 범위가 매우 작아 본 장에서 기술함

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고, 외부 R&D를 실시하는 경우 외부 기관 지불 금액으로 세액의 24%를 공제받을 수 있음

⑤ 오하이오

- 사업자가 3년 안에 연방정부의 최저임금 150% 이상의 임금을 주는 25개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다면 주정부에서 선정한 5인의 위원회가 이러한 고용창출을 약속한 사업자에게 주정부의 소득세를 79%까지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함(소매업의 경우는 고용창출 세금 환급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제고 물품에 대한 개인재산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오하이오 주에 반입한 물품이 오하이오 내에서 더 이상의 생산활동에 쓰이지 않고 다른 주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혜택을 제공함

나. 캐나다

- 캐나다의 경우 자국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고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음
- 연방정부의 주도로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와 몇몇 주들에서 지원하는 조세 인센티브제도로 구성되어 있음
- 연방정부의 경우 경쟁력 있고 안정적인 기업활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자본이득에 대한 특별혜택과 연구·개발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자 함
 - 캐나다의 연방 법인세율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2009년 19%에서 2012년 15%까지 낮추었음
 - 제조업에 분야에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80억달러의 세금 감면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에 부과되던 제조기업에 대한 누진세율을 폐지함
 - 기업의 설비투자 및 자산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적용
 - R&D 분야 기업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Scientific Research &

Experimental Development(이하 SR&ED) Tax Benefits가 있음

- 이 제도는 캐나다 내 R&D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실험 또는 분석에 의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수행되는 체계적인 조사 또는 연구에 지원하는 것임
- 외국인 투자가의 경우 R&D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조세 감면을 받게 되며,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함

○ 온타리오 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퀘벡 주에서 주정부 주도로 지원하는 조세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① 온타리오 주

- (영화산업) 영화 또는 TV프로그램 제작에 대해 인건비의 20% 세액 공제, 제작에 사용되는 특수효과 관련 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20% 세액 공제 또는 환급
- (뉴미디어) Interactive 디지털 미디어 제품의 개발에 소요된 인건비, 마케팅비 및 유통비 및 음향 녹음작업에 소요되는 제작비 및 마케팅비에 대해 20%의 세액 공제 또는 환급
- (연구·개발) 혁신적인 기술로 판단된 연구·개발 소요 비용에 대해 10% 또는 최대 20만달러까지 세액 공제나 환급을 실시하며 SR&ED 프로그램에 합격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한해 최대 400만달러의 세액 공제나 환급을 실시

②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 (광산업) 주 내에서 진행하는 광구 조사에 한하여 20%의 세액 공제
- (국제금융) 국제금융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주정부 법인세 환급, 국제금융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정부 개인소득세를 환급
- (영화산업) 자국 소속 회사의 영상물 제작에 대해 인건비의 25% 세액 공제, 외국회사의 영상물 제작에 대해 인건비의 11% 세액 공제
- (뉴미디어) 신규 미디어사업에 투자하는 벤처기업에 대해 30%에 해당하는 주정부 세액 공제

③ 퀘벡 주

- (영화산업) 영화 또는 TV 프로그램 제작 소요비용의 26.25~37.5%의 세액

- 공제나 환불 가능(프랑스어 프로그램의 경우 37.5%)
- (광산업) 광물 및 천연가스의 채굴 및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15~45%의 세액 공제나 환불(광물 종류에 따라 세금 감면율이 변동)
- (연구·개발) 연구·개발활동 소요비용에 대해 17.5%의 세액 공제나 환불하며, 연구·개발활동은 다음과 같음
 - 연구활동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 연구활동에 간접 참여한 제삼자에 지불된 수수료의 50%
 - 대학교 및 정부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일 경우 총 R&D 소요액의 80%
 - 정부가 인정하는 연구·개발 컨소시엄에 기여한 자금
- (IT산업) IT인프라 IT컨설팅, e-commerce 솔루션 개발업체에 한해 소요 인건비의 30%를 세액 공제 또는 환불(직원당 한해에 2만달러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다. 일본

- 일본의 조세감면제도는 특정 산업 투자유치, 특정 지역 내 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제도와 법인세 및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음
 - 법인세 감면제도
 - 연구·개발사업, 지역총괄사업(아시아쿼터 특구)의 경우 5년간 20%의 법인세를 감면
 - 업체의 신청을 받아 지자체가 사업요건을 검토하여 지정 법인으로 승인하여 대상을 선정하며 해당 법인에 대해 사업 실시상황 보고 의무가 부여됨
 - 투자금액 및 고용을 기준으로 한 감면한도가 존재함
 - 관세 감면제도
 - 오키나와 국제물류거점 산업집적특구의 경우 특구 보세지역 내에서 외국 화물을 원료로 가공/제조 공정을 거쳐 국내 반입하는 경우, 원료 과세와 제품 과세 중 선택 가능
 - 소고기(조리품 제외), 동물 피혁, 신발의 부분 품목은 예외로 함

라. 중국

- 중국의 조세감면제도는 특정 산업 투자유치, 특정 지역 내 투자유치, 배당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세 감면, 관세 감면에 대한 조세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특정 산업 투자유치와 특정 지역 내 투자유치와 관련한 조세감면제도는 '2. 특정 업종에 대한 지원', '3. 특정 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에서 자세히 설명함
 - 배당소득세 감면제도
 - 중국의 국경 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한 비거주자 기업에 대해 거주자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당해 기구 및 장소와 실질적 관계가 있는 주식배당금 및 잉여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을 면세수입으로 지정함
 - 거주자기업은 중국 국경 내에서 설립되었거나,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실제 관리기구가 중국 국경 내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함
 - 비거주자기업은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실제 경영관리기구가 중국 국경 내에 소재하지 않지만 중국 국경 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한 경우, 또는 중국 국경 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으나 중국 국경 내에 원천소득이 있는 기업을 말함
 - 근로소득세 감면제도
 - 외국인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과세가 되는 최저한도액 4,800위안을 적용함(내국인은 3,500위안을 적용하며 세율은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관세 감면제도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적시된 산업에 포함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투자 총액 내 수입한 자체 사용 설비와 계약조항에 근거한 상기 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관련 기술, 부품, 비품 등에 대한 관세를 100% 감면함
 - 서부지역 외상투자 장려사업 및 우세산업 투자 시에 자체사용 설비의 수입 관련 정책 규정 범위 내에서 관세를 100% 감면함
 - '면세불허 외상투자 프로젝트 수입상품목록'과 '수입시 면세불가 중대기술장비와 제품목록' 중 명시된 품목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마. 유럽지역

□ 유럽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차별 없이 조세감면 지원을 하고 있음

○ 벨기에, 아일랜드, 영국의 경우 법인세,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의 세목에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조세감면을 통해 지원되는 혜택이 없음

① 벨기에

○ 벨기에의 경우 특정 산업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원이 자국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차별 없이 이루어지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부 조세감면 혜택이 추가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특정 산업 투자유치 관점) 영화산업에 대해 영화 제작금액의 최대 50% 까지 법인세를 감면하며, 이 제도는 벨기에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국내 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 투자·제작한 건에 한하여 적용됨(결정주체인 Taxshelter의 심의를 통해 감면 범위가 결정됨)

- (법인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지원되는 제도와 국내외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있음

· 외국기업이 자기자본 투자를 하는 경우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대기업은 2.63%, 중소기업은 3.13% 공제하며, 연방정부에서 매년 공제율을 발표함

· 기업(벨기에 기업 또는 외국기업의 벨기에 지사)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또는 보충적 보호증명서(SPC: Supplement Protection Certificate)⁷⁹⁾로 얻은 로열티 수입에 대해 소득금액의 최대 80%에 대해 법인세 적용을 면제

- (근로소득세 감면) R&D 인력에 대한 임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제도와 외국인 인력에 대해 비용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음

· 석·박사급 이상 고급 R&D 인력의 임금에 대해 원천징수 금액의

⁷⁹⁾ 의약품과 같이 규제당국의 판매승인이 요구되고 이를 취득하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특허권 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여 특허권의 보호기간을 최대 5년간 연장해주는 제도

80%까지 공제함(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세의 개인부담분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됨)

- 외국인 인력이 벨기에에 정착하면서 소요되는 학교등록금, 이사비용, 정착비용 등의 1회성 경비와 벨기에 외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 전액을 공제해줌(해당 공제의 상한은 연간 29,750유로임)
- (배당소득세 감면) EU내의 자회사가 벨기에 지주회사로 송금하는 배당금의 95%를 면세하고, 벨기에 지주회사가 지주회사의 모회사로 송금하는 배당금의 100%를 면세함(배당금으로 인정된 송금액만을 면세함)

② 아일랜드

○ 아일랜드의 경우 R&D 세액공제와 Intellectual Property(IP) 관련 자본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R&D 세액공제) R&D 사업비용에 대해 법인세 12.5% 이외에 25%의 세액공제가 추가적으로 지원(2014년 1월 1일 이후의 지출비용에 대해 제 공함)
 - 30만유로까지는 감면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시 자동적으로 세금감면 혜택이 적용
 - 30만유로 이상의 경우 2003년 기준 지출비용과 비교하여 증액된 비용에 대해서는 25%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 (Intellectual Property(IP) 관련 자본공제) 자본 지출금에 대해 최대 15년간 자본공제 혜택이 부여(2009년 5월 7일 이후에 발생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함)

③ 영국

○ 영국의 경우 R&D 조세감면제도와 특허관련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R&D 조세감면) R&D 투자기업이 신청하여 심사를 통과한 R&D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현재 부과하고 있는 법인세 21%에 대해 100%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추가적인 심사를 통과한 R&D 프로젝트에 대해서 과세 대상 소득 중 R&D 지출액의 30%에 대한 감면 혜택이 주어짐(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25%까지 지원)

- (특허관련 조세감면) 2013년 4월 1일 이후 특허발명품 혹은 심사를 통과한 혁신적 기술 제품을 통해 획득한 이윤에 대해 법인세를 10%까지 감면

5. 주요 외국의 조세지원제도 요약⁸⁰⁾

- 국가별로 특성에 의해, 또는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따라 특정 업종에 대해 조세지원을 하는 국가들은 있음
 - 중국은 고도신기술기업, 첨단기술서비스기업, 소프트웨어와 전자회로산업 등에 대해 조세지원을 하고 있음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인접국로서 유사한 업종에 대해 조세지원을 하고 있음
 - 단, 대만은 기존의 특정 업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촉진산업승급조례)를 2009년에 폐지함
- 동남아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고도기술수반처럼 선도기업에 대해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제공
- 하지만 특정 업종에 대해 조세지원을 하는 국가들 중에서도 내·외국인 투자에 대해 차별적인 조세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는 없었음
- 특정 업종에 대한 조세지원은 대부분 일정기간 동안 낮은 세율을 부과하거나 투자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였음

⁸⁰⁾ 기획재정부(2014) pp.78~81을 참조하여 작성

<표 III-14> 특정 업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중국	대만 (조세지원제도 폐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① 고도신기술기업 (HNTE)에 대한 지원 ② 첨단기술서비스 기업에 대한 지원 ③ 소프트웨어와 전자회로 산업에 대한 지원	① 신흥·주요·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우대조치	① 제조업 및 서비스업 - 개척자 기업: 제조업 - 개척자서비스 기업: 서비스업 - 개발확장인센티브	① 개척자 기업 ② 투자소득공제를 받는 권장활동 수행기업 ③ 승인받은 서비스 프로젝트
④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지원	② 사회기반시설 사업		
	③ 생명공학과 제약산업		④ 생명공학산업
		② 운영총괄본부	⑤ 운영총괄본부
⑤ 농·임·축산·어업에 대한 지원 ⑥ 환경보호, 물 또는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⑦ 증권투자펀드 ⑧ 소형기업 ⑨ 첨단기술서비스기업		③ 금융허브 ④ 국제법률서비스 허브	⑥ 국제조달센터 및 지역물류센터

자료: 기획재정부(2014)

- 특정 지역의 입주업체에 대한 조세지원은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이 일반적임
- 특정 지역의 입주업체에 대한 조세지원은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 몇몇 국가들만이 제공하고 있음

□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도 내외국인을 차별하여 내국인에게 제한을 두고 있는
 는 없음

<표 III-15> 특정 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조세지원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유럽	싱가포르
① 소수자치구역 ② 5개 경제특구와 상하이-푸둥 신구 - 세제우대 - 과도기간 - 고도신기술기업 세제우대 ③ 서부지구에 대한 세제우대 - 2020년까지 기업소득세율 15% 적용	① 자유무역지역 내 외국기업의 저장·단순가공 사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② 과학산업단지 - 관세, 물품세, 영업세 면제	① MSC Malaysia - 5년간 소득세 면제 - 추가소득공제 ② 라부안 국제사업 및 금융센터 - 3% 우대세율 또는 MYR 2만 단일세 - 기반시설사업 소득/근로소득 50% 소득세 면제 ③ Iskandar 개발지역 - 소득세 면제 ④ 권장지역에 대한 개척자 지위와 투자소득공제 제공	① 기업유치 지구	특정 지역이 아닌 산업/사업의 허브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운용 ① 금융허브 ② 운영총괄본부 허브 ③ 국제법률서비스 허브 ④ R&D와 지식재산관리 허브

자료: 기획재정부(2014)

IV. 외국인 투자기업 자본재 도입에 대한 조세감면효과 분석



IV. 외국인 투자기업 자본재 도입에 대한 조세감면효과 분석

1. 이론적 효과 분석

- 본 장에서는 모형을 이용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감면정책이 한계유효세율 및 평균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정책의 효과를 분석함

- 한계유효세율(marginal effective tax rate)은 한 단위의 자본을 투자하는 데 요구되는 수익 중에서 투자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정부에 귀속되는 부분의 비중으로 정의할 수 있음
 - 한계유효세율은 법정세율뿐만 아니라 감가상각제도, 투자세액공제 등 기업의 조세부담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이 반영됨

- 이론적 관점에 따르면 투자자는 한계적 의미에서 투자를 통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후 순이익의 현재가치와 자본의 사용자비용(user cost of capital)을 비교하여 투자를 결정
 - 투자의 세후 순이익의 현재가치가 자본의 사용자비용보다 크다면 투자를 증가시키고, 반대의 경우라면 투자를 감소시킴
 - 일반적으로 한계유효세율이 높을수록 투자의 세후 순이익이 줄어들어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평균유효세율(average effective tax rate)은 기업이 투자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윤과 대비하여 실질적인 세부담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지표임
 - 이는 이자율, 환율 등 기업의 투자행태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을 배제하고 조세제도 아래서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보여줄 수 있음
 - 평균유효세율은 기업의 경제적 이윤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기업의 세부

답을 다르게 보여줄 가능성 있음

가. 기본모형

- 외국인 투자기업은 매기 t 에 투입된 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순소득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으로만 구성되며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은 수입에 의해 조달된다고 가정

-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계유효세율 및 평균유효세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 K_t : t 기의 자본량(실질금액)
- $F(K_t) = \sqrt{K_t}$: 기업의 생산함수
- D_t : t 기의 배당액(명목금액)
- u_t : t 기의 법인세율
- U_t : t 기의 기업의 법인세 납부세액(명목금액)
- v_t : t 기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세율
- V_t : t 기의 기업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명목금액)
- $\pi_t = \pi$: t 기의 국내 물가상승률로 매기 π 로 일정하다고 가정
- $\pi_t^* = \pi^*$: t 기의 투자자 거주지의 물가상승률로 매기 π^* 로 일정하다고 가정
- $\alpha_t = \alpha$: t 기의 회계상 감가상각률로 매기 α 로 일정하다고 가정
- ϕ_t : t 기의 투자세액공제율
- I_t : t 기의 투자로 다음과 같이 결정됨(실질금액)

$$K_{t+1} = (1 - \delta)K_t + I_t \quad (2)$$

- \hat{K}_t : t 기의 회계상 자본량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됨(명목금액)

$$\hat{K}_t = (1 - \alpha)\hat{K}_{t-1} + (1 + \pi)^t (1 + v_t \phi[I_t \geq 0])I_t \quad (3)$$

- 여기서 $\phi[\cdot]$ 은 [] 안의 내용이 참(true)이면 1의 값을, 거짓(false)이면 0의 값을 부여하는 표시함수(indicator function)임

□ t 기에 기업의 법인세 부담 U_t 과 자본재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세부담 V_t 는 다음과 같이 결정됨

○ 법인세 U_t 는 회계상 순이익 $A_t = (1+\pi)^t F(K_t) - \alpha \widehat{K}_t$ 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구한 세액에서 투자세액공제를 차감한 것으로 결정:

$$U_t = u_t \Phi[A_t \geq 0] A_t - \phi_t \Phi[I_t \geq 0] (1+\pi)^t (1+v_t \Phi[I_t \geq 0]) I_t \quad (4)$$

- 회계상 순이익이 작고 투자가 많이 일어나 투자세액공제 금액이 투자세액 공제 전 법인세액보다 크면 법인세액 U_t 가 음(-)이 될 수도 있음

○ t 기의 기업의 투자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담은 투자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결정:

$$V_t = v_t \Phi[I_t \geq 0] (1+\pi)^t I_t \quad (5)$$

○ 표기의 편의를 위하여 법인세율과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세율과 투자세액공제율을 각각 $\bar{u}_t = u_t \Phi[A_t \geq 0]$ 와 $\bar{v}_t = v_t \Phi[I_t \geq 0]$ 와 $\bar{\phi}_t = \phi_t \Phi[I_t \geq 0]$ 로 다시 정의

□ 기업이 투자로부터 발생한 순소득을 모두 배당한다고 가정하면 t 기의 배당액 D_t 는 다음과 같이 결정됨

$$D_t = (1+\pi)^t F(K_t) - (1+\pi)^t (1+\bar{v}_t) I_t - U_t \quad (6)$$

○ t 기의 배당액 D_t 는 기업의 수입에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투자금액과 법인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 외국인 투자자의 거주지와 투자국 사이의 환율을 X_t 라 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투자로부터 얻는 세후 소득흐름의 현재가치 PV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PV = \sum_{t=0}^{\infty} \frac{X_t D_t}{(1+r^*)^t (1+\pi^*)^t} \quad (7)$$

○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 PPP)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환율 X_t 는 $X_t = (1+\pi^*)^t / (1+\pi)^t$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식 (7)에 대입하면 PV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PV = \sum_{t=0}^{\infty} \frac{D_t}{(1+r^*)^t (1+\pi)^t} \quad (8)$$

- 투자자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세후 소득흐름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한다고 가정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직면한 문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max_{\{K_t, \hat{K}_t\}} PV = \sum_{t=0}^{\infty} \frac{D_t}{(1+r^*)^t (1+\pi)^t} \quad (9)$$

$$\text{subject to } \hat{K}_t = (1-\alpha)\hat{K}_{t-1} + (1+\pi)^t(1+\bar{v}_t)(K_{t+1} - (1-\delta)K_t)$$

- 식 (9)의 극대화문제의 제약식은 K_t 와 \hat{K}_t 가 식 (2)와 (3)을 만족시켜야 함을 의미
 - 외국인의 최초 국내투자는 0기에 일어나며, 0기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량은 $K_0 = 0$ 으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
 - 식 (9)에 나타난 함수들은 모든 K_t 와 \hat{K}_t 에서 미분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영역에서 미분가능함
 - 만약 식 (9)의 극대화문제의 해(solution)가 미분가능한 영역에서 달성된다면 라그랑지 접근방법(Lagrangian method)을 사용할 수 있음
- 식 (9)의 극대화문제를 풀기 위해 라그랑지 함수(Lagrangian function)를 구성하고 제1계 필요조건(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도출할 수 있음

$$F'(K_t) = \frac{1}{1-u_t} \times \left\{ (1-\bar{\phi}_{t-1})(1+\bar{v}_{t-1})(1+r^*) - (1-\bar{\phi}_t)(1+\bar{v}_t)(1-\delta) \right. \quad (10)$$

$$+ \left(\frac{1-\delta}{1-\alpha}(1+\pi)(1+\bar{v}_t) - (1+\bar{v}_{t-1}) \right) (1+r^*)\lambda_{t-1} \\ \left. - \frac{1-\delta}{1-\alpha}(1+\pi)(1+r^*)(1+\bar{v}_t)\alpha\bar{u}_{t-1} \right\}$$

$$\lambda_{t+1} = \frac{(1+r^*)(1+\pi)}{1-\alpha} (\lambda_t - \alpha u_t) \quad (11)$$

- $F'(K_t)$ 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배당소득의 현금흐름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고 있을 때 자본 한 단위의 추가적 투입으로부터 발생하는 감가상각 및 조세부담 차감전 세전 수익을 의미함
 - λ_t 는 라그랑지 승수(Lagrange multiplier)를 의미함
- 만약 세금의 일시적 감면이 없다면, 즉 모든 t 에 대하여 $u_t = u$, $v_t = v$,

$\phi_t = \phi$ 로 일정하다면, 식 (10)과 식 (11)의 $F'(K_t)$ 와 λ_t 는 매기 다음과 같이 일정하게 나타남

$$F'(\bar{K}) = \frac{1+\bar{v}}{1-u}(\delta+r^*)(1-\bar{\phi}-\lambda) \quad (12)$$

$$= \frac{1+\bar{v}}{1-\bar{v}u}(\delta+r^*)\left(1-\bar{\phi}-\frac{(1+r^*)(1+\pi)}{(1+r^*)(1+\pi)-(1-\alpha)}\alpha\bar{u}\right)$$

$$\bar{\lambda} = \frac{(1+r^*)(1+\pi)}{(1+r^*)(1+\pi)-(1-\alpha)}\alpha\bar{u} \quad (13)$$

- 어떤 기 t^o 이후 법인세율 u_t 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식 (9)의 극대화문제의 해가 적절한 범위 내에 존재한다면 t^o 기 이후의 모든 t 에 대해 식 (11)을 만족하는 λ_t 가 $\lambda_t = \bar{\lambda}$ 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함을 보일 수 있음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한계유효세율(METR)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음

$$METR = \frac{R_b - R_a}{R_b} \quad (14)$$

- R_b :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세전 수익률(before tax rate of return)
- R_a :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세후 수익률(after tax rate of return)
- 한계유효세율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커질수록 투자자의 조세 부담이 높은 것을 의미

□ 투자자의 세전 수익률 R_b 은 기업이 투자를 통해 자본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얻는 수익으로, 자본 증가로 인한 생산물의 증가분과 자본의 경제적 감가상각의 차에 의해 결정됨

- 즉, 투자자의 세전 수익률은 $R_b = F'(K_t) - \delta$ 로 설정

□ 투자자의 세후 수익률 R_a 은 세금을 차감한 이후 투자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수익률을 의미

- 균형에서 차익거래가 불가능해야 한다는 조건(no-arbitrage condition)이 성립한다면 외국인 투자의 세후수익률은 투자의 기회비용과 같아야 함

- 자본의 국제이동이 자유로운 경우 국내 투자의 세후 수익률이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수익률보다 높다면 자본유입이 일어나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자본의 유출이 일어남
- 균형에서는 국내 투자의 세후 수익률 R_b 는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수익률 r^* 이 같아야 하므로 $R_b = r^*$ 로 설정
- 만약 투자세액공제나 회계상 감가상각으로 인한 세제상의 혜택이 충분히 크면 세전 수익률 $R_b = F'(K_t) - \delta$ 가 세후 수익률 $R_b = r^*$ 보다 작아져 한계유효세율은 음(-)의 값이 나올 수 있음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평균유효세율(AETR)은 기업의 경제적 이윤 대비 법인세와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조세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됨

$$AETR = \frac{U_t + V_t}{(1 + \pi)^t (F(K_t) - \delta K_t)} \quad (15)$$

- 회계상 순이익에 비해 투자가 충분히 크게 일어나 투자세액공제금액이 이를 감하기 전 법인세액 보다 충분히 크다면 평균유효세율은 음(-)이 될 수도 있음

나. 모수 설정

- 지금까지 논의한 모형에서 고려하고 있는 모수(parameter)들을 확정할 수 있다면 식 (14)와 (15)에 따라 한계유효세율과 평균유효세율을 계산할 수 있음
- 다음에서는 투자자의 세전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한 모수들을 어떻게 선정하였는가를 설명함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한계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 법인세율 u_t 과 관세 및 부가가치세 세율 v_t 는 다음의 경우들을 고려
- 일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업
 - 법인세율은 법정 법인세 최고세율인 22%를 적용하고 지방세를 포함하였음

- 관세 및 부가가치세 세율은 대다수 기계류에 적용되는 관세율 8%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여 v_i 는 18.8%로 설정
 - 우대 외국인 투자기업(우대기업):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
 - 법인세율은 초기 3년간 법인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법인세 50% 감면
 - 관세만 면제하고 부가가치세는 부과되는 것을 고려하여 v_i 는 부가가치세율 10%로 설정
 - 특별우대 외국인 투자기업(특별우대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기업 등
 - 법인세율은 초기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법인세 50% 감면 적용
 -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로 v_i 는 0%를 적용
 - 일반기업, 우대기업, 특별우대기업의 순으로 법인세와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의 혜택이 커진다고 말할 수 있음
 -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효과를 보기 위해 우대 및 특별우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없는 경우도 고려
- 투자세액공제율 ϕ 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3%를 적용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간 중에는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 우리나라에는 모든 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투자공제제도가 없으므로 3%의 세액공제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투자세액공제의 효과를 과장하여 나타낼 가능성 있음
- 회계상 감가상각률 α 는 내용연수 10년에 정률법을 적용한 감가상각률 25.9%를 적용
-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서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일부 무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별로 내용연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타 자산에 대해서는 내용연수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음
 - 내용연수 10년은 섬유제품 제조업, 제1차금속산업, 기계 및 장비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

러제조업 등에 사용되는 자산에 적용되는 것임

- 여기서 고려하고 있는 회계상 감가상각률 α 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업종과 감가상각 처리방식에 따라 세법상 감가상각의 효과를 과장 또는 과소평가할 가능성 있음

- 경제적 감가상각률은 현진권·표학길(1997)이 추정한 경제적 감가상각률 17.6%를 적용
 - 현진권·표학길(1997)은 업종별, 자산의 유형별 감가상각률을 추정하였으며 17.6%는 전 업종의 모든 유형의 자산에 대해 추정한 감가상각률임
 - 이는 내용연수가 약 15년인 고정자산에 정률법을 적용했을 때의 감가상각률에 해당됨

- 물가상승률 π 는 2016년 10월을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인 1.3%를 적용

- 국제적 자본수익률 r^* 는 2016년 10월 31일 기준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 1.84%를 적용
 - 국제적 자본수익률 r^* 은 투자의 기회비용 개념으로 균형에서 차익거래가 불가능하다면 외국인 투자자의 세후 수익률과 같아짐
 - 유효한계세율은 국제 자본수익률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음
 - 투자의 기회비용으로 국제 수익률이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여기서도 자본의 해외유출 규모가 큰 미국의 국제수익률 중 하나를 투자의 기회비용으로 설정하였음

- <표 IV-1>은 한계유효세율과 평균유효세율을 계산하기 위해 설정한 모수들을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음

〈표 IV-1〉 모수 설정

구분	일반기업	우대기업 ¹⁾	특별우대기업
법인세율(u_t)	0.242	$t \leq 2$ 0 $2 < t \leq 4$ 0.121 $4 < t$ 0.242	$t \leq 3$ 0 $4 < t \leq 6$ 0.121 $6 < t$ 0.242
관세 및 부가가치세 세율(v_t)	0.188	감면 시행: 0.100 감면 폐지: 0.188	감면 시행: 0.000 감면 폐지: 0.188
투자세액공제율(ϕ_t)	0.03	$t \leq 4$ 0 $t > 4$ 0.03	$t \leq 6$ 0 $t > 6$ 0.03
회계상 감가상각률(α)	0.259		
경제적 감가상각률(δ)	0.176		
물가상승률(π)	0.013		
국제 자본수익률(r^*)	0.0184		

주: 1) 투자가 개시되는 시점을 $t=0$ 으로 하였으므로 $t \leq 2$ 는 투자 개시 후 최초 3년간을 의미하며 $t \leq 4$ 는 투자 개시 후 최초 5년간을 의미함

출처: 저자 작성

다. 조세감면제도의 효과

- 〈표 IV-2〉는 일반기업, 우대기업, 특별우대기업에 대한 한계유효세율의 계산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표 IV-2〉의 한계유효세율은 단순화된 모형에 기반하여 도출되었으며 회계상 감가상각률, 경제적 감가상각률, 물가상승률, 국제 자본수익률 등의 모수값을 어떻게 설정했는가에 따라 달라짐
 - 따라서 〈표 IV-2〉에 제시된 한계유효세율은 구체적 수치보다 조세감면제도에 따라 한계유효세율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반기업에 비해 우대기업의 한계유효세율은 단기에서는 상승하며 장기에서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
 - 단기에서 한계유효세율이 상승하는 것은 법인세율 감면기간 중에는 투자세액 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데 기인함

- 법인세 및 관세 감면의 혜택은 기업의 한계유효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투자세액공제의 미적용은 기업의 한계유효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침
 - 우대기업의 경우 법인세 감면기간 중 법인세 및 관세 감면으로 인한 한계유효세율의 하락 효과가 투자세액공제의 미적용으로 인한 한계유효세율의 상승효과보다 적게 나타남
- 장기에서는 우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우대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관세 측면에서만 혜택을 보게 되며, 이는 우대기업의 한계유효세율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음

<표 IV-2>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제도와 한계유효세율

년차	일반기업	우대기업		특별우대기업	
		관세 감면	관세 감면 폐지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폐지
0 ¹⁾	-	-	-	-	-
1	0.856	0.567	0.661	0.184	0.635
2	0.578	0.597	0.680	0.239	0.646
3	0.578	0.767	0.797	0.304	0.661
4	0.578	0.591	0.676	0.378	0.680
5	0.578	0.839	0.854	0.708	0.797
6	0.578	0.420	0.578	0.365	0.676
7	0.578	0.420	0.578	0.812	0.854
8	0.578	0.420	0.578	-0.171	0.578
9	0.578	0.420	0.578	-0.171	0.578
10	0.578	0.420	0.578	-0.171	0.578
평균	0.606	0.546	0.656	0.248	0.668

주: 1) 0년차는 자본량이 0인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가 개시되는 시점으로 한계유효세율이 적절하게 정의되지 않음

출처: 저자작성

- 특별우대기업의 한계유효세율은 조세감면의 혜택이 없는 일반기업에 비해 단기 및 장기에서 모두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한 경향은 장기에서 더욱 두드러짐

- 단기에서 특별우대기업은 법인세와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의 혜택이 커서 이것으로 인해 기업의 한계유효세율이 하락하는 효과가 투자세액공제의 미적용으로 인해 한계유효세율이 상승하는 효과보다 크게 나타남
 - 장기에서는 특별우대기업의 한계유효세율은 음(-)이 되며, 이는 투자세액공제가 기업의 한계유효세율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명목법인세율이 한계유효세율을 상승시키는 효과보다 크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특정 시점에서 일반기업보다 우대기업 및 특별우대기업의 한계유효세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발견됨
- 이는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법인세의 감면 혜택이 줄어들어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자본량을 줄이는 조정을 하여 기업의 한계생산성이 상승하기 때문임
 - 이러한 자본량의 조정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의 효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반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회복되며 이에 따라 한계유효세율도 낮아짐
- 우대기업 및 특별우대기업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를 폐지하면, 이들의 한계유효세율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장기에서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
- <표 IV-3>은 일반기업, 우대기업, 특별우대기업에 대한 평균유효세율의 계산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평균유효세율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조세부담을 포괄하는 것으로 법정법인세율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음
 - 투자세액공제나 회계상 감가상각의 처리방식은 평균유효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함

<표 IV-3>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제도와 평균유효세율

년차	일반기업	우대기업		특별우대기업	
		관세 감면	관세 감면 폐지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폐지
0 ¹⁾	-	-	-	-	-
1	0.438	0.054	0.090	0.000	0.102
2	0.268	0.000	0.000	0.000	0.096
3	0.281	0.231	0.335	0.000	0.090
4	0.290	0.160	0.155	0.000	0.000
5	0.297	0.272	0.473	0.086	0.340
6	0.302	0.252	0.292	0.174	0.159
7	0.306	0.259	0.298	-0.010	0.479
8	0.308	0.264	0.303	0.197	0.295
9	0.310	0.268	0.306	0.204	0.301
10	0.312	0.271	0.309	0.209	0.305
평균	0.311	0.203	0.256	0.086	0.217

주: 1) 0년차는 자본량이 0인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가 개시되는 시점으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평균유효세율이 정의되지 않음

출처: 저자작성

□ <표 IV-3>의 평균유효세율은 회계상 감가상각률, 경제적 감가상각률, 물가상승률, 국제 자본수익률 등의 모수값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뿐만 아니라 생산 함수의 형태에도 민감하게 영향을 받음

- 또한 기업의 어떤 기에 투자로 확충된 자본은 다음 기에 생산에 투입된다는 가정도 역시 기업의 수익을 통해 평균유효세율에 영향을 미침
- 따라서 <표 IV-3>에 제시된 평균유효세율은 역시 구체적 수치보다 조세감면 제도에 따라 평균유효세율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해야 함

□ 법인세와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아래서 평균유효세율은 조세감면 혜택이 커짐에 따라 일반기업, 우대기업, 그리고 특별우대기업 순으로 낮아짐

- 법인세 감면은 투자가 시작된 후 일정 기간 동안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장기에서 평균유효세율의 차이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의 효과로 이해할 수 있음

- 특별우대기업의 경우 특정 시점에서 평균유효세율이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은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자본량 조정의 과정에서 투자세액공제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임
- 우대기업 및 특별우대기업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를 폐지하면, 이들의 평균유효세율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
 -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제도의 폐지로 인한 평균유효세율의 상승은 장기에서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
 - 특정 시점에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을 폐지했을 경우 평균유효세율이 낮아지는 것은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한 법인세율 상승에 대해 기업이 자본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번 기에 기존 설비에 대한 회계상 감가상각비용은 높은 상태로 유지되어 이것이 법인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임
- <표 IV-4>는 법인세와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제도에 따라 일반기업, 우대기업, 특별우대기업의 자본량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음
 - 생산함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자본량의 증가는 생산의 증가로 이해할 수 있음
 - 여기서 제시된 자본량도 모형의 가정이나 모수값을 어떻게 설정했는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표 IV-4>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제도와 자본량

년차	일반기업	우대기업		특별우대기업	
		관세 감면	관세 감면 폐지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폐지
0 ¹⁾	0.000	0.000	0.000	0.000	0.000
1	2.327	5.041	4.322	6.341	4.493
2	4.820	4.888	4.190	6.239	4.420
3	4.820	3.620	3.103	6.100	4.322
4	4.820	4.918	4.216	5.914	4.190
5	4.820	2.750	2.357	4.380	3.103
6	4.820	5.622	4.820	5.951	4.216

년차	일반기업	우대기업		특별우대기업	
		관세 감면	관세 감면 폐지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폐지
7	4.820	5.622	4.820	3.327	2.357
8	4.820	5.622	4.820	6.802	4.820
9	4.820	5.622	4.820	6.802	4.820
10	4.820	5.622	4.820	6.802	4.820
평균	4.571	4.933	4.229	5.866	4.156

주: 1) 모형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0기의 자본량은 0이며, 0기의 투자로 확충된 자본은 1기의 자본량이 되어 생산에 활용됨

출처: 저자 작성

- 법인세와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커질수록 제도 아래서 기업의 자본량은 일반기업, 우대기업, 그리고 특별우대기업 순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결과는 법인세와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감면제도가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함
 - 법인세 감면 혜택은 투자가 시작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만 유지되기 때문에 장기에서 자본량의 차이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의 효과로 이해할 수 있음
 - 특정 시점에서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는 우대기업과 특별우대기업의 자본량이 일반기업보다 낮은 것은 기업의 투자 행태가 법인세율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임
 - 순수입의 현금흐름을 극대화하는 기업은 법인세율 상승 직전에 높은 수입을 위해 자본량을 증가하고 법인세율 상승 직후 자본량을 다시 축소하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임

- 우대기업 및 특별우대기업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를 폐지하면 이들의 자본량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제도의 폐지로 인한 자본량의 감소는 장기에서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
 - 이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감면제도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함

- <표 IV-5>는 법인세와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제도에 따라 일반기업, 우대기업, 특별우대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조세수입을 보여주고 있음

<표 IV-5>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제도와 조세수입($U_t + V_t$)

년차	일반기업	우대기업		특별우대기업	
		관세 감면	관세 감면 폐지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폐지
0	0.354	0.504	0.813	0.000	0.845
1	0.495	0.074	0.120	0.000	0.137
2	0.371	0.000	0.000	0.000	0.131
3	0.393	0.303	0.423	0.000	0.123
4	0.412	0.228	0.215	0.000	0.000
5	0.427	0.341	0.566	0.121	0.441
6	0.440	0.375	0.425	0.262	0.225
7	0.451	0.392	0.440	-0.013	0.588
8	0.461	0.405	0.452	0.308	0.441
9	0.470	0.417	0.463	0.323	0.455
10	0.478	0.427	0.473	0.336	0.467
평균	0.440	0.296	0.358	0.134	0.301

출처: 저자 작성

- 법인세와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제도의 혜택이 커질수록, 즉 일반기업, 우대기업, 그리고 특별우대기업 순서대로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조세수입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
- 법인세 감면 혜택은 투자가 시작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만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에서 조세수입의 차이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의 효과로 이해할 수 있음
 - 특별우대기업의 경우 특정 시점에서 조세수입이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은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자본량 조정의 과정에서 투자세액공제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임
- 우대기업 및 특별우대기업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를 폐지하면

해당 기업으로 부터의 조세수입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

-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제도의 폐지로 인한 조세수입의 상승은 특별우대기업에서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
- 특정 시점에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을 폐지했을 경우 조세수입이 일시적으로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한 법인세율 상승에 대해 기업이 자본량을 줄이는 음(-)의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의 회계상 감가상각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법인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임

라. 소결

- 모의실험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는 해당 기업의 한계유효세율을 낮추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
 - 이러한 경향은 관세의 감면 혜택만 누리는 경우보다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감면 혜택을 누리는 경우에 더욱 두드러짐
 - 한계유효세율의 하락은 기업 투자의 세후수익률 상승을 의미하며, 이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는 해당 기업의 평균유효세율을 낮추는 경향이 있음
 - 현행의 법인세 감면제도 아래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를 폐지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평균유효세율은 상승하며, 이러한 효과는 장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평균유효세율의 하락은 기업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감소함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의 투자유치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량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커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증가를 의미함
 - 또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로 인한 자본량의 증가는 장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제도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한계유효세율 및 평균유효세율의 하락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
 -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량은 감면제도의 투자 촉진 효과가 장기에서 더욱 두드러짐을 보여줌
 - 다만 이러한 감면제도를 통한 조세 수입의 감소가 있으나, 전체 세수 규모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의 세수비중이 높지 않다면 이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음

2. 실증적 효과 분석

가. 자료 현황

- 분석에 사용된 자료로는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1년 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으로 인해 관세 면제에 관련된 자료와 KISVALUE의 기업재무자료임

(1) 관세청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보면 176개의 기업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9,758건의 관세 혜택을 신청하였음
 - 이를 매년 기업별로 집계(aggregate)한 결과 176개 기업에 대하여 총 425개의 관측치를 구하였음
- 2005~2015년 사이의 기업의 연간 관세 면제혜택을 분석한 결과 1개 기업이 1년에 평균적으로 134건의 면제를 받았고 최소 1건부터 최대 613건의 건당 면제가 있었음
 - 한 기업에서 품목별로 여러 번 면제를 받는 특징이 있었음

<표 IV-6> 기업의 1년당 관세혜택 수(2005~2015년)

(단위: 건)

구 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관세 면제 혜택 수	9,758	134.43	157.32	1	613

자료: 관세청

(2) 국세청 자료

- 국세청으로부터 자본재 도입으로 인해 관세가 면제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총 부담세액 등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였으나, 국세청 제공 자료에 기업의 ID 정보가 생략되어 관세청 및 KISVALUE 자료와 병합하여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기초통계분석은 <부록 1>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음

(3) KISVALUE 자료

- KISVALUE의 기업정보의 경우 2005~2015년 사이에 전체 25,568개의 기업자료를 활용하였음
- 상장기업은 2,230개, 비상장기업은 23,338개의 자료가 존재함
- KISVALUE 자료는 외감기업에 속하는 감사를 받고 있는 전체 기업의 재무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모집단에 가까운 장점이 있음

(4) 관세청 자료와 KISVALUE 자료 병합

- 관세청 자료와 KISVALUE의 기업자료를 병합한 결과 176개의 기업 중 104개의 기업이 서로 일치하였고, 72개의 기업이 불일치하여 대략 60%의 관세청 자료만 분석에 활용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 면제를 받은 전체 외국인 기업을 대상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고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에 한정된 결

과이므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외부감사를 받드시 받는 기업에 대한 결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런데 만일 기업의 외부감사 여부가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 면제 혜택 수혜와 체계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면 추정결과에 표본선택편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표 IV-7> 자료의 관측치 및 기업 수 현황(2005~2015년)

(단위: 개)

구분	관측치	기업 수
관세청 자료(수입신고품별)	9,758	176
관세청 자료(기업별)	425	176
KISVALUE 상장기업 + 외감기업	281,248	25,568
KISVALUE 상장기업	24,530	2,230
관세청+KISVALUE 병합 성공	271	104
관세청+KISVALUE 병합 실패	154	72

자료: 관세청, KISVALUE 기업자료

- 관세 면제를 받은 104개 기업 중 상장기업이 3개, 비상장기업의 경우 101개로 대부분 비상장기업임

- 대부분 외국인투자 기업으로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발하는 만큼 자본조달 측면에서 상장에 대한 유인이 크지 않은 이유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

<표 IV-8> 관세 면제 여부에 따른 상장·비상장 기업현황

(단위: 개)

구분	비상장기업	상장기업	합계
관세 면제	101	3	104
관세 비면제	23,338	2,230	25,568
합계	23,439	2,233	25,672

자료: 관세청, KISVALUE 기업자료

- 관세 면제를 받은 104개 기업 중 대기업이 57개 기업, 중소기업이 47개로 나타나 정책의 효과가 전반적으로 기업의 규모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하게 전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IV-9〉 관세 면제 여부에 따른 기업규모 현황

(단위: 개)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	합계
관세 면제	47	57	104
관세 비면제	21,440	4,128	25,568
합계	21,487	4,185	25,672

자료: 관세청, KISVALUE 기업자료

나. 기초통계 분석

- 〈표 IV-10〉은 KISVALUE에 공시된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유형자산증가율의 최솟값이 -350%, 매출액증가율의 최솟값이 -894,822%로 이상치(outlier)의 수준의 관측 값이 존재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양 끝으로 1% 수준의 이상치를 제거 한 후 분석하였음

〈표 IV-10〉 KISVALUE에 공시된 모든 기업의 기초통계량

(단위: 원, %)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유형자산증가율	34,199.6	7,322,587	-350	2,970,000,000
매출액증가율	2,608.8	793,406	-894,921.6	335,000,000
부채비율	1,167.2	92,768.2	-37.9	31,800,000
종업원증가율	20.5	388.3	-99.9	73,600
종업원1인당 인건비증가율	0.0	1.3	-131.5	1.0

자료: 관세청, KISVALUE 기업자료

- 〈표 IV-11〉은 관세 면제를 받은 기업의 투자, 고용증가율, 기부금 등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표 IV-12〉는 전체 기업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주고 있음

<표 IV-11> 관세 감면기업의 기초통계량

(단위: 억원, %)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관세 감면금액	6.68	15.7	0	159
유형자산증가율	128.17	323.04	-73.64	1,987.83
매출액증가율	59.63	130.69	-68.60	783.82
부채비율	154.93	284.30	2.76	3,024.99
자산총계	2,140	2,640	25.5	12,500
종업원수증가율	25.21	42.59	-69.57	228.57
종업원1인당 인건비증가율	0.07	0.28	-0.89	0.66
기업존속년수(년)	14.28	10.64	2.00	63.00
기부금	1.08	3.68	0.0003	28.5
매출액	1,680	2,360	1.88	11,400
표본수(개)	104	-	-	-

자료: 관세청, KISVALUE 기업자료

<표 IV-12> 전체 기업의 기초통계량

(단위: 억원, %)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유형자산증가율	43.98	212.56	-90.04	3,249.06
매출액증가율	24.42	85.63	-86.65	1,086.34
부채비율	332.06	647.12	2.73	7,431.42
자산총계	530	1,130	6	12,900
종업원수증가율	9.25	36.76	-70.83	300.00
종업원1인당 인건비증가율	0.03	0.28	-1.78	0.76
기업존속년수(년)	16.76	13.72	-834.00	119.00
기부금	0.67	2.44	0.00	31.60
매출액	490	1,050	1	11,600
표본수(개)	25,568	-	-	-

자료: 관세청, KISVALUE 기업자료

다. 분석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가 투자 및 고용, 기부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음

- 아래 식 (1)과 같은 형태의 패널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추정함

$$y_{it} = \beta_0 + \beta_1 Z_{it} + \mathbf{X}_{it} \boldsymbol{\gamma} + \theta_t + \mu_i + \epsilon_{it}. \quad (1)$$

- 식 (1)에서 y_{it} 는 기업 i 의 t 기 투자증가율, 고용증가율, 기부수준을 나타내는 종속변수이며, Z_{it} 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를 받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고, \mathbf{X}_{it} 는 기업 i 의 t 기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설명변수들의 벡터로서 매출액 증가율, 부채비율, 로그(총자산) 등의 변수를 포함하였음
 - θ_t 는 개별 기업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간 고정효과를 의미하고, 오차항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별기업의 비관측 특성을 포착하는 μ_i 와 시간과 개별 기업에 따라 변하는 순수한 오차항인 $\epsilon_{i,t}$ 로 구성됨
- 패널모형은 개별 기업의 비관측 특성 오차항 μ_i 를 확률변수(random variable)로 가정하는지에 따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으로 구분됨
- 횡단면자료 간에 이질성(heterogeneity)이 존재하는 경우 OLS추정량은 표준오차가 과소평가되거나 유효성이 떨어질 수 있고 편의될(biased)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패널자료의 경우 대부분 횡단면별로 상수항이 달라지는 식 (1)의 모형으로 추정
 - 추정시 상수항과 다른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유무에 따라 추정방법이 달라지는데 양자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함⁸¹⁾
 -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각각 추정한 뒤 추정량의 일치성(consistency)이 확보 가능하도록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실시하여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였음

81) 김현정(2003), 전봉걸(2013) 재인용

(1) 투자에 미치는 영향

-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가 투자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투자의 대리변수로 유형자산증가율 변수를 사용하였음
 - 통상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형자산으로 볼 수 있는데, 유형자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건물·토지·공장·기계 등에 대한 기업의 투자 규모가 늘어났음을 의미함
 - 본 연구는 자본재 투자에 대한 관세 면제의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투자 증감을 살펴보기 위해 토지와 건물은 제외하였음
 - 유형자산증가율은 건물, 기계장치 등 구체적 존재 형태를 갖는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당해 연도 중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의 설비투자 동향 및 성장잠재력을 측정할 수 있음

- 설명변수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출액 증가율, 부채비율, 총자산 등의 다양한 재무변수를 고려하였음
 - 매출액증가율은 매출액이 증가할 경우 총생산물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노동수요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설비투자와는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⁸²⁾
 - 기업의 설비투자는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므로 부채비율이 높을 경우 미래 자본조달에 어려움이 수반되기 때문에 설비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⁸³⁾
 - 외부자금 조달에 있어서 대기업을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Devereux and Schiantarelli, 1989)를 나타내는 총자산도 로그를 취하여 추정식에 포함하였음⁸⁴⁾
 - 이 외에도 자본조달비용을 통제하기 위해 상장기업 더미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외부자금 조달 외 대기업 중소기업의 다른 세제 혜택의 차이 및 다른 경영전략 등을 통제하기 위하여 대기업 더미변수를 사용함
 - 또한 외국인 투자에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면제 외 다른 조세혜택인 법인세, 소득세 감면,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이 받는 기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

82) 김우철(2012), 한국고용정보원(2012) 등 참조.

83) 구재운(2008), 심충진, 이준규(2011) 등 참조.

84) 김동훈(2015) 등 참조.

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존속년수를 통제변수에 포함하여 최대한 자본재 투자에 대한 관세 면제의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마지막으로 연간데이터를 활용한 점을 감안하여 거시경제 충격을 반영하기 위해 연도더미변수를 포함하였으며, 제조업 및 기타 산업을 통제하기 위하여 산업더미변수도 포함하였음

(2) 고용에 미치는 영향

□ 다음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가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종속변수로서 상시고용인원에 대한 종업원수증가율 변수를 적용하였음

-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가 기업의 고용촉진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효과는 크지 않지만,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를 통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이에 따른 산출량 증대로 고용을 간접적으로 창출하는 규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⁸⁵⁾
-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가 자본의 가격을 하락시켜 생산과정에서 자본과 보완요소로 여겨지는 숙련 근로자에 대한 고용증가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그러나 자본과 대체요소로 여겨지는 미숙련 근로자에 대한 고용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본재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의 면제가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와 감소시키는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임
- 다만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근로자 유형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세한 분석은 수행할 수 없었음

□ 종업원수증가율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변수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유형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인건비증가율 등 기업의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재무변수를 고려하였음

- 기업규모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대기업 더미변수를 도입하였음

85) 김현숙(2004), 조경엽, 오택연(2012), 김학수(2013) 등 참조.

- 설비투자의 지출은 규모효과로 인해 노동수요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그 반대로 기술혁신에 의한 대체효과로 노동수요를 감소시킬 수도 있어서 사전적으로 방향을 예측할 수 없음
- 그러나 인건비의 상승은 곧 노동증가율을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임⁸⁶⁾
- 이 외에도 투자에 미친 영향에 대한 추정과 마찬가지로 이유로 상장기업 더미변수, 대기업 더미변수, 기업존속년수, 연도더미변수, 산업더미변수를 포함하였음

(3) 기부에 미치는 영향

- 과연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혜택을 받은 외국인 기업이 기부를 통해 우리나라에 이익을 환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기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을 시도하였음
 - 외국인투자는 생산기술의 이전, 경영기법 전수 등의 담보 및 효율적 감시활동을 통한 대리인 비용 감소 등 여러 측면으로 기업성과 향상에 영향을 끼치며 기업이익 및 여러 규모의 이익이 창출됨
 - 그러나 외국투자자의 자금회수 및 단기 수익창출 성향으로 사회적 기부금의 축소를 요구하는 등의 사회적 공헌에 반대되는 성격을 보이기도 함
 -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 기부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하였음
-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부금 규모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변수로는 기존 문헌을 참고하여 매출액증가율, 부채비율, 기업규모 등 기업의 기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재무변수를 고려하였음
 -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증가는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며 기부금 지출 및 광고 등 기업이미지 쇄신을 위한 여러 선택의 환경을 제공함
 - 부채비율의 증가는 기업의 이자비용의 더 많은 지출을 초래하고, 사회적 역할 수행보다는 기업의 성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임
 - 외부적으로 볼 때 기업규모가 큰 기업은 정치적 가시성이 높으며, 따라서 국민이나 정부, 소비자로부터 사회적 책임 달성에 대한 압력이 높을 것이기 때문

86) 남재량 등(2008), 성효용(2012), 조경업, 오태연(2012), 김학수(2013) 등 참조.

에 지출수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⁸⁷⁾

- 종업원 수는 기업규모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변수로서 고려하였음
- 이 외에도 투자에 미친 영향에 대한 추정과 마찬가지로 이유로 상장기업 더미변수, 대기업 더미변수, 기업존속년수, 연도더미변수, 산업더미변수를 포함하였음

라. 패널분석 추정결과

(1) 투자에 미치는 영향

□ <표 IV-13>에서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확률효과모형의 결과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으며, 고정효과모형의 경우는 한계적으로 11% 유의수준에서 한계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패널 선형회귀모형에서 추정모형의 선택 기준은 패널 개체의 특성을 의미하는 오차항에 대한 추론임
- 통계적 방법으로 하우스만 검정을 이용하여 추정 모형을 선택할 수 있음
 - 하우스만 검정의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음
$$H_0 : Cov(x, u_i) = 0, H_A : Cov(x, u_i) \neq 0$$
 -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면 확률효과모형이 더 효율적이고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있는 고정효과모형을 선택함
 - 관세 등 면제 더미변수에 대한 하우스만 검정결과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확률효과모형을 선택하였음⁸⁸⁾
- 확률효과모형 추정결과에 따르면 관세 감면을 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36.14% 만큼 유형자산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외국인기업에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가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함

□ 관세 감면을 받은 기업의 평균 유형자산은 2,230억원으로 추정결과(36.14%의

87) 김종성·홍정화·김완희(2008) 참조.

88) P-value=0.9561.

유형자산증가율)를 적용하면 평균적으로 약 806억원 정도의 자본재투자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표 IV-13>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 추정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관세 등 면제 더미	35.44 (22.44)	36.14** (18.34)
매출액증가율	0.17*** (0.01)	0.19*** (0.01)
부채비율	0.00 (0.00)	0.00 (0.00)
ln(자산총계)	15.07*** (1.43)	-5.73*** (0.80)
대기업 더미		-5.26** (2.40)
상장기업 더미		11.98*** (2.70)
기업존속년수		-1.31*** (0.07)
기업수	19,994	19,994
관측치수	161,266	161,266

주: 대분류산업더미와 연도더미는 모든 분석에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나 생략함
출처: 저자작성

(2)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표 IV-14>에서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고정효과모형의 경우 추정결과 다른 조건이 모두 일정할 때 관세 면제를 받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약 9% 정도의 고용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임

- 하우스만 가설검정 결과를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고정효과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음⁸⁹⁾

89) P-value=0.0000.

- 이는 외국인기업에 부여하는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가 고용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함
 - 분석에 사용된 종업원 수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으로서 대부분 숙련된 노동자에 해당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는 생산과정에서 자본과 보완요소로 여겨지는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 한편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감면 등이 자본재 가격의 하락으로 규모효과를 유발하였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매출액증가율을 종속변수로 고정효과모형을 추정해본 결과,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기업의 1% 유의수준에서 매출액증가율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어 규모효과 또한 확인할 수 있었음⁹⁰⁾
 - 즉, 외국인기업에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혜택을 부여한 결과 보완효과와 규모효과가 작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됨
- 관세 감면을 받은 기업의 평균 상시고용인원 수는 542명으로 추정결과(9.07%의 종업원수증가율)를 적용하면 평균적으로 49명 정도의 고용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분석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 자본과 대체요소로 여겨지는 미숙련 근로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표 IV-15>에서는 외국인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가 기업의 기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를 보고하였음
- 하우스만 가설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고정효과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⁹¹⁾
 - 고정효과모형의 추정결과 관세 등의 면제가 기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효율적 감시활동을 통해 대리인 비용 감소 및 생산기술 이전, 경영기법 전수 등으로 인한 기업 성과 향상이 주

90) 매출액증가율에 대한 추정결과는 부록의 2에서 보고하였음.

91) P-value=0.0000.

목적으로 기부를 통한 사회적 공헌에 대한 유인이 그다지 크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IV-14>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추정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관세 등 면제더미	9.07* (5.50)	5.84 (4.14)
유형자산증가율	0.01*** (0.00)	0.01*** (0.00)
매출액증가율	0.16*** (0.00)	0.17*** (0.00)
종업원1인당 인건비증가율	-66.65*** (0.46)	-67.35*** (0.41)
대기업더미		0.82* (0.48)
상장기업더미		1.38*** (0.52)
기업존속년수		-0.34*** (0.02)
관측치수	40,357	40,357
기업수	10,406	10,406

주: 대부분류산업더미와 연도더미는 모든 분석에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나 생략함
출처: 저자작성

□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면이 있음

- 기부금에 관한 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Navarro(1988)는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기부금 지출수준과 세율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는데 FED(연방소득세/세전순이익)의 추정계수가 음(-)의 부호를 가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Navarro(1988)는 이를 보고 이윤극대화 동기보다 기업 기부행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음
- 김종성·홍정화·김완희(2008)는 기업의 소유구조가 기업의 기부금 지출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는데,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지분율의 증가는 음(-)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1998년 「외국인자본축진법」 제정 이후 외국인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자본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존재하는 만큼 외국인 기업의 기부에 대한 연구는 향후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이는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아니므로 <표 IV-17>의 결과는 외국인 자본의 증가가 기업의 기부금 지출수준에 주는 영향력에 대한 추가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IV-15>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가 기부에 미치는 영향 추정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관세 등 면제 더미	-0.12 (0.21)	-0.48** (0.19)
ln(자산총계)	0.44*** (0.02)	0.49*** (0.01)
부채비율	-0.00*** (0.00)	-0.00*** (0.00)
ln(매출액)	0.43*** (0.01)	0.33*** (0.01)
종업원수	0.00*** (0.00)	0.00*** (0.00)
대기업더미		11.98*** (2.70)
관측치수	89,517	89,517
기업수	15,900	15,900

주: 연도더미는 모든 분석에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나 생략함
출처: 저자작성

마. 소결

- 외국인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가 투자와 고용 및, 기부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효과는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남
- 둘째,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효과는 기업의 고용을 증가시킨 것

으로 나타남

- 셋째,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효과는 기업의 기부규모에는 통계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외국인투자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에 따라 투자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측면에서 제도 도입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3. 타당성 평가

가. 제도의 목적 달성 여부 평가

-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해 관세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외국인들의 투자유치가 국내 경기 활성화, 외국의 선진기술 유입, 그리고 고용창출 등의 순기능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우리나라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됨으로 인해 국제적인 다국적기업의 첨단기술이나 지식의 이전효과를 볼 수 있음
 - 기술이 현지의 다른 국내 법인들에 직접적으로 이전될 수 있으며, 인적자본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기술이전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이론적 분석과 그에 따른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동 제도의 운영으로 인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은 수혜기업의 투자를 크게 증진시킨 것으로 나타났음
 -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함께 받은 수혜기업의 한계유효세율이 혜택을 전혀 받지 않은 일반기업과 비교하여 10년 동안 연평균 35.8%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평균유효세율의 경우 22.5%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따라 10년 동안 연평균 28.3%의 자본재 투자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음

- 실증분석 결과는 동 제도가 투자에 미치는 이론적 분석의 예측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을 면제받은 외국인 기업의 투자가 그렇지 않은 기업 대비 36% 증가한 결과를 추정하였음
 - 다만 실증분석 결과에 법인세 감면 등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조세감면 혜택의 영향이 함께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의 추정결과는 이론적 분석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임

- 실증분석 결과는 또한 동 제도의 고용창출효과를 증명하였음
 - 특히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상시고용인원에 대한 채용증가효과를 보여주었음
 - 상시고용인원은 정규직 일자리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동 제도가 소위 관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이용하면 하나의 신규 고용창출을 위한 조세지출비용 추산도 가능함
 - <표 IV-14>에 따르면 연간 관세 면제 금액의 평균은 6.68억원이고, 부가가치세 면제 금액 평균을 조사한 결과 7.64억원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동 제도로 인한 평균적인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혜금액은 14.32억원으로 계산됨
 - 연평균 49명 정도의 고용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 결과를 이용하면 정규직 일자리 하나를 만들기 위해 조세지출이 약 2,922만원(=14.32억원÷49명) 정도 발생한 것으로 추산할 수 있음
 - 이 정도 규모의 일자리 창출비용이 어느 정도 효율적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제도의 효과와 비교분석을 해야 함
 - 예를 들어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부부가구에서 일자리 하나를 창출하기 위해 1,42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된 연구결과⁹²⁾가 있는데 근로장려세제의 경우에는 주로 저소득 근로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소요된 비용임을 고려할 때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주로 숙련근로자 고용창출에 이바지하였다고 가정하면 약 두 배의 비용이 발생한

92) 송헌재·방홍기(2014)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크게 문제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됨

- 다만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다른 정책의 효과성 검토결과와의 비교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임

나. 분석결과에 따른 제도 유지의 타당성 평가

- 이와 같이 본 연구의 효과성 분석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제도 유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 수혜대상과 수혜내용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 운용의 적절성도 담보될 수 있으므로 제도 운용 측면의 타당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정량적 분석만으로는 동 제도의 실행으로 과연 국제적인 다국적기업의 첨단기술이나 지식의 이전효과가 있었는지, 기술이 현지의 다른 국내 법인들에 직접적으로 이전되었는지, 인적자본의 질이 향상되었는지 등의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외부효과 있었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투자와 고용을 확대시킨 현상은 경쟁기업의 행태를 변화시켜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는 있음
 - 그러나 효과의 크기가 실질적으로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나타났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임

V. 설문조사결과 분석



V. 설문조사결과 분석

1. 설문조사개요

가. 설문조사의 동기

- 외국인직접투자는 고용창출이나 선진기술 도입 혹은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가지 효익이 있다고 알려져 있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치중하여왔음
- 이러한 유인제도들은 우리나라와 상황이 유사한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도 대단히 파격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Invest Korea, 2004; Single and Kramer, 1996)
-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다양한 외국인투자 지원책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관세 감면 등도 포함되어 있음
- 지금까지 외국인직접투자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었지만 관세에만 초점을 둔 연구는 없었음
- 이런 관점에서 본 설문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조세지원제도 중 관세 감면의 효과에 초점을 두고 평가해보고자 함

나. 관련된 선행연구

-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 조세지원제도는 조세요인과 외국인직접투자가 상관관계가 높다는 직관적인 가정 하에 시행되는 것임. 그러나 조세요인과 외국인직접투자와의 상관관계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고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와 조세와의 관련성을 살펴 본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경험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이었는데 그 결과는 일관성이 없었음
 -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시계열, 횡단면 혹은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와 조세요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려고 하였음. 그리고 실제로 이런 연구들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와 세율 간에는 음(-)의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⁹³⁾
 - 그러나 세율이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시기적으로 혹은 산업별로,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여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OECD, 2007)
 - 이렇게 실증연구의 결과가 일관성이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측정의 문제나 자료상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⁹⁴⁾

- 이러한 경험자료를 활용한 실증연구의 한계 때문에 간혹 설문조사를 이용한 연구들이 수행되기도 함
 - 설문을 활용한 연구는 응답자의 인식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실제 의도를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짐
 - Wilson(1993)은 다국적기업 경영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해외직접투자에서 고려하는 조세와 비조세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그는 조세요인은 지리적 조건이나 시장 상황과 같은 중요한 비조세요인이 유사한 경우에만 의사결정에

93) 외국인직접투자와 세율 간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Hines(1997), Blouin(2012) 등의 연구에서 검토하고 있다.

94) OECD(2007) 보고서에서는 여러 가지 실증연구들의 방법론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실증자료를 구하는 문제가 있으며 미국의 연구들에서 주로 이용하는 경제분석국의 외국인직접투자자료에는 측정오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세율을 법정세율, 평균세율 혹은 예상세율 등으로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는데 어떤 세율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서로 결과는 달라진다.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음

- Porcano(1993), Porcano and Price(1996), Rolfe and White(1992)는 모두 설문이나 실험을 이용하여 조세요인이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음
- 최기호(2007)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세감면이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그의 설문에서는 우리나라 조세부담이 낮아서 투자하였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5점 척도에서 평균 3점 이하의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세감면이 확대되면 투자를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도 보통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최기호(2007)는 조세요인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이차적 요인에 그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음
- 안종석 등(2014)에서도 최기호(2007)의 연구에 바탕을 두고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세지원제도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는 유사한 결론을 얻었음
 -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분석대상을 세무담당자뿐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세무자문을 담당했던 세무전문가를 설문대상으로 추가하였음
 - 또한, 설문문항을 확대하여 다양한 비조세요인과 함께 조세요인의 의사결정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알아보려고 하였음

다. 본 설문조사의 의미

- 본 설문조사에서는 앞선 두 설문조사 연구와는 달리 외국인투자지원세제 중 관세 감면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관세 감면의 효과에 보다 초점을 두고자 함
 - 연구에서는 관세 감면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세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에도 적용됨
 - 그러나 지금까지 외국인직접투자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보고자 했던 연구들에서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관세 감면의 효과를 보았던 논문들은 없음
 - 비록 감면규모 면에서 법인세가 가장 크기는 하지만 외국인투자기업 중에는 오히려 관세 감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들이 존재할 수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설문조사에서는 관세 감면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조세지원세제를 살펴보려고 함
 - 이러한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세제의 실효성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임
 - 특히, 본 설문조사에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은 기업들의 세무담당자를 설문대상자에 포함하여 중점적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과 세제운용에 대한 만족도를 선행연구와 달리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설문조사하고자 함

- 본격적인 설문조사에 앞서 두 차례에 걸쳐서 관세 감면을 받았던 외국인투자기업의 세무담당자들을 인터뷰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함
 - 이를 통하여 관세 감면 기업의 외국인투자의 지원세제와 관련된 세무상 이슈를 해당 설문문항에 반영하고자 함

〈표 V-1〉 응답기업 특성(패널A: 응답자의 직위 및 투자모국)

(단위: 개, %)

구분	전체	응답자 직위										투자모국			
		임원	부장	차장	과장	대리	기타	미국	일본	독일	기타				
전체	60	10.0	23.3	8.3	35.0	21.7	1.7	11.7	43.3	8.3	36.7				
	45	6.7	26.7	8.9	35.6	22.2	0.0	13.3	51.1	4.4	31.1				
업종	제조업	15	20.0	13.3	6.7	33.3	20.0	6.7	20.0	20.0	53.3				
	비제조업	29	6.9	27.6	10.3	34.5	17.2	13.8	48.3	6.9	31.0				
	100인 미만	22	18.2	22.7	9.1	22.7	27.3	4.5	36.4	9.1	50.0				
종사자 수	300인 이상	9	0.0	11.1	0.0	66.7	22.2	22.2	44.4	11.1	22.2				

출처: 저자 작성

〈표 V-2〉 응답기업 특성(패널B: 응답기업의 투자기간 및 재무적 특성)

(단위: 개, %)

구분	국내 투자기간			외국인투자 지분율			매출액대비 수출비중			총자산규모		
	표본	비중	비중	구분	표본	비중	구분	표본	비중	구분	표본	비중
25년 이상	9	15.0	58.3	75% 이상	35	58.3	75% 이상	5	8.3	5,000억 이상	5	8.3
10~25년 미만	15	25.0	25.0	50~75% 미만	15	25.0	50~75% 미만	11	18.3	1,000~5,000억 미만	22	36.7
5~10년 미만	18	30.0	8.3	25~50% 미만	5	8.3	25~50% 미만	12	20.0	500~1,000억 미만	9	15.0
5년 미만	18	30.0	5.0	25% 미만	3	5.0	25% 미만	32	53.3	500억 미만	24	40.0
			3.3	기타	2	3.3						
	60	100	100.0		60	100.0		60	100		60	100

출처: 저자 작성

<표 V-3> 응답기업 특성(패널C: 응답기업의 투자규모 및 투자상태)

투자규모		투자상태		
구분	금액	구분	표본	비중
하위 25%	662	신규투자	29	48.3
중위값	1,568	증액투자	27	45.0
상위 25%	8,000	기타	4	6.7
최댓값	28,569		60	100.0
전체 평균	38,892			

(단위: 만달러, 개, %)

출처: 저자 작성

<표 V-4> 응답기업 특성(패널D: 응답기업의 조세감면 현황 및 세무업무 특성)

외국인투자 지원구분		조세감면 해당분야		세무업무 비중		세무진략 상황		
표본	비중	구분	표본	비중	구분	표본	비중	
법인세 감면	46	76.7	고도기술수반사업 감면	27	45.0	세무신고 등 세무세액이 최소 화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석	48	79.8
관세 감면	22	36.7	외국인투자 단지형 입주 감면	14	23.3	미래에 부담하는 위험을 최소화하 는 방향으로 보수 적으로 해석	12	20.2
지방세 감면	36	60.0	외국인투자 개별형 입주 감면	9	15.0			
현금지원	6	10.0	기타	6	10.0			
임지지원	20	33.3	없음	3	5.0			
기타	2	3.3	무응답	1	1.7			
없음	3	5.0		60	100.0			
무응답	2	3.3						
	-	-						

(단위: 개, %)

출처: 저자 작성

2. 설문 응답자와 응답기업의 특성

가. 설문응답자의 특성

- 외국인투자기업의 세무담당자 총 60명이 설문에 응답함

- <표 V-1>~<표 V-4>에서는 설문에 응답한 외국인투자기업과 세무담당자들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 설문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 의사결정 및 우리나라의 조세부담과 세제운용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며 이에 따라 응답자가 적절한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 따라서 실제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기로 의사결정을 내린 경영자들이 가장 적합한 설문응답자들임
 - 그러나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의사결정을 내린 경영자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어려움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일단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세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이들의 직위를 통해 응답의 신뢰성을 평가하도록 함
 - 가급적 직위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실제 기업이 내린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서 설문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

- <표 V-1>에서는 설문에 응답한 세무담당자들의 직위를 보여줌
 - 우선 응답자들의 직위를 보면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을 내리는 임원급은 전체 60명 중 6명에 불과하지만 중견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과장 이상으로 확대하면 60명 중 46명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자료는 본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실제 의사결정을 파악하고 응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나. 설문응답 기업의 투자모국 현황

- <표 V-1>에서는 응답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특성을 보여주며, 우선 투자모국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 이를 보면 일본기업이 26개 기업으로서 전체 43%를 초과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미국기업(7개)과 독일기업(5개)이 차지하고 있음
 - 고빛나(2013)의 연구에서 표본기업 구성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 표본 7,715개 중에서 일본계 기업은 3,109개(40.3%), 미국 1,753개(22.7%), 독일 537개(7%)로 각각 1, 2, 3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분포는 본 보고서상 외국인투자기업 분포와 비교하여 볼 때 일본, 미국, 독일기업의 순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일본계 기업의 비중이 높고 미국 기업의 비중이 다소 낮다는 차이점이 있음

- 투자모국의 구분이 의미가 있는 것은 투자모국의 법정세율이나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의 과세방법에 따라서 투자유치국의 조세지원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
 - 예를 들어 투자모국의 법정세율이 높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낮은 세율이 더욱 큰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직접투자 감면제도의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음

- 또한 해외자회사 송금에 대한 과세방법에 따라서도 감면제도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
 - 일반적으로 해외자회사의 국내송금에 대한 과세방법은 전 세계과세방법(worldwide taxation)과 지역 과세방법(territorial taxation)으로 구분됨⁹⁵⁾
 - 전 세계과세방법하에서는 해외자회사의 국내송금에 대해서 투자모국의 세율과 투자유치국의 세율 차이만큼 추가로 과세하지만 지역 과세방법에서는 해외자회사 국내송금에 대한 추가과세는 없음
 - 따라서 전세계과세방법에서는 투자유치국과의 별도의 조세협약이 없다면 투자

95) 전 세계과세방법에서는 국외원천소득과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한 후 외국납부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이다. 반면에 지역 과세방법이란 국외원천소득은 국내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방법이다.

유치국의 세금감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이런 측면에서 투자모국에서 어떤 과세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가는 투자유치국의 세제지원의 효과에 영향을 미침
 - 현재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해외자회사의 국내송금에 대해서 지역 과세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해외자회사의 국내송금에 대해서 전 세계과세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음

다. 설문응답 외국인투자 기업의 특성

- <표 V-1>을 보면 설문응답 기업 중 제조업은 45개 기업, 비제조업은 15개 기업으로 제조업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설문조사 대상이 관세 감면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임
 - 기업의 종업원 수로 본 규모에서는 300인 기업은 9개에 불과하고 100인 미만 기업은 29개 기업, 100~299인 미만인 기업은 22개 기업으로 나타남

- <표 V-2>에서는 응답기업의 국내 투자기간, 외국인투자 지분율,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및 총자산규모에 따른 구분을 보여줌
 - 10년 미만 기업은 36개로 나타남
 - 외국인 투자지분율이 75% 이상된 기업들은 35개 기업,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25% 미만 기업은 32개 기업, 총자산규모가 500억원 미만인 기업이 24개로 나타남
 - 이를 통하여 설문응답 기업들은 국내 투자기간이 10년 미만 기업이면서, 수출비중과 총자산규모가 낮은 기업들이라는 특성을 파악해볼 수 있음

라. 설문응답 외국인투자 기업의 조세감면 현황

- <표 V-4>에서는 응답기업의 조세감면 현황을 보여줌
 - 응답기업에 대해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지를 물어보았음. 또한, 어떤 조항의 조세감면을 받았는지 설문조사함

- 조사결과, 법인세 감면을 받은 기업 수가 46개 기업으로 76.7%로 응답기업 중 비중이 가장 높았고, 지방세 감면 60%, 관세 감면 36.7% 순으로 나타남. 또한, 입지지원을 받은 기업은 20개 기업으로 33.3%의 비중으로 나타남
 - 조세감면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적용받은 감면조항별로 구분하면 고도기술수반사업 27개 기업, 외국인투자지역 단지형 입주기업 14개 기업 및 외국인투자 개별형 입주기업이 9개 기업 순으로 나타남
- 어떤 조항을 적용받는지에 따라서도 외국인투자 지원세제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음
- 예를 들어 고도기술수반사업은 그 입증이 어려우며 재량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반면에 다른 조항들은 명시적 요건만을 충족하면 비교적 쉽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따라서 고도기술수반사업 조항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기업이라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응답할 가능성도 있음

〈표 V-5〉 외국인투자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중요성(패널A: 중요성 크기)

설문: 귀사가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내리는데 아래와 같은 9개의 요인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향력의 크기에 해당하는 문항번호를 선택하여 주십시오.(매우 작다 1점, 매우 크다 5점).

설문문항	전체(N=60)			제조업(N=45) ¹⁾			비제조업(N=15) ²⁾		
	평균	X ≥ 4 ³⁾	(비율) ⁴⁾	평균	X ≥ 4 ³⁾	(비율) ⁴⁾	평균	X ≥ 4 ³⁾	(비율) ⁴⁾
	1) 고객이나 거래처 확보	4.32	46	(0.77)	4.42	36	(0.80)	4.00	30
2) 질 좋은 노동력 또는 부품, 원재료 확보의 용이성	3.53	32	(0.53)	3.60	27	(0.60)	3.33	15	(0.33)
3) 물류, 통신, 전기 등의 우수한 사회간접시설의 활용	3.63	31	(0.52)	3.62	24	(0.53)	3.67	21	(0.47)
4) 낮은 세율과 같은 유리한 조세환경	3.40	24	(0.40)	3.40	18	(0.40)	3.40	18	(0.40)
5) 조세감면 등과 같은 조세지원	3.73	34	(0.57)	3.84	28	(0.62)	3.40	18	(0.40)
6) 물가, 환율, 금융 등과 같은 거시경제적 안정성	3.27	21	(0.35)	3.24	14	(0.31)	3.33	21	(0.47)
7) 외국인이 생활하기 좋은 여건	2.77	8	(0.13)	2.82	5	(0.11)	2.60	9	(0.20)
8) 법률, 규제나 거래 관행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3.02	13	(0.22)	3.00	9	(0.20)	3.07	12	(0.27)
9) 중앙과 지방정부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	2.90	13	(0.22)	2.93	9	(0.20)	2.80	12	(0.27)

주: 1) 응답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인 기업

2) 응답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비제조업인 기업

3) 5점 척도 설문에 대해서 크다(4점), 매우 크다(5점) 중 하나에 응답한 표본 규모

4) 5점 척도 설문에 대해서 크다(4점), 매우 크다(5점) 중 하나에 응답한 표본 규모의 전체 표본 규모에 대한 비율

출처: 저자 작성

<표 V-6> 외국인투자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중요성(패널B: 중요성 순위)

설명: 위사가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내리는데 아래와 같은 9개의 요인들의 영향력 크기의 순위를 가장 큰 1등부터 가장 작은 9등까지 함께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문항	전체(N=60)			제조업(N=45) ¹⁾			비제조업(N=15) ²⁾		
	평균 순위	X ≤ 4 ³⁾	(비율) ⁴⁾	평균 순위	X ≤ 4 ³⁾	(비율) ⁴⁾	평균 순위	X ≤ 4 ³⁾	(비율) ⁴⁾
	1) 고객이나 거래처 확보	1.7	53	(0.88)	1.6	41	(0.91)	2.1	12
2) 질 좋은 노동력 또는 부품, 원재료 확보의 용이성	4.1	39	(0.65)	4.2	28	(0.62)	3.7	11	(0.73)
3) 물류, 통신, 전기 등의 우수한 사회간접시설의 활용	3.9	42	(0.70)	4.0	30	(0.67)	3.6	12	(0.80)
4) 낮은 세율과 같은 유리한 조세환경	4.8	24	(0.40)	4.9	16	(0.36)	4.6	8	(0.53)
5) 조세감면 등과 같은 조세지원	4.2	35	(0.58)	4.0	29	(0.64)	4.7	6	(0.40)
6) 물가, 환율, 금융 등과 같은 거시경제적 안정성	5.6	16	(0.27)	5.7	10	(0.22)	5.3	6	(0.40)
7) 외국인이 생활하기 좋은 여건	7.3	4	(0.07)	7.2	4	(0.09)	7.6	0	(0.00)
8) 법률, 규제나 거래 관행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6.2	13	(0.22)	6.2	10	(0.22)	6.3	3	(0.20)
9) 중앙과 지방정부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	7.2	6	(0.10)	7.2	4	(0.09)	7.2	2	(0.13)

주: 1) 응답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인 기업

2) 응답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비제조업인 기업

3) 1위부터 9위까지 설문에서 1위에서 4위 사이로 응답한 표본 규모

4) 1위부터 9위까지 설문에서 1위에서 4위 사이로 응답한 표본 규모에 대한 비율

출처: 저자 작성

〈표 V-7〉 외국인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중요성(패널C: 요인별 중요성 순위 요약)

설문문항	전체표본		제조업 ¹⁾		비제조업 ²⁾	
	중요도크기 ³⁾	중요도순위 ⁴⁾	중요도크기 ³⁾	중요도순위 ⁴⁾	중요도크기 ³⁾	중요도순위 ⁴⁾
1) 고객이나 거래처 확보	1	1	1	1	1	1
2) 질 좋은 노동력 또는 부품, 원재료 확보의 용이성	4	3	4	4	5	3
3) 물류, 통신, 전기 등의 우수한 사회간접시설의 활용	3	2	3	2	2	2
4) 낮은 세율과 같은 유리한 조세환경	5	5	5	5	3	4
5) 조세감면 등과 같은 조세지원	2	4	2	2	3	5
6) 물가, 환율, 금융 등과 같은 거시경제적 안정성	6	6	6	6	5	6
7) 외국인이 생활하기 좋은 여건	9	9	9	8	9	9
8) 법률, 규제나 거래 관행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7	7	7	7	7	7
9) 중앙과 지방정부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	8	8	8	8	8	8

주: 1) 응답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인 기업

2) 응답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비제조업인 기업

3) 항목별 중요도 크기를 5점 척도로 측정한 평균값이 높은 순위

4) 항목별 우선순위를 1위부터 9위까지 매긴 후 그 평균 순위가 낮은 순위

출처: 저자 작성

3.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중요성

- <표 V-5>~<표 V-7>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중요성에 대한 설문결과를 보여줌
 - Porcano(1993), Porcano and Price(1996)에서는 다양한 조세 및 비조세요인을 열거하고 이에 대한 중요성을 5점 척도로 물어보았음
 - 본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설문방법을 이용하여 조세요인과 비조세요인의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가. 설문의 구성

- 선행연구에 바탕을 두고 중요도 항목에 포함될 조세요인과 비조세요인을 열거함
- 본 설문과 유사한 방법으로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중요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던 Porcano(1992), Porcano and Price(1996)에서는 모두 21개 항목을 열거하였는데 이는 아래와 같음
 - 비조세요인(총 15개 항목): 환율, 간접시설, 배당정책, 중앙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임금, 원자재 조달, 환경법, 노동력, 노동의 품질, 경제 환경, 무역장벽, 관세, 외국인투자에 대한 분위기, 정치적 분위기
 - 조세요인(총 6개 항목): 국세 세율, 지방세 세율, 국세법, 지방세법, 국세조세감면, 지방세 조세감면
- 이와 유사하게 Single and Kramer(1996)에서는 여러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7개로 분류함
 - 이는 사회간접시설, 노동, 문화, 경제, 정치적 위험, 지리적 여건, 외국인투자에 대한 태도이며 이 중 조세요인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태도로 구분하여 조세감면, 조세협약, 법인세율과 원천세율 등을 꼽았음

-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감안하여 안종석 등(2014) 설문조사에서는 조세요인으로 2개, 비조세요인으로 7개 요인을 열거함

- 본 설문조사에서도 안종석 등(2014)에서와 같이 총 9개 요인을 열거하고 중요도를 평가해보고자 함
 - 조세요인으로는 낮은 세율, 조세감면 등의 조세지원의 2개 요인을 열거함
 - 비조세요인으로는 고객이나 거래처 확보, 사회간접시설의 활용, 질 좋은 노동력과 부품, 원재료 확보의 용이성, 물가·환율 등과 같은 거시경제적 조건, 외국인 생활하기 좋은 여건, 법률, 규제나 거래관행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과 같은 7개 요인을 열거함

- 설문의 개별 항목에 대한 중요도는 기본적으로 5점 척도로 측정하지만 이와 더불어 상대적 순위도 표시하도록 함
 - 5점 척도로 측정한 것은 많은 설문연구에서 사용하는 보편적인 방법임
 - 이러한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은 중심화 경향으로서 대부분 응답자들이 중간 정도인 3점으로 응답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는 것임
 - 또한 많은 요인들이 서로 유사한 값을 보여서 우위를 가리지 못하는 경우도 생김
 -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설문에서는 9개 항목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표시하도록 요청

□ 설문항목의 구성은 아래와 같음

설문1. 귀사가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내리는데 아래와 같은 9개의 요인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향력의 크기에 해당하는 문항번호에 O 표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9개 요인들의 영향력 크기의 순위를 가장 큰 1등부터 가장 작은 9등까지 함께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매우 작다	<<<<<<<				매우 크다	순위
		1	2	3	4		
① 고객이나 거래처 확보	1	2	3	4	5	()	
② 질 좋은 노동력 또는 부품, 원재료 확보의 용이성	1	2	3	4	5	()	
③ 물류, 통신, 전기 등의 우수한 사회간접시설	1	2	3	4	5	()	
④ 낮은 세율과 같은 유리한 조세환경	1	2	3	4	5	()	
⑤ 조세감면 등과 같은 조세지원	1	2	3	4	5	()	
⑥ 물가, 환율, 금융 등과 같은 거시경제적 안정성	1	2	3	4	5	()	
⑦ 외국인이 생활하기 좋은 여건	1	2	3	4	5	()	
⑧ 법률, 규제나 거래관행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1	2	3	4	5	()	
⑨ 중앙과 지방정부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	1	2	3	4	5	()	

출처: 저자 작성

나. 5점 척도로 측정된 중요성

□ <표 V-5>에서는 위와 같은 9개 요인들에 대한 중요도를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된 값의 요인별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음

□ 우선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것은 ① 고객이나 거래처 확보 요인으로서 4.32이었고 다음으로는 ⑤ 조세감면 등과 같은 조세지원 요인으로서 3.73의 평균값을 보였음

○ 반면에 ⑦ 외국인이 생활하기 좋은 여건은 평균 2.77점이었고 ⑨ 중앙과 지방정부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은 2.90점에 그쳤음

○ 조세지원 외 조세요인으로 열거된 ④ 낮은 세율과 같은 유리한 조세환경 항목은 3.40점으로서 5번째에 그쳤음

□ Porcano(1993)에서는 제품수요(product demand)가 4.21점의 평균을 보여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로 높은 평균값을 보인 항목은 노동품질(labor quality)로서

3.70점을 보였음. 또한 환율요인은 3.09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정부지원이 3.10점으로 그 다음으로 낮았음

- 이러한 Porcano(1993)의 결과는 본 설문에서도 고객이나 거래처 확보요인이 4.32점으로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 유사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두 번째로 높은 항목은 본 설문에서는 조세감면 등과 같은 조세지원으로서 3.73점의 평균값을 보였는데 Porcano(1993)에서는 노동력 품질이 3.70점으로 두 번째로 높았음
 - 그러나 이는 응답기업이 대부분 조세감면 등과 같은 조세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됨
 - 그리고 평균점수가 낮았던 항목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중앙과 지방정부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 항목이 두 번째로 낮았다는 것임

- 이렇게 비조세요인 항목에 대해서는 Porcano(1993)와 본 설문이 유사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세요인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고 있음
 - 조세요인을 비교해보면 Porcano(1993)에서는 중앙정부 세율에 대한 중요도 평균이 3.46점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21개의 모든 요인 중에서 7번째로 높은 값이었음.
 - 그러나 이보다 높은 값을 보인 항목들인 외국인투자에 대한 태도 3.49점, 경제적 여건 3.58점, 노동력 공급 3.59점, 임금 3.54점 등과 불과 0.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사실상 이를 감안하면 거의 3번째 정도의 순위를 보였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조세감면항목은 중앙정부 3.14점, 지방정부 3.17점으로서 하위권의 순위를 보이고 있음
 - 이는 본 설문에서 조세감면항목이 3.73점으로 2번째로 높은 값을 보였고 반면에 낮은 세율은 3.40점으로 하위권에 머무른 것과 대조됨
 - 즉 Porcano(1993) 연구에서의 응답자들은 낮은 세율이 매우 중요하고 조세감면은 중요성이 낮다고 응답한 반면에 본 설문의 응답자들은 반대로 조세감면이 더욱 중요하고 낮은 세율의 중요성은 낮다고 응답한 것임

□ 또한 본 설문조사결과는 안중석 등(2014)의 설문조사결과와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 안중석 등(2014)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고객이나 거래처 확보요인이었음
- 다만 안중석 등(2014)에서는 두 번째로 높았던 항목이 질 좋은 노동력과 부품, 원재료 확보의 용이성이었음
- 그러나 안중석 등(2014)에서도 조세감면을 받았던 표본기업들에서는 조세감면이 두 번째로 중요성이 높은 항목으로 나타나서 본 설문조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 <표 V-5>에서는 5점 척도로 중요도에 응답한 값의 평균 외에도 $X \geq 4$ 는 5점 척도 중 4점 이상으로 응답한 개수와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 이는 평균이 갖는 통계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
- 4점과 5점은 5점 척도에서 보통 정도를 초과하는 점수로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응답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응답이 전체 응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해당 항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임
- 전체 표본에서 $X \geq 4$ 인 응답자의 개수와 비율을 보면 고객과 거래처 확보 요인에 대해서 77%의 응답자가 4점 혹은 5점이라고 응답함으로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음
- 두 번째로는 조세감면 등과 같은 조세지원으로서 모두 34명이 4점 이상의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전체 57%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음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X \geq 4$ 에서 두 번째로 순위가 낮았던 것은 낮은 세율로서 불과 13명만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전체 응답자의 22%에 불과함

다. 상대적 순위로 측정된 중요성

□ 본 설문에서는 중요도 크기를 5점 척도로 측정된 것 외에도 응답자들로 하여금 9개의 조세 및 비조세요인에 대해서 중요성 크기대로 순서를 정해달라고 요구하였음

- 순위는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매겨지므로 순위가 낮을수록 중요도가 높은 것임

□ <표 V-6>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매겨진 외국인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중요성 순위의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표 V-6>에서는 $X \leq 4$ 인 값을 보여주는데 이는 해당 요인을 9개 요인 중 중간인 5위보다 낮은 것으로 순위를 매긴 응답 개수이며 옆 열에서는 이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 <표 V-6>에서는 비조세요인들의 중요도 순위를 알아볼 수 있음

- 전체 표본에서 가장 순위가 낮은 것은 중요도 크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① 고객이나 거래처 확보 요인으로서 평균 1.7위임
- 고객 요인의 경우는 60명의 응답자 중 44명이 1위로 꼽았고 5명이 2위로 꼽았으며 4위 이내로 꼽은 응답자는 53명으로서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요인들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중요성 순위가 낮음
- 또한 두 번째로 순위가 낮은 것은 ③ 물류, 통신, 전기 등의 우수한 사회간접시설의 활용 요인인데 평균 3.9위였다. 사회간접시설 요인의 경우에는 2명이 1위로 선정하였고 2위로 선정한 응답자는 12명이었음
- 전반적으로 노동력 요인을 4위 이내로 평가한 응답자는 42명으로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⑦ 외국인이 생활하기 좋은 여건 요인에 대해서는 평균 순위가 7.3위에 그치고 있으며 4위 이내로 평가한 비율도 7%에 불과함

□ <표 V-6>에서는 조세 요인의 중요도 순위도 파악할 수 있음

- 전체 표본에서 ④ 낮은 세율에 대한 중요도 순위는 평균 4.8위여서 ①, ③, ②, ⑤ 요인에 이어서 5번째로 순위가 낮음
- 그리고 낮은 세율 요인에 대해서는 24명이 4위 이내로 응답하여 40% 정도가 낮은 세율 요인의 순위를 낮게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이에 비하여 ⑤ 조세감면 등과 같은 조세지원 요인의 경우에는 평균 순위가 4.2에 해당하며 3번째로 순위가 낮은 항목이었음
- 그리고 조세감면 요인을 4위 이내로 평가한 비율은 58%에 해당함. 이러한 응답결과는 앞서 중요도 크기를 5점 척도로 물어보았던 것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남

라. 요인들에 대한 종합평가

- <표 V-7>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표 V-5>와 <표 V-6>의 결과를 요약하여 9개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순서를 보여주고 있음
 - 이를 보면 ① 고객이나 거래처 확보 요인의 경우에는 모든 표본과 측정방법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외국인직접투자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임을 알 수 있음
 - 그리고 중요도 크기 면에서는 ⑤ 조세감면 등과 같은 조세지원, 중요도 순위에 있어서는 ③ 운송, 통신, 전기 등의 우수한 사회간접시설의 활용이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에 ⑦ 외국인이 생활하기 좋은 여건은 최하위인 9위에 머무르고 있고 ⑨ 중앙과 지방정부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은 8위에 머무르고 있음

마. 시사점

- <표 V-5>~<표 V-7>에서 살펴본 9개 조세 및 비조세 요인의 중요도 평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 우선 선행연구에서 발견한 바와 같이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조세 요인은 이차적 요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즉, 현재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은 법인세 감면 및 관세 감면 등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들이어도 불구하고, 조세 요인들은 우리나라 직접투자에서 일차적 요인이 아니었음
- 또한 두 번째 시사점으로는 조세감면 등의 조세지원이 외국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임
 - 즉 조세지원의 중요도는 중요도 크기에서는 2순위였으며 중요도 순위에서도 4순위로 나타났음
 - 그러나 낮은 세율과 같은 세무환경에 대한 중요도는 중요도 크기와 순위에서 모두 5위에 머무르고 있어 대체로 선행연구와 일치함

- 이렇게 조세감면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설문조사 대상이 실제로 조세감면을 받았던 기업들이라는 점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결과의 해석에는 주의를 요함

- 결론적으로 관세 감면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평가한 요인들의 중요도는 안종석 등(2014)의 설문조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음
 - 즉 조세감면은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니지만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됨

〈표 V-8〉 투자국의 조세환경 중요도(패널A: 중요도 크기)

설문: 귀사의 입장에서 투자국의 조세환경에 대한 아래 항목들에 대한 중요도에 해당하는 항목에 O 표시하여주시시오.
(매우 작다 1점, 매우 크다 5점)

설문문항	전체(N=60)		제조업(N=45) ¹⁾		비제조업(N=15) ²⁾	
	평균	X ≥ 4 ³⁾ (비율) ⁴⁾	평균	X ≥ 4 ³⁾ (비율) ⁴⁾	평균	X ≥ 4 ³⁾ (비율) ⁴⁾
1) 법인세, 지방세, 관세 등의 낮은 조세부담	4.05	41 (0.68)	4.11	32 (0.71)	3.87	9 (0.60)
2) 법인세, 지방세, 관세 감면 등 충분한 조세지원	4.22	46 (0.77)	4.29	36 (0.80)	4.00	10 (0.67)
3) 이해하기 쉽고 모호하지 않은 세법	3.78	36 (0.60)	3.78	26 (0.58)	3.80	10 (0.67)
4)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법	3.78	38 (0.63)	3.71	27 (0.60)	4.00	11 (0.73)
5)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조사 관행	3.90	39 (0.65)	3.89	31 (0.69)	3.93	8 (0.53)
6)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무행정	3.73	36 (0.60)	3.73	27 (0.60)	3.73	9 (0.60)

주: 1) 응답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인 기업

2) 응답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비제조업인 기업

3) 5점 척도 설문에 대해서 크다(4점), 매우 크다(5점) 중 하나에 응답한 표본 규모

4) 5점 척도 설문에 대해서 크다(4점), 매우 크다(5점) 중 하나에 응답한 표본 규모의 전체 표본 규모에 대한 비율

출처: 저자 작성

〈표 V-9〉 투자국의 조세환경 중요도(패널B: 중요도 순위)

설명: 그리고 상대적 중요도를 가장 높은 1순위부터 가장 낮은 6순위까지 정하여 주십시오.

설문문항	전체(N=60)		제조업(N=45) ¹⁾		비제조업(N=15) ²⁾	
	평균순위	X ≥ 3 ³⁾	(비율) ⁴⁾	평균순위	X ≥ 3 ³⁾	(비율) ⁴⁾
1) 법인세, 지방세, 관세 등의 낮은 조세부담	2.2	46	(0.77)	2.2	35	(0.78)
2) 법인세, 지방세, 관세 감면 등 충분한 조세지원	2.4	46	(0.77)	2.3	34	(0.75)
3) 이해하기 쉽고 모호하지 않은 세법	4.0	24	(0.40)	3.8	19	(0.42)
4)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법	3.7	23	(0.38)	4.0	14	(0.31)
5)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조사 관행	4.1	21	(0.35)	4.0	17	(0.38)
6)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무행정	4.7	14	(0.23)	4.7	10	(0.22)

주: 1) 응답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인 기업

2) 응답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비제조업인 기업

3) 1위부터 6위까지 설문에서 1위에서 3위 사이로 응답한 표본 규모

4) 1위부터 6위까지 설문에서 1위에서 3위 사이로 응답한 표본 규모의 전체 표본 규모에 대한 비율

출처: 저자 작성

〈표 V-10〉 투자국의 조세환경 중요도(패널C: 요인별 중요도 순위 요약)

설문문항	전체표본		제조업 ¹⁾		비제조업 ²⁾	
	중요도크기 ³⁾	중요도순위 ⁴⁾	중요도크기 ³⁾	중요도순위 ⁴⁾	중요도크기 ³⁾	중요도순위 ⁴⁾
1) 법인세, 지방세, 관세 등의 낮은 조세부담	2	1	2	1	5	1
2) 법인세, 지방세, 관세 감면 등 충분한 조세지원	1	2	1	2	1	2
3) 이해하기 쉽고 보호하지 않은 세법	4	4	4	3	4	5
4)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법	4	3	6	4	1	3
5)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조사 관행	3	5	3	4	3	4
6)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무행정	6	6	5	6	6	6

주: 1) 응답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인 기업
 2) 응답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비제조업인 기업
 3) 항목별 만족도 크기를 5점 척도로 측정한 평균값이 높은 순위
 4) 항목별 우선순위를 1위부터 6위까지 매긴 후 그 평균 순위가 낮은 순위
 출처: 저자 작성

4.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국의 조세환경 중요도

가. 설문의 구성

- <표 V-8>~<표 V-10>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국의 조세환경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를 보여줌
- 앞선 설문보다 범위를 조세환경으로 좁혀서 6개 항목의 중요도를 평가해보고자 함
 - 낮은 조세부담, 조세감면 등의 조세지원, 세법의 이해가능성, 세법의 예측가능성, 합리적인 세무조사 및 세무행정의 예측가능성 등의 총 6개 항목의 중요도를 평가하고자 함
 - 앞선 설문과 마찬가지로 5점 척도로 측정하고 동시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표시하도록 함
- 설문항목의 구성은 아래와 같음

설문2. 귀사의 입장에서 투자국의 조세환경에 대한 아래 항목들에 대한 중요도에 해당하는 항목에 O 표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상대적 중요도를 가장 높은 1순위부터 가장 낮은 6순위까지 정하여 주십시오.

문항	매우 작다	<<<<<<<				매우 크다	순위
① 법인세, 지방세, 관세 등의 낮은 조세부담	1	2	3	4	5	()	
② 법인세, 지방세, 관세 감면 등 충분한 조세지원	1	2	3	4	5	()	
③ 이해하기 쉽고 모호하지 않은 세법	1	2	3	4	5	()	
④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법	1	2	3	4	5	()	
⑤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조사 관행	1	2	3	4	5	()	
⑥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무행정	1	2	3	4	5	()	

나. 5점 척도로 측정한 중요도

- <표 V-8>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국의 조세환경 중요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우선 전체 표본을 보면 가장 중요도가 높은 요인은 ② 법인세, 지방세, 관세 감면 등 충분한 조세지원으로 관찰되었으며, 평균 4.22점이며, 4점 이상의 중요도를 나타낸 응답자 비율도 77%에 이르렀음
 - 다음으로는 ① 법인세, 지방세, 관세 등의 낮은 조세부담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4.05점이며 4점 이상의 중요도를 나타낸 응답자 비율은 68% 그리고 ⑤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조사 관행이 평균 3.90점을 보였으며 4점 이상의 중요도를 부여한 응답자 비율은 63%이었음
- 이를 통해서 투자국의 조세환경 고려 시 조세감면 등의 조세지원, 낮은 세율 및 세무조사 등의 순서로 중요도를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다. 상대적 순위로 측정된 중요성

- 다음으로 <표 V-9>에서는 투자국의 조세환경 중요도 순위를 나타낸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표 V-8>의 중요도 크기의 결과와는 다르게 투자국의 조세환경 중요도의 1순위는 ① 법인세, 지방세, 관세 등의 낮은 조세부담으로 평균 2.2위로 나타났으며, 3위 이상의 중요도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77%에 이르렀음
 - 다음은 ② 법인세, 지방세, 관세 감면 등 충분한 조세지원이었으며, 평균 2.4위로 나타났으며, 3위 이상의 중요도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순위와 마찬가지로 77%로 관찰되었음
 - 그리고, ④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법으로 나타났으며, 중요도는 평균 3.7위로 나타났고, 3위 이상의 중요도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에 이르렀음
- 중요도 크기와는 상대적 순위에서는 법인세, 지방세, 관세 등의 낮은 부담으로 나타났고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세법 요인은 가장 중요도 크기와 마찬가지로 가장 순위가 낮았음

라. 요인들에 대한 종합평가

- <표 V-10>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표 V-8>와 <표 V-9>의 결과를 요약하여 6개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순서를 보여주고 있음
 - 이를 보면 중요도 크기에서는 ② 법인세, 지방세, 관세 감면 등 충분한 조세지원이 1위로 관찰되었으나, 중요도 순위에서는 ① 법인세, 지방세, 관세 등의 낮은 조세부담으로 나타났음
 - 2위는 중요도 크기에서는 ① 법인세, 지방세, 관세 등의 낮은 조세부담, 중요도 순위에서는 ② 법인세, 지방세, 관세 감면 등 충분한 조세지원으로 관찰되어, 투자국의 조세환경 중요성에서는 낮은 세율과 조세지원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그다음으로는 중요도 크기에서는 ⑤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조사 관행, 중요도 순위에서는 ④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법으로 나타나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합리적인 세무조사와 세법의 예측가능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마. 시사점

- 본 설문문항에서는 전반적인 세부담과 세무행정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평가결과를 보면 낮은 조세부담이나 충분한 조세감면 등과 같은 전반적인 세부담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데 비하여 세법의 확실성이나 세무조사의 합리적, 세무행정의 예측가능성 등과 같은 세무행정에 대한 중요도는 낮게 평가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일차적으로는 세부담이 낮은 것이 중요하며 세무행정 요인은 이차적인 것으로 판단됨

<표 V-11> 우리나라의 조세환경 만족도(패널A: 만족도 크기)

설문: 귀사의 입장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아래와 같은 6개의 요인별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만족도의 크기에 해당하는 문항번호를 선택하여 주십시오.(매우 작다 1점, 매우 크다 5점)

설문문항	전체(N=60)			제조업(N=45) ¹⁾			비제조업(N=15) ²⁾		
	평균	X ≥ 4 ³⁾	(비율) ⁴⁾	평균	X ≥ 4 ³⁾	(비율) ⁴⁾	평균	X ≥ 4 ³⁾	(비율) ⁴⁾
1) 법인세, 지방세, 관세 등의 낮은 조세부담	3.40	22	(0.37)	3.44	18	(0.40)	3.27	4	(0.27)
2) 법인세, 지방세, 관세 감면 등 충분한 조세지원	3.40	23	(0.38)	3.53	20	(0.44)	3.00	3	(0.20)
3) 이해하기 쉽고 모호하지 않은 세법	2.82	9	(0.15)	2.80	7	(0.16)	2.87	2	(0.13)
4)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법	3.05	13	(0.22)	3.02	9	(0.20)	3.13	4	(0.27)
5)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조사 관행	3.03	15	(0.25)	2.98	10	(0.22)	3.20	5	(0.33)
6)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무행정	2.98	13	(0.22)	3.02	10	(0.22)	2.87	3	(0.20)

주: 1) 응답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인 기업

2) 응답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비제조업인 기업

3) 5점 척도 설문에서 크다(4점), 매우 크다(5점) 중 하나에 응답한 표본 규모

4) 5점 척도 설문에서 크다(4점), 매우 크다(5점) 중 하나에 응답한 표본 규모의 전체 표본 규모에 대한 비율

출처: 저자 작성

<표 V-12> 우리나라의 조세환경 만족도(패널B: 만족도 순위)

설문: 귀사의 입장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아래와 같은 6개의 요인들의 만족도 크기의 순위를 가장 큰 1등부터 가장 작은 6등까지 함께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문항	전체(N=60)		제조업(N=45) ¹⁾		비제조업(N=15) ²⁾	
	평균순위	X ≥ 3 ³⁾ (비율) ⁴⁾	평균순위	X ≥ 3 ³⁾ (비율) ⁴⁾	평균순위	X ≥ 3 ³⁾ (비율) ⁴⁾
1) 법인세, 지방세, 관세 등의 낮은 조세부담	2.3	42 (0.70)	2.4	40 (0.89)	2.0	12 (0.80)
2) 법인세, 지방세, 관세 감면 등 충분한 조세지원	2.4	44 (0.73)	2.1	35 (0.78)	3.2	9 (0.60)
3) 이해하기 쉽고 모호하지 않은 세법	4.2	19 (0.32)	4.0	17 (0.38)	4.9	2 (0.13)
4)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법	3.5	30 (0.50)	3.5	21 (0.47)	3.3	9 (0.60)
5)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조사 관행	4.1	19 (0.32)	4.5	9 (0.15)	3.1	10 (0.67)
6)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무행정	4.5	17 (0.28)	4.4	14 (0.31)	4.5	3 (0.20)

주: 1) 응답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인 기업

2) 응답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비제조업인 기업

3) 1위부터 6위까지 설문에서 1위에서 3위 사이로 응답한 표본 규모

4) 1위부터 6위까지 설문에서 1위에서 3위 사이로 응답한 표본 규모의 전체 표본 규모에 대한 비율

출처: 저자 작성

<표 V-13> 우리나라의 조세환경 만족도(페닐C: 요인별 만족도 순위 요약)

설문문항	전체표본		제조업 ¹⁾		비제조업 ²⁾	
	만족도크기 ³⁾	만족도순위 ⁴⁾	만족도크기 ³⁾	만족도순위 ⁴⁾	만족도크기 ³⁾	만족도순위 ⁴⁾
1) 법인세, 지방세, 관세 등의 낮은 조세부담	1	1	2	2	1	1
2) 법인세, 지방세, 관세 감면 등 충분한 조세지원	1	2	1	1	3	3
3) 이해하기 쉽고 모호하지 않은 세법	6	5	6	4	5	6
4)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법	3	3	3	3	2	4
5)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세부조사 관행	4	4	5	6	4	2
6)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무행정	5	6	3	5	5	5

주: 1) 응답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인 기업

2) 응답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비제조업인 기업

3) 항목별 만족도 크기를 5점 척도로 측정한 평균값이 높은 순위

4) 항목별 우선순위를 1위부터 6위까지 매긴 후 그 평균 순위가 낮은 순위

출처: 저자 작성

5.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우리나라 조세환경 만족도

가. 설문문의 구성

- 앞선 <표 V-8>~<표 V-10>에서는 조세환경의 중요도를 평가한 반면 <표 V-11>~<표 V-13>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세환경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를 보여줌
- <표 V-8>~<표 V-10>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외국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낮은 조세부담, 조세감면 등의 조세지원, 세법의 이해가능성, 세법의 예측가능성, 합리적인 세무조사 및 세무행정의 예측가능성 등의 총 6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자 함
- 설문항목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설문3. 귀사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조세환경에 대한 아래 항목들에 대한 만족도에 해당하는 항목에 O 표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상대적 중요도를 가장 높은 1순위부터 가장 낮은 6순위까지 정하여 주십시오.

문항	매우 작다	◀◀◀◀◀◀					매우 크다	순위
		1	2	3	4	5		
① 법인세, 지방세, 관세 등의 낮은 조세부담	1	2	3	4	5	()		
② 법인세, 지방세, 관세 감면 등 충분한 조세지원	1	2	3	4	5	()		
③ 이해하기 쉽고 모호하지 않은 세법	1	2	3	4	5	()		
④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법	1	2	3	4	5	()		
⑤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조사 관행	1	2	3	4	5	()		
⑥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무행정	1	2	3	4	5	()		

나. 5점 척도로 측정한 만족도

- <표 V-11>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세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를 보여줌
- 우리나라의 조세환경에 대한 만족도 요인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요인은 ① 법인세, 지방세, 관세 등의 낮은 조세부담과 ② 법인세, 지방세, 관세 감면 등 충분한 조세지원이라는 두 개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모두 평균 3.40점으로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4점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낸 응답자 비율은 각각 37%, 38%로 나타났음

- 다음으로는 ③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법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3.05점이며 4점 이상의 중요도를 나타낸 응답자 비율은 22% 그리고 ⑤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조사 관행이 평균 3.03점을 보였으며 4점 이상의 중요도를 부여한 응답자 비율은 25%이었음

□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조세환경 만족도는 조세감면 등의 조세지원, 낮은 세율,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법 및 세무조사 등의 순서로 만족도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었음

□ 이를 앞선 <표 V-8>~<표 V-10>의 중요도 크기와 비교하면 중요도가 클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중요도가 낮은 항목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 구체적으로 보면 충분한 조세감면은 <표 V-8>~<표 V-10>에서의 중요도도 가장 높았고 만족도 크기도 가장 높았음
- 반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무행정은 중요도도 가장 낮았고 만족도 크기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 상대적 순위로 측정한 만족도

□ 다음으로 <표 V-12>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세환경 만족도 순위를 나타낸 결과를 보여줌

- 우리나라의 조세환경 만족도의 1순위는 ① 법인세, 지방세, 관세 등의 낮은 조세부담으로 평균 2.3위로 나타났으며, 3위 이상의 만족도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70%로 나타났음
- 다음은 ② 법인세, 지방세, 관세 감면 등 충분한 조세지원이었으며, 평균 2.4위로 나타났으며, 3위 이상의 만족도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73%로 관찰되었음
- 그리고, ④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법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는 평균 3.5위로 나타났고, 3위 이상의 만족도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에 이르렀음

- ⑥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무행정 요인은 평균 4.5위로 가장 순위가 낮았고 3위 이내의 만족도를 보인 응답도 28%에 불과함

□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선 <표 V-11>에서의 만족도 크기와 유사한 결과임

라. 요인들에 대한 종합평가

□ <표 V-13>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표 V-11>와 <표 V-12>의 결과를 요약하여 6개 요인들의 상대적 만족도 순서를 보여주고 있음

- 이를 보면 만족도 크기와 만족도 순서에서 모두 1위를 나타낸 것은 ① 법인세, 지방세, 관세 등의 낮은 조세부담으로 나타났음
- 만족도 크기에서 공동 1위 및 만족도 순서 2위로는 ② 법인세, 지방세, 관세 감면 등 충분한 조세지원이 관찰되었음
- 그다음으로는 만족도 크기 및 만족도 순서에서는 ④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법으로 나타나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조세환경에 낮은 조세부담, 충분한 조세지원 및 세법의 예측가능성 순서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반면에 ③ 이해하기 쉽고 모호하지 않은 세법 항목과 ⑥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무행정 항목은 만족도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마. 시사점

□ 우리나라 조세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낮은 조세부담으로 나타났고 반면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법인세율이 낮은 편에 속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큰 상황에서 조세부담 요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이에 부합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세무조사의 합리성, 세법의 예측 가능성, 세무행정의 신뢰성 등의 요인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도가 낮았음

□ 특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 조세부담이 낮은 것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임에 틀림없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세무행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점에서 세무조사 관행을 개선하고 세무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표 V-14〉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환경 만족도

설문: 귀사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환경에 대한 아래 항목들에 대한 만족도에 해당하는 항목에 O 표시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아래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상대적 만족도를 가장 높은 1순위부터 가장 낮은 3순위까지 정하여 주십시오.(전혀 아니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설문문항	만족도 5점 척도(응답값 평균)			상대적 만족도 순위(응답값 평균)		
	전체 (N=60)	제조업 (N=45) ¹⁾	비제조업 (N=15) ²⁾	전체 (N=60)	제조업 (N=45) ¹⁾	비제조업 (N=15) ²⁾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충분한 조세지원	3.37	3.56	2.80	1.48	1.40
2) 조세 지원 관련 규정들의 높은 이해가능성	2.92	3.11	2.33	2.04	2.02	2.07
3)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	2.80	2.93	2.40	2.48	2.57	2.21
전체 평균 ³⁾	3.03	3.20	2.51	-	-	-

주: 1) 응답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인 기업
 2) 응답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비제조업인 기업
 3) 3개 문항에 대한 평균값
 출처: 저자 작성

6.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환경에 대한 평가

- 앞선 설문조사에서 전반적인 투자환경이나 조세환경에 대한 평가를 수행했던 것에 비하여 <표 V-14>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환경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

가. 설문의 구성

-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외국인투자에 대한 충분한 조세지원, 조세지원 관련 규정들의 높은 이해가능성 및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구분하여 설문하고자 함
- 이에 따라서 설문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설문4. 귀사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 환경에 대한 아래 항목들에 대한 만족도에 해당하는 항목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상대적 만족도를 가장 높은 1순위부터 가장 낮은 3순위까지 정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1	2	3	4	
① 외국인투자에 대한 충분한 조세지원	1	2	3	4	5	
② 조세 지원 관련 규정들의 높은 이해가능성	1	2	3	4	5	
③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	1	2	3	4	5	

나. 만족도 크기

- <표 V-14>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세무담당자들이 우리나라의 조세지원환경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를 보여줌
- 항목별 평가결과를 보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규모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음

- ① 외국인투자에 대한 충분한 조세지원은 평균 3.37점으로 나타났으나, 제조업은 평균 3.56점, 비제조업은 평균 2.80점으로 업종 간 편차가 큰 것으로 관찰됨
 - 마찬가지로 ② 조세지원 관련 규정들의 높은 이해가능성은 전체 평균 2.92점, 제조업은 평균 3.11점, 비제조업은 평균 2.33점으로 업종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마지막으로 ③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은 전체 평균 2.80점, 제조업은 평균 2.93점, 비제조업은 평균 2.40점으로 관찰되었음
- 우리나라의 조세지원환경에 대한 전체 평균은 3.03점으로 관찰되었고, 제조업은 3.20점, 비제조업은 2.51점으로 나타났음
- 전체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조세지원 규정의 이해가능성, 세무행정의 예측가능성 순대로 만족도를 보여주었음
 - 그러나, 비제조업만 두고 살펴보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충분한 조세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동일하지만, 세무행정의 예측가능성, 조세지원 규정의 이해가능성 순으로 만족도가 다르게 관찰되었음
- 또한, 제조업의 만족도 평균은 비제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가 비제조업에 대해서 제조업 대비 조세지원 및 세무행정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음

다. 만족도 순위

- 다음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우리나라 조세지원환경에 대한 만족도 순위를 살펴보았음
- ① 외국인투자에 대한 충분한 조세지원은 평균 1.48위, 제조업은 평균 1.40위, 비제조업은 평균 1.71위로 가장 높은 만족도 순위가 관찰되었음
 - 그다음으로는 ② 조세지원 관련 규정들의 높은 이해가능성은 전체 평균 2.04위, 제조업은 평균 2.02위, 비제조업은 평균 2.07위로 나타났음
 - 마지막으로 ③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은 전체 평균 2.48위, 제조업은 평

균 2.57위, 비제조업은 평균 2.21위로 관찰되었음

- 대체로 만족도 크기와 유사하고 대체적인 순위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라. 시사점

-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지원과 관련된 조세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이 3점 정도에 머무르는 등 대체로 낮았음
 - 이는 앞선 전반적인 우리나라 조세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서도 낮은 평가점수임
- 또한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에서 응답자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조세지원이 제조업 중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됨
- 특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에 대한 만족도는 크기와 순위 면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았음
 - 앞선 전반적인 조세환경 평가에서도 이 부분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볼 때 개선이 시급한 분야라고 할 수 있음

〈표 V-15〉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관세 감면 환경 만족도

설문: 귀사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관세 감면 환경에 대한 아래 항목들에 대한 만족도에 해당하는 항목에 O 표시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아래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상대적 만족도를 가장 높은 1순위부터 가장 낮은 3순위까지 정하여 주십시오.(전혀 아니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설문문항	만족도 5점 척도(응답값 평균)			상대적 만족도 순위(응답값 평균)		
	전체 (N=60)	제조업 (N=45) ¹⁾	비제조업 (N=15) ²⁾	전체 (N=60)	제조업 (N=45) ¹⁾	비제조업 (N=15) ²⁾
1) 충분하고 유용한 관세 감면 규모	3.09	3.21	2.64	1.80	1.82	1.70
2) 쉽고 편리한 관세 감면 절차	2.92	2.93	2.91	1.71	1.69	1.80
3)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세 감면 행정	2.94	3.00	2.73	2.49	2.49	2.50
전체 평균 ³⁾	2.98	3.05	2.76	-	-	-

주: 1) 응답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인 기업
 2) 응답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비제조업인 기업
 3) 3개 문항에 대한 평균값
 출처: 저자 작성

7.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관세 감면 환경에 대한 평가

- 앞선 설문에서 전반적인 조세환경, 그리고 외국인투자과 관련된 조세환경에 대한 설문평가를 실시하였음
- 이에 비하여 <표 V-15>에서는 범위를 더욱 좁혀서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관세 감면 환경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보여줌
 - 이러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임

가. 설문의 구성

-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관세 감면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충분하고 유용한 관세 감면 규모, 쉽고 편리한 관세 감면 절차 및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세 감면 행정으로 구분하여 설문하고자 함
 - 이에 따라서 설문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설문5. 귀사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관세 감면 환경에 대한 아래 항목들에 대한 만족도에 해당하는 항목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상대적 만족도를 가장 높은 1순위부터 가장 낮은 3순위까지 정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1	2	3	4	
① 충분하고 유용한 관세 감면 규모	1	2	3	4	5	
② 쉽고 편리한 관세 감면 절차	1	2	3	4	5	
③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세 감면 행정	1	2	3	4	5	

나. 만족도 크기

- <표 V-15>에서는 각 항목별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세무담당자들이 우리나라의 관세 감면 환경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를 보여줌
 - ① 충분하고 유용한 관세 감면 규모는 평균 3.09점으로 나타났으나, 제조업은 평균 3.21점, 비제조업은 평균 2.64점으로 업종 간 편차가 큰 것으로 관찰됨

- 마찬가지로 ② 쉽고 편리한 관세 감면 절차는 전체 평균 2.92점, 제조업은 평균 2.93점, 비제조업은 평균 2.91점으로 업종 간 큰 편차는 나타나지 않았음
 - 마지막으로 ③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세 감면 행정은 전체 평균 2.94점, 제조업은 평균 3.00점, 비제조업은 평균 2.73점으로 관찰되었음.
- <표 V-15>를 보면 우리나라의 관세 감면 환경에 대한 전체 평균은 2.98점으로 관찰되었고, 제조업은 3.05점, 비제조업은 2.76점으로 나타났음
- 전체적으로 관세 감면 규모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관세 감면 세무행정의 예측가능성, 쉽고 편리한 관세 감면 절차 순으로 만족도가 관찰되었음
 - 그러나, 비제조업만 두고 살펴보면 쉽고 편리한 관세 감면 절차, 관세 감면 세무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충분하고 유용한 과세 감면규모 순으로 만족도가 다르게 관찰되었음
 - 앞서 <표 V-14>의 설문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설문 응답기업인 제조업은 전반적인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관세 감면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보다 높았으나, 비제조업은 관세 감면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인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음

다. 만족도 순위

- 다음으로 <표 V-15>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우리나라 조세지원환경에 대한 만족도 순위를 살펴볼 수 있음
- ② 쉽고 편리한 관세 감면 절차가 평균 1.71위, 제조업은 평균 1.69위로 가장 높은 만족도 순위를 나타내었음
 - 반면 비제조업은 ① 충분하고 유용한 관세 감면 규모가 평균 1.70위로 가장 높은 만족도 순위를 보여줌
 - 그다음으로는 ① 충분하고 유용한 관세 감면 규모가 평균 1.80위, 제조업은 1.82위로 관찰되었고, 마지막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세 감면 행정 평균 2.49위로 관찰되었음
- 이러한 만족도 순위 결과는 만족도 크기와 유사한 결과임

라. 시사점

- 관세 감면에만 초점을 두어 평가한 결과는 대체로 보통수준인 3점 이하로 나타나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앞선 전반적인 조세환경이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 환경 평가와도 유사하게 감면규모에 대한 만족도보다는 예측 가능한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표 V-16> 외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 지원세제 관련성에 대한 평가

설문: 아래 설문들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지원세제와 귀사의 투자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문항에 동의하시는 정도에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전혀 아니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설문문항	응답값 평균		
	전체 (N=60)	제조업 (N=45) ¹⁾	비제조업 (N=15) ²⁾
1)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3.05	3.04	3.07
2) 향후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축소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규모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3.03	3.00	3.13
3) 향후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확대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규모를 증가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3.58	3.56	3.67
4)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없었다더라도 우리나라에 투자했을 것이다.	3.08	3.00	3.33
전체 평균 ³⁾	3.19	3.15	3.30

주: 1) 응답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인 기업

2) 응답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비제조업인 기업

3) 4개 문항에 대한 평균값

출처: 저자 작성

8.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세제와 외국인직접투자와의 관련성 평가

- <표 V-16>에서는 관세 감면을 받았던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기업 세무담당자들이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세제와 외국인직접투자와의 관련성을 평가한 결과를 보여줌
 - 본 설문은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세제가 외국인직접투자에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를 관세 감면을 받았던 세무담당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본 것임
 - 따라서 본 설문은 관세 감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세제의 실효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설문임

가. 설문의 구성

-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세제와 외국인직접투자와의 관련성을 물어보는 본 설문은 모두 4개의 세부 문항으로 구성됨
- 첫째와 네 번째 문항은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세제가 없었더라도 우리나라에 투자했을 것인지를 동일하게 다른 방식으로 물어본 것임
 - OECD(2007)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세제지원의 효율성을 하락시키는 원인 중 하나는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주어지는 우발이득(windfall gain)이라고 보고하고 있음
 - 이는 사실상 세제지원이 없었더라도 투자를 실행했을 투자자들에게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임
 - 따라서 첫 번째와 네 번째 문항은 이러한 우발이득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세제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가장 일차적인 설문이라고 할 수 있음
- 나머지 두 개의 설문은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세제가 미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
 - 이 설문은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세제가 축소되거나 확장될 경우 향후 외국인직

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세제가 외국인직접투자와의 관련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줌

□ 이에 따라 설문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설문6. 아래 설문들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지원세제와 귀사의 투자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문항에 동의하시는 정도에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아니다 <<<<<<<					정말 그렇다
	1	2	3	4	5	
①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없다면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1	2	3	4	5	
② 향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축소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규모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1	2	3	4	5	
③ 향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확대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규모를 증가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1	2	3	4	5	
④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없었더라도 우리나라에 투자했을 것이다.	1	2	3	4	5	

나. 설문결과

□ <표 V-16>에서는 전체 표본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없다면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문에 대해서 평균 3.05점의 응답값을 보이고 있으며 동일하게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없더라도 투자했을 것이라는 설문에 대해서도 평균 3.08점의 응답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간값에 해당하는 결과임

- 이를 보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들은 조세지원이 없어도 외국인직접투자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음을 의미함
- 구체적으로 보자면 첫 번째 설문에 대해서 1점을 부여하여 전혀 아니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6명이고 2점을 부여하고 아니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14명이 되어서 1점 혹은 2점을 부여한 응답자는 모두 20명으로 전체의 33%에 달함. 이에 비하여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6명, 그렇다는 응답도 17명으로 나타남
- 다만 동일한 설문인 최기호(2007)의 설문에서는 동일 질문에 대해서 2.86점을

보였고 안중석 등(2014)에서는 설문에 대한 응답값이 2.49점으로 매우 낮았던 것에 비하여 다소 높아진 결과임

- 두 번째 문항인 향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축소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는 설문에 대해서는 평균 3.05점을 부여하여 중간인 3점에 약간 초과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여기에 대해서는 1점 및 2점을 부여한 응답자 비율이 28%, 4점 및 5점을 부여한 응답자 비율은 40%로서 부정적 의견 또는 영향이 중간값인 응답비율이 높은 편임
 - 앞선 안중석 등(2014)의 설문조사에서는 2.79점이어서 그에 비하면 본 설문조사 응답값은 다소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 세 번째 문항인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세제가 확대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규모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설문에 대해서는 평균 3.56점으로 중간을 약간 초과하는 응답값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앞선 문항들에 비하여서는 중간 이상을 초과하는 응답으로 조세감면 확대가 외국인직접투자에 효과를 있을 것이라는 평가라고 할 수 있음
 - 동일 문항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최기호(2007)에서는 3.26점이었고 안중석 등(2014)에서는 3.34점이어서 본 설문의 결과가 약간 향상된 것임

다. 시사점

- 관세 감면을 받았던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세무담당자들은 외국인직접투자와 지원세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중간 정도의 응답을 함으로써 분명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지 않았음

- 다만 조세지원이 확대된다면 투자규모가 증가할 것이라는 설문에 대해서는 중간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 사실상 위 설문이 모두 동일한 취지의 질문이었다는 점에서 이 설문에 대한

응답을 전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음

- 다만 이전에 동일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던 최기호(2007), 안종석 등(2014)의 설문 결과에 비해서는 다소 높아진 결과를 보여주었음
 - 이런 결과는 본 설문의 응답자들이 대부분 제조업이고 관세 감면을 받았던 기업이라는 점에서 조세감면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도 가능함

- 결론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조세지원이 외국인직접투자에 명백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에 조세요인은 일차적 요인이 아니라는 선행연구 및 앞선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임

〈표 V-17〉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제도에 대한 선호평가

설문: 외국인투자 지원제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세무담당자로서 아래 문항에 동의하시는 정도에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전혀 아니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설문문항	응답값 평균		
	전체 (N=60)	제조업 (N=45) ¹⁾	비제조업 (N=15) ²⁾
1) 현재의 외국인투자지원제도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 별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2.55	2.53	2.60
2)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는 조세지원보다는 현금이나 임지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이 효과적이다.	3.43	3.44	3.40
3)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는 조세지원보다는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3.22	3.20	3.27
4)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는 조세지원보다는 제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35	3.31	3.47
전체 평균 ³⁾	3.14	3.12	3.19

주: 1) 응답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인 기업

2) 응답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비제조업인 기업

3) 4개 문항에 대한 평균값

출처: 저자 작성

9.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제도에 대한 선호도

- <표 V-17>에서는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제도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 세무담당자들의 선호도를 보여줌. 즉 현재 운용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제도보다 선호하는 지원제도를 살펴보고자 함

가. 설문문의 구성

- 본 설문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세제에 대한 선호도를 4개 문항에 걸쳐 평가하도록 함
- 이러한 세부문항들은 현재 외국인투자 지원세제, 직접지원제도, 세무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 경영환경 개선 등으로 구성됨
- 이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설문을 구성함

설문7. 외국인투자 지원세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세무담당자로서 아래 문항에 동의하시는 정도에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아니다	◀◀◀◀◀◀				정말 그렇다
		1	2	3	4	
① 현재의 외국인투자지원세제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데 별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1	2	3	4	5	
②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는 조세지원보다는 현금이나 입지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이 효과적이다.	1	2	3	4	5	
③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는 조세지원보다는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1	2	3	4	5	
④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는 조세지원보다는 제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	2	3	4	5	

나. 설문결과

- <표 V-17>에서는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지원효과에 대한 선호도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전체 표본의 결과를 보면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지원제도로 가장 선호하는

- 정책은 ②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는 조세지원보다 현금이나 입지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3.43점의 결과가 관찰되었음
- 그 다음은 ④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는 조세지원보다는 제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평균 3.35점으로 나타났음
 - 그 다음으로 ③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는 조세지원보다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평균 3.22점으로 나타났음
- ① 현재의 외국인투자지원세제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 별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는 평균 2.55점으로 부정적인 응답률을 보였는데, 이를 통하여 현재 외국인투자 지원세제에 대한 선호도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다만, 현재 설문에 응답한 기업들은 법인세 및 관세 감면 등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들이므로 현재 외국인투자 지원세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감안해야 할 것임

다. 시사점

- 외국인투자기업의 세무담당자들은 조세지원보다 현금이나 입지지원과 같은 비조세지원을 대체로 선호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응답이 반드시 현재 조세지원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함

〈표 V-18〉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의 효과에 대한 평가

설문: 아래 설문들은 귀사의 국내 투자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문항에 동의하시는 정도에 해당하는 빈도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전혀 아니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설문문항	응답값 평균		
	전체 (N=60)	제조업 (N=45) ¹⁾	비제조업 (N=15) ²⁾
1) 외국에서 국내로 중요한 기술들이 이전되었다.	3.28	3.51	2.60
2) 고용이 중대하게 증가하였다.	3.65	3.82	3.13
3) 우리나라 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하였다.	3.48	3.60	3.13
전체 평균 ³⁾	3.47	3.64	2.95

주: 1) 응답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인 기업
 2) 응답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비제조업인 기업
 3) 3개 문항에 대한 평균값

출처: 저자 작성

10.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효과에 대한 평가

- <표 V-18>에서는 우리나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세무담당자들이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효과에 대해 내린 평가결과를 보여줌
 - OECD(2007)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는 고용창출, 선진기술 도입, 국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함
 - 그러나 OECD(2007)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외국인직접투자로 고용이 창출되는지는 국내 고용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불완전 고용상태에 있는 국가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로 고용이 창출될 수 있으나 완전고용 상태의 국가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기업의 인력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이전되는 효과만이 있을 뿐임
 - 또한 외국인직접투자가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는 기술이전효과(spillover effect)는 선진기술이 국내기업으로 이전되거나 선진경영기법 등이 국내기업으로 흡수되는 효과를 말하지만 이는 무형적이며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로서 실제로 이러한 효과가 발휘될지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따라서 비록 불완전하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의 세무담당자들이 외국인직접투자의 효과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음

가. 설문문의 구성

- 설문은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효과 및 산업고도화 기여를 측정하는 것으로 함
 - 실제로 우리나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2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 조세감면 규정에서는 고도기술수반사업이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로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로 기대하는 효과는 선진기술 도입이나 고용창출임을 보여주는 것임

□ 따라서 본 설문은 아래와 같이 구성

설문8. 아래 설문들은 귀사의 국내 투자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문항에 동의하시는 정도에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아니다	◀◀◀◀◀◀				정말 그렇다
		1	2	3	4	
① 투자로 인하여 국내로 기술들이 이전되었다.	1	2	3	4	5	
② 투자로 인하여 고용이 중대하게 증가하였다.	1	2	3	4	5	
③ 우리나라 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하였다.	1	2	3	4	5	

나. 설문결과

□ <표 V-18>은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효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여주는데 전체 표본을 보면 기술이전효과에 대한 평가점수는 3.28점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중간 정도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사실상 응답자들이 기술이전효과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음
- 앞서 언급한대로 OECD(2007)에서도 기술이전효과는 장기적이며 무형적인 것으로서 그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고한 바 있음
- 따라서 본 설문의 결과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두 번째 고용창출효과에 대해서는 3.65점을 부여하여 명백하게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고용창출효과는 기술이전효과에 비하여 가시적인 것으로 비교적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효과이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여짐
- 그렇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친 고용창출효과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고용증대가 국내기업 고용인력의 이전에 불과한 것인지 순수하게 고용을 증가시킨 것인지를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닌 경제 전반에 걸쳐 평가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임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했는지 평가한 결과 평균 3.48점으로 나타났지만 다만, 기술이전 효과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이며 무형적인 것으로 그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다. 시사점

- 외국인투자기업의 세무담당자들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
- 다만 기술이전이나 산업고도화 기여 등의 평가 설문은 질문의 속성상 평가 결과를 완전하게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석에 주의해야 할 것임

11. 요약 및 시사점

가. 설문조사 결과 요약

- 본 보고서에서는 관세를 감면받은 기업의 세무담당자들을 중점적인 설문대상으로 포함하여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에 지원세제를 평가하고자 함
- 설문문항은 최기호(2007)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설문문항, Porcano(1993) 및 안종석 등(2014) 연구에서 이용하였던 설문문항들을 수정하여 이용하였고 또한, 관세 감면 등을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세무담당자를 인터뷰하여 설문내용을 추가하였음
-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9개의 조세 및 비조세요인을 열거하고 항목별 중요도를 물어보았음
 - 선행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기업 세무담당자들은 거래처 확보나 질 좋은 노동력이나 원재료 확보 혹은 우수한 사회간접시설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임을 들고 있음

- 조세감면과 같은 조세요인은 9개 요인 중 중상위에 위치하는 것을 관찰되었는데 낮은 세율 요인은 대체로 중간 정도 순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만 본 연구의 설문응답자들은 실제로 조세감면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었던 기업의 세무담당자이기 때문에 조세요인을 다른 선행연구들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거래처나 노동력 확보와 같은 비조세요인에 비해서는 중요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중요도와 함께 9개 요인 각각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는데 중요도와 만족도는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조세요인이 중요도에 비하여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조세요인은 다른 비조세요인이 동일하다는 조건하에서만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Wilson, 1993; Single and Kramer, 1996, OECD, 2007)들의 결과를 재확인시켜주는 것임
-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전반적 조세환경, 외국인직접투자자와 관련된 조세환경 및 관세 감면 조세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조세부담 및 조세지원을 제외하고는 전체 평균값이 중간값인 3점을 약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를 통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세무담당자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세환경에 대한 불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음
 -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충분한 조세지원 및 관세 감면보다도 관련 규정들의 이해가능성, 합리적인 세무조사 관행, 세무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감면 절차 등에 대한 만족도는 중간값이 3점에 미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무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세무행정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세무행정절차, 세무조사 과정이나 가산세 부과, 세법의 예측가능성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설문에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음
 - 즉, 조세지원 등의 조세감면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세법이나 정책의 예측가능성 또한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OECD(2007)에 따르면 국가 간 조세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세율을 낮추거나 조세감면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도 필요한 과제임

-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 설문 결과의 결과는 우리나라도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된 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무행정을 점검하고 개선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세 번째로 외국인직접투자 세제지원과 외국인직접투자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물어보았음
 -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없었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문 결과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세무담당자들은 부정적 의견을 보였음
 - 즉 세제지원과 국내투자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실제로 설문 결과값은 중간값에 해당하는 응답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감면과 외국인직접투자와의 관련성에 의구심을 갖게 함
 - OECD(2007)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세지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세지원이 없어도 투자를 했을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우발이득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발이득은 외국인직접투자 조세지원의 효율성을 하락시키는 주된 원인임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설문 결과의 결과는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지원세제도 투자자들에게 우발이득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나.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

-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을 지상과세로 삼고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왔음. 관세 감면도 그 중의 하나임. 그러나 경제환경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현재, 과거와 같은 외국인직접투자 세제지원을 유지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다시 평가해보아야 할 것임
 -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지원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와 상황이 유사한 국가와 비교해서도 대단히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그렇지만 선행연구들을 보면 외국인직접투자와 세제지원 간의 관련성은 분명

하지 않음

- 더욱이 우리나라는 외국자본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던 과거와는 경제환경이 크게 달라져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본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관세 감면을 비롯한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요인이 다른 비조세요인들에 비해서 상대적 중요성이 높지 않았음

- 그러나 대부분 관세 감면 기업들은 조세환경 평가에서 조세감면이나 낮은 세율과 같은 전반적인 조세부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조세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다만 세법이나 세무행정의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매우 낮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 관세 감면을 비롯한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세제를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직접적인 조세감면보다는 세무행정이나 세법 등의 신뢰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VI. 결론 및 정책 제언



VI.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제도가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였음

-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많은 국가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지원제도와 일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할 수는 없었음
 - 이는 동 지원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정책이 아닌 매우 파격적인 혜택이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음
 - 이는 또한 동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정책 목표의 달성 가능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임

- 본 연구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제도를 이론 및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동 제도가 수혜기업의 투자증진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음
 - 제도 도입의 취지와 목적 달성 여부에 대한 검증결과에 따라 동 제도 유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 관세를 감면받은 기업의 세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동 제도의 외국인직접투자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해 주었음
 - 다만 설문에 응답한 세무담당자들은 외국인기업 유치에 있어 관세 감면을 비롯한 조세지원요인이 다른 비조세요인에 비하여 상대적 중요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세무행정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2. 정책 제언

- 본 연구의 효과성 평가 결과, 외국인투자 유치와 국내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현 시점에서 동 제도의 폐지보다는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국가와 FTA를 확대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면제의 중요성이 점진적으로 축소가 예상되고 있고, 현재 이와 동일한 제도를 시행중인 해외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내국인 기업에 대한 차별,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제도의 중장기적인 방향 등을 감안할 때, 동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가 주로 미국, 유럽국가, 그리고 일본 등에서 수입되고 있고, 이미 미국, EU와는 FTA가 체결되었고, 일본과는 협상 중에 있음
 - 특히, 동 제도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 면제제도와 같은 방향으로 정책이 운영될 필요가 있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 면제제도는 내국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OECD 유해조세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폐지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제도임
 - 내국기업의 자본재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음
 - 한편, 관세 감면을 측면에서도 기존 관세 감면제도 중에서 동 제도처럼 100% 관세 감면을 해주는 제도는 없고 최대 50%의 관세만을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내국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 동 제도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 면제제도와 같은 방향으로 정책이 운영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동 제도의 일몰조항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 면제제도와 동일한 정책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 설계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동일한 제도를 시행중인 해외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동 제도는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평가결과는 기업이 이와 같은 파격적인 혜택에 반응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음
 - 기업이 어느 정도 혜택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사전적 예측을 하는 데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 및 실증분석 결과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는 외국인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관세 감면과 같은 조세지원제도와 더불어 세무행정이나 세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 향상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하고 있음
- 이는 외국인기업의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사항임
 - 보다 기업친화적인 세무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구재운, 「경영자 재량, 레버리지와 기업투자」, 『산업경제연구』, 제21권 제1호, 2008, pp.391~409.
- 국회에산정책처,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도 평가』, 2016.
- 기획재정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 평가 및 정비방안」, 2014.
- 김동훈, 「법인세가 기업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산업경제연구』, 제28권 제4호, 2015, pp.1617~1638.
- 김우철,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13권 제2호, 2007, pp.51~97.
- 김종성 · 홍정화 · 김완희, 「기업의 소유구조가 기부금 지출수준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2호, 2008, pp.105~126.
- 김학수, 『기업특성과 법인세 실효세율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 김현숙, 「기업의 세부담이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재정포럼』, 8월호, 한국조세연구원, 2004, pp.6~30.
- 김현정, 「외환위기 이후 개업대출 위축의 원인과 정책과제」, 『금융경제연구』, 제 146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3
- 남재량 · 전영준 · 이영 · 김현숙, 『조세정책과 고용효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가이드』, 2015.
- 성효용, 「법인세의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재정정책논집』, 제14집 제4호, 2012, pp.125~142.
-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2년 제1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pp.97~99.
- 송헌재 · 방홍기,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고용창출 효과 분석」, 『경제학연구』, 제62권 제42호, 2014, pp.129~167.
- 심충진 · 이준규,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 제12권 제2호, 2011, pp.435~454.
- 안종석 · 송은주 · 정경화, 『주요국의 기업상속 과세특례제도 연구』, 세법연구, 14-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조경엽 · 오태연, 『경제성장과 법인세의 고용효과』, 한국경제연구원, 2012.
- 전봉걸 · 이동규, 『인터넷뱅킹, 지급결제예금 및 은행 수익성과의 관계분석』,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외부연구용역사업, 한국은행, 2013.
- 최기호,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세제에 대한 평가」, 『세무학연구』, 제24권 제1호, 2007, pp.51~80.
- 강병구, 『조세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평가연구』, 한국고용정보원, 2012.
- 현진권 · 표학길, 「유형고정자산의 폐기율 및 경제적 감가상각률 추정: 자본스톡 접근과 미시적 접근의 비교」, 『한국경제의 분석』, 제3권 제1호, 1997, pp.154~193.
- 홍범교 · 기은선,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7.
- Bonner, S., “Judgement and Decision Making in Accounting,” *Prentice-Hall*, 2007.
- CCH, *China Master Tax Guide 2012/13*, 10th Ed. 2012
- _____, *British Master Tax Guide 2013/14*, 2013
- _____, *Singapore Master Tax Guide 2013/14*, 32nd Ed. 2013
- _____, *Malaysia Master Tax Guide 2013*, 32nd Ed. 2013
- _____, *Taiwan Master Tax Guide 2013/14*, 2013
- Devereux, M. and Schiantarelli, F., “Investment, Financial Factors and Cash Flow: Evidence from U.K Panel Data,”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89, pp.279~306.
- Hines J.R., “Tax Policy and the Activiti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A.J. Auerbach(ed.) *Fiscal Policy: Lessons from Economic Research*, MIT Press, Cambridge MA., 1997.
- Navarro P., “Why Do Corporation Give to Charity?,” *The Journal of Business*, Vol.61, No.1,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pp.65~93.
- OECD, “Tax Effect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Present Evidence and Policy Analysis,” *OECD Tax Policy Studies* No.17, 2007.
- Porcano, T. M., “Factors Affecting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Decision of Firms

- from and into Major Industrialized Countries,” *Multinational Business Review*, Fall, 1993, pp.26~36.
- _____, T. M. and C. E. Price, “The Effects of Government Tax and Non Tax Incentive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Multinational Business Review* Vol. 4, No.1, 1996, pp.9~19.
- Roberts, M. “Tax Accountants’ Judgment/Decision Making Research: A Review and Synthesis,”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0, Spring, 1998, pp.78~121.
- Rolfe, R.J., and R.A. White, “Investors’ Assessment of the Importance of Tax Incentives in Locating Foreign Export-Oriented Investment: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991, pp.39~57.
- Single, L.E. and J.L. Kramer, “Tax Policy and the Location of Plants and Profits,”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vol. 15, 1996, pp.108~142.
- Wilson, “The Role Of Taxes In Location And Sourcing Decisions,” *Studies in International Tax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pp.195~234.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www.motie.go.kr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Industry, Innovation and Science,

<http://www.industry.gov.au/>

EU Commission, <http://eur-lex.europa.eu>

KPMG Tax Article - Labuan IBFC,

http://www.labuanibfc.com/site/attachments/article/113/kpmg_tax_article.pdf

Library of Congress,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1205401939_text.

The United Kingdom Government, www.gov.uk

<부 록>

1. 국세청 자료 현황 및 내용

가. 연도별 관세 감면 규모

-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2년 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으로 인해 관세가 면제된 전체 기업의 국세청 자료를 살펴보면, 연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들의 법인세 수입금액 총액은 연간 약 30조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부표 1> 2005~2015년 국세청 법인세 수입금액 및 당기순손익, 과세표준 자료 현황

(단위: 개, 억원)

	기업 수	총법인세 수입금액	총당기순손익	총과세표준금액
2005	78	188,000	전산추출 불가	15,500
2006	93	246,000	전산추출 불가	25,400
2007	99	307,000	전산추출 불가	30,400
2008	114	381,000	17,500	41,100
2009	124	403,000	35,200	29,200
2010	134	504,000	58,100	58,400
2011	140	518,000	39,500	46,400
2012	149	466,000	27,500	34,300
2013	153	418,000	20,600	27,600
2014	153	407,000	11,600	18,000
2015	150	391,000	25,000	15,300
총평균	1,387	305,000	21,700	24,600

주: 전산추출 불가로 2005~2007년 기간 동안 194개 기업의 당기순손익 자료가 없어서 그 당시의 정확한 당기순손익 통계량을 알 수 없음.

자료: 국세청

-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의 수가 655개로 전체 자료에서 약 47%의 비율을 차

지하였고,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732개로 53%의 비율을 차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추가적인 세액공제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 총부담세액과 과세표준금액이 0보다 큰 기업의 수가 일치하지 않는데, 전산추출 불가 기업을 제외하고 전체 자료에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기업은 434개, 과세표준금액이 0 이하인 기업은 664개로 나타났음
- 2008년에 당기순손실을 보고한 기업의 경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보고하는 경향이 높았음

<부표 2> 2005~2015년 국세청 자료의 법인세 총부담세액 등의 기업별 분포

(단위: 개, %)

	법인세 총부담세액=0	법인세 총부담세액>0	당기순손익<=0	과세표준금액=0	합계
2005	40	38	전산추출 불가	36	78
2006	48	45	전산추출 불가	43	93
2007	48	51	전산추출 불가	44	99
2008	66	48	55	54	114
2009	75	49	54	62	124
2010	71	63	53	66	134
2011	72	68	52	72	140
2012	79	70	57	74	149
2013	83	70	51	75	153
2014	78	75	58	71	153
2015	72	78	54	67	150
합계	732	655	434	664	1,387
비율	52.8	47.2	31.3	47.9	100.0

자료: 국세청

□ <부표 3>은 국세청 자료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기순손익 변수의 표준편차가 매우 큰 값을 보이는 것으로부터 기업별 이익의 편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음

<부표 3> 국세청 자료에 대한 기초통계량

(단위: 억원)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법인세 수입금액	305,000	1,310,000	0	15,900,000
당기순손익	21,700	177,000	-9,870	3,290,000
과세표준금액	24,600	187,000	-1,180,000	3,640,000
법인세 총부담세액	3,500	24,700	0	461,000

자료: 국세청

- <부표 4>에서는 법인세 총부담세액 대비 과세표준금액의 비율로 기업의 유효세율을 추정하였는데 해마다 큰 편차가 존재하는 측면이 있지만, 대략 11.1~23.7%의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됨
- 실효세율 증가는 기업 이익 증가의 결과이므로 이는 동 제도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이는 또한 동 제도가 외국인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킨 것으로 나타난 실증분석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임

<부표 4> 2005~2015년 국세청 법인세 수입금액 및 당기순손익 규모

(단위: 개, 억원, %)

	기업 수	과세표준금액(A)	법인세총부담세액(B)	실효세율(B/A)
2005	78	15,500	2,320	15.0
2006	93	25,400	2,830	11.1
2007	99	30,400	3,640	12.0
2008	114	41,100	4,430	10.8
2009	124	29,200	4,790	16.4
2010	134	58,400	6,530	11.2
2011	140	46,400	7,290	15.7
2012	149	34,300	5,360	15.6
2013	153	27,600	5,000	18.1
2014	153	18,000	2,730	15.2
2015	150	15,300	3,620	23.7

자료: 국세청

□ 국세청 자료의 경우 산업별 식별은 가능한데, 제조업의 비중의 82.9%, 비제조업의 비중은 17.1%로 나타났음

○ 산업별 결과를 보았을 때 비제조업의 경우 당기순손익과 과세표준금액의 평균이 음(-)의 값을 나타내서 주로 비제조업에서 기업성과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부표 5> 2005~2015년 국세청 자료 중 제조업, 비제조업 비중

(단위: 개, 억원, %)

	제조업		비제조업	
	기업수	평균	기업수	평균
법인세수입금액	1,150	363,000	237	21,000
당기순손익	998	26,400	195	-2,409
과세표준금액	1,150	30,100	237	-1,791
법인세충부담세액	1,150	4,173	237	233
비율	82.9		17.1	

자료: 국세청

2. 자본재 가격 하락의 규모효과 추정

<부표 6> 매출액증가율에 대한 관세 면제의 효과 고정효과 모형 추정

관세 면제 더미변수	26.54***
	(6.76)
ln(자산총계)	-3.05***
	(0.56)
종업원수증가율	0.29***
	(0.01)
부채비율	0.01***
	(0.00)
관측치수	89,517
기업수	15,900

주: 대분류산업더미와 연도더미는 모든 분석에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나 보고는 생략함.
출처: 저자 작성